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Ⅶ)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Ⅶ)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7. 9



2017.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VII)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7.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 충 한양대학교 조교수

2017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 약

1. 서론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이하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함
 - 동 제도의 제도적 타당성과 청년고용창출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뒤 동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

2. 제도 현황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5년 12월 도입 당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에는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적용함
- 청년 실업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2017년 4월 18일에는 동 제도의 세액공제 규모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의 경우 300만원으로 기존보다 확대함
 - 확대된 세액공제 규모는 2017년도에 청년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적용함

<표 1>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규모의 변화

	2015 ~ 2016년	2017년
중소기업	500만원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등 그 외 기업	200만원	300만원

자료: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 2016년 9월에 발표된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2016년도 조세지출은 약 54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실질적인 조세지출은 2016년도부터 발생함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은 소득세보다는 대부분 법인세에서 발생함
 - 2016년도의 경우 77.63%인 420억원의 조세지출이 법인세에서 발생함
 - 소득세에서 발생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121억원임
 - 한편, 동 조세특례로 인한 2017년도 조세지출 규모는 약 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7년도에는 법인세의 조세지출 비중이 더 증가하여 85.18%인 7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소득세의 경우에는 130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약 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

	2016년		2017년	
	규모	비중	금액	비중
합계	541	100.00	877	100.00
소득세	121	22.37	130	14.82
법인세	420	77.63	747	85.18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2015년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법인은 총 2,164개로 이 중 약 80%인 1,732개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은 103개로 약 4.8%를 차지함
 -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은 330개로 약 15.2%를 차지함

<표 3>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청년고용증대세제			동 특례 비중 ¹⁾	실효 세율 감소 ²⁾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개수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165	100	42,086	100	19	9.697	0.153
중소기업	1,732	80.000	25,137	59.726	15	15.885	0.847
중견기업	103	4.758	6,101	14.497	59	11.586	0.348
그 외 기업	330	15.242	10,848	25.776	33	4.862	0.048

주: 1)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총공제감면세액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2)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과세표준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 폭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약 0.85%포인트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 높음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하여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약 0.35%포인트 감소함
 - 대기업을 포함한 그 외 기업의 실효세율은 약 0.048%포인트 감소함

- 기업들은 2015년 약 14,10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 것에 대하여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함
 - 이 중 법인의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약 11,672명으로 전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의 82.7%를 차지함
 - 개인사업체의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약 2,437명으로 전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의 약 17.3%임

-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수혜대상 기업 중 개인사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은 약 7,465명으로 전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의 약 52.91%를 차지함
 -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약 1,220명으로 전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의 약 8.65%를 차지하며,

-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의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5,424명으로 전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의 약 38.44%인 것으로 나타남

<표 4>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단위: 개, 백만원, 명, %)

구간	신고 법인(인원) 수	총 세액공제액	총 청년고용 증가인원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	
				비중		
전체	4,434	54,273	14,109.21	100	3.18	
법인	소계	2,165	42,086	11,671.80	82.72	5.39
	중소기업	1,732	25,137	5,027.35	35.63	2.90
	중견기업	103	6,101	1,220.27	8.65	11.85
	그외기업	330	10,848	5,424.18	38.44	16.44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2,269	12,187	2,437.41	17.28	1.07
중소기업 계		4,001	37,324	7,464.76	52.91	1.87

주: 개인사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이라 가정함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3. 타당성 분석

-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및 각종 고용지표를 살펴볼 때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7월 8.1%를 기록한 이후 매월 8%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청년 실업률은 2014년 2월에 9.3%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2월에는 10.6%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음
 - 올해인 2017년에 들어서도 2월에 10.4%를 기록하였음
-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수행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절성

4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정액지원방식의 적절성
 - 일회성 지원의 적절성
-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간에 상충되는 면이 존재하여 정책의 지향점에 따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우리나라의 조세특례 중 상당수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등 형평성을 강조하며, 「청년고용증대세제」 또한 이러한 조세특례 중의 하나임
 - 반면, 차등적인 세제지원은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으로 효율성을 저해함
 -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대기업보다 생산성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수요가 더 증가해 생산성이 낮은 기업으로 노동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
- 한편 형평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이 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여기서 효과성이란 얼마나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정의함
 -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효과성이 다른 정책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일 수 있음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통해 노동의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시장에 적합한 정책임
- 노동공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은 사중손실만 크게 발생하고 실질적인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함
 - 대기업의 경우 노동공급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수요가 더 노동시장에서 고용량을 결정하는 데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고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노동수요의 역할이 대기업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됨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정액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음
 - 한편,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와 같이 증가한 고용인원의 임금에 비례해서 세제지원을 하는 급여비례지원방식도 존재함

- 기업 간의 형평성을 강조한다면 정액지원방식이 급여비례지원방식보다 선호되는 방식임
 - 정액지원방식은 고용창출 인원만 같다면 동일한 규모의 세제지원이 제공됨
 - 반면 급여비례지원방식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는데,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환경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세제혜택이 역진적일 수 있음

- 하지만 동 조세특례가 노동비용의 절감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의 직접비용인 급여에 비례해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정액지원방식보다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함
 - 이와 더불어 급여비례지원방식은 정액지원방식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노동이 분배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임
 - 급여의 결정에는 노동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여비례지원방식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임

- 또한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인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액지원방식이 형평성 제고에 더 유리하지만, 간접적인 수혜대상인 청년의 관점에서 본다면 임금 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급여비례지원방식이 형평성 제고에 더 유리할 수 있음

- 현행 제도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킨 과세연도에 한해 일회성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함

-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는 채용 첫해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기업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으로는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명목임금에는 하방경직성이 있어, 2년차부터 세제혜택이 사라지더라도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이에 청년이 취업하여 생산성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다년간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준다면 동 제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존재하는 한 노동수요 진작을 통한 청년 고용 증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
 - 다만 세제혜택을 다년간 제공하게 되면 기업의 고용 행태를 다년간 추적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타 조세지출 사업이나 재정지출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음
 - 동 제도는 고용지원 관련 타 조세지출이나 재정지출 사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판단됨

4. 효과성 분석

- 본 연구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을 이용하여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함
- 회귀단절모형(RDD)은 처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절점 전후에서 수혜 여부의 차이가 있는 관측치를 대상으로 제도 효과를 분석함
 - 전체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경우 제도수혜 여부라는 처치가 내생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 예컨대 처치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측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청년고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관측치들이 처치그룹에 포함되는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치효과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함
 - 회귀단절모형(RDD)은 단절점 주변의 관측치로 분석 표본을 제한하여 처치의 외생성을 높이는 분석방법임

-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들에 대한 고용정보와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KISVALUE 자료를 활용해 고용효과를 분석함
 - 세제지원의 특성상 법인세를 납부해야 수혜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후자기업과 2년 연속 후자기업에 대해 분석함

- 당해년도 후자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주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본에서 동 제도로 인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민감도 분석 결과 표본 선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표본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한계적(marginal)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 특히, 2년 연속 후자기업에 대한 분석에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청년고용 증대효과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회귀단절모형(RDD)을 통한 분석에서는 수혜규모에 차이가 없는 기업군 간의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분석할 수 없어 동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분석대상 시점인 2016년의 「청년고용증대세제」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혜규모가 동일하였음
 - 다만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에 차등지원되는 조세특례들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효과분석도 수행하였으나 중소기업이 유사한 규모의 중견기업에 비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 이에 「청년고용증대세제」 또한 다른 조세특례와 유사한 규모의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면 중소기업에서는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추측됨

5. 설문조사 분석

- 앞의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한 효과성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501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함

- 동 제도의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지집단을 지정하고 제도 도입 시점을 2016년으로 가정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이용하여 분석함
 -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기업의 고용 및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청년고용증대세로 인해 기업들의 청년 고용이 증가하였다는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의 증가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고용은 동 제도보다는 기업의 성장률 등과 같은 경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기업에 한정된 분석에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해 청년고용이 증대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대기업이 동 제도로 인해 청년고용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는 회귀식의 통제변수 설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강한 증거라고 하기는 어려움
 - 반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정된 분석에서는 동 제도의 청년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6.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 동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여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 간의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목표라면 동 제도의 설계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규모별 차등적인 세제지원 규모나 기업의 급여수준과 관계없는 정액지원 방식은 영세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다만 앞의 타당성 분석에서 검토하였듯이 기업 간의 형평성 제고보다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면 일부 제도개선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 절감을 통한 노동수요 촉진이 동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액지원방식에서 인건비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 고용 시 기업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일회성 세액공제로는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어 다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목 차

I. 서 론	21
II. 제도 현황	25
1. 제도 연혁 및 개요	27
가. 제도 연혁	27
나. 제도 개요	28
다. 유사 제도 연혁	35
2.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36
3. 2015년도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39
가. 기초통계 분석	39
나. 세액공제 규모 결정요인	46
4.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53
가. 기초통계 분석	53
나. 세액공제 규모 결정요인	56
5. 제도 관련 고용 증가 인원 현황	59
가. 동 조세특례 적용 청년 고용 증가 인원	60
나. 법인세 관련 고용 증가 현황	62
다. 소득세 관련 고용 증가 현황	66
III. 타당성 분석	69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71
2. 수행방법의 적절성	77
가.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절성	77
나. 정책지원방식의 적절성	86
다. 일회성 지원의 적절성	89

3. 다른 조세특례 또는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90
가. 조세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90
나.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92
IV. 효과성 분석	95
1. 선행연구	97
2. 분석방법론: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100
가. 회귀단절모형(RDD)의 기본적인 개념	100
나. 단절점 기준	101
다. 회귀단절모형(RDD)의 적용	104
3. 사용된 자료	105
가. 분석 자료	105
나. 분석 범위	106
다. 2016년 흑자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량	107
라. 2015~2016년 흑자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량	113
4. 당해년도 흑자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118
가. 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의 청년 고용 증대효과	119
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청년 고용 증대효과	124
다. 그래프를 이용한 회귀단절모형 분석	127
5. 2년 연속 흑자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129
가. 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의 청년 고용 증대효과	130
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청년 고용 증대효과	133
6. 민감도 분석	135
7. 분석의 한계점	141
V. 설문조사 분석	145
1. 설문조사 개요	147
2. 표본의 특성	148
3.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창출효과	150

가. 분석방법: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150
나. 기초통계량	151
다. 주요 결과	157
4.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한 인지도	161
5. 「청년고용증대세제」가 2016년 채용에 미친 효과	166
6. 「청년고용증대세제」가 2017년 채용에 미친 효과	169
VI.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173
1. 종합평가	175
2. 제도개선방안	177
참고문헌	178
부록 I.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181
부록 II.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200
부록 III. 효과성 분석 표본별 기초통계량	205
1. 2015년 흑자기업 표본	205
2. 2014~2015년 흑자기업 표본	209
부록 IV. 설문조사표	213

표 목 차

<표 II-1>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규모의 변화	28
<표 II-2> 법인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율	32
<표 II-3>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34
<표 II-4> 「청년고용증대세제」과 유사한 조세특례	35
<표 II-5>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조세지출 규모	36
<표 II-6> 세목별 조세지출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차지하는 비중	37
<표 II-7> 「청년고용증대세제」가 국세감면율에 미친 영향	37
<표 II-8>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차지하는 비중	38
<표 II-9>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평균 금액)	39
<표 II-10>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기업종류별)	40
<표 II-11>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업태별)	42
<표 II-12>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지역별)	43
<표 II-13>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자산 규모별)	44
<표 II-14>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매출액 규모별)	45
<표 II-15> 기업규모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의 상관관계 (법인세, 기업규모변수만 존재)	48
<표 II-16> 기업규모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의 상관관계 (법인세, 업태변수 포함)	49
<표 II-17> 제조업 대비 업태별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 차이(법인세)	51
<표 II-18> 기업규모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의 상관관계 (법인세, 지역변수 포함)	52
<표 II-19> 서울특별시 대비 지역별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 차이(법인세)	53
<표 II-20>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평균 금액)	54
<표 II-21>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업종별)	55
<표 II-22>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사업소득금액 규모별)	56

<표 II-23> 기업규모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의 상관관계(소득세)	58
<표 II-24> 제조업 대비 업종별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 차이(소득세)	59
<표 II-25>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기업종류별) ...	60
<표 II-26>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분포	62
<표 II-27>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법인세, 업태별)	63
<표 II-28>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법인세, 지역별)	64
<표 II-29>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법인세, 자산 규모별)	65
<표 II-30>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법인세, 매출액 규모별)	66
<표 II-31>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소득세, 업종별)	67
<표 II-32>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소득세, 사업소득금액 규모별)	68
<표 III-1> 고용보조지표의 정의	72
<표 III-2> 2016년 청년 인력 충원 시 어려움 정도	75
<표 III-3> 2017년 청년 인력 충원 시 예상되는 어려움 정도	86
<표 III-4> 기업규모에 따른 2016년 연봉과 세제지원 비율	88
<표 III-5> 청년 고용 지원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 사업	93
<표 IV-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103
<표 IV-2> 단절점 기준	104
<표 IV-3> 표본선정 반경에 따른 관측치 수(2016년 흑자기업)	108
<표 IV-4>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2016년 흑자기업)	111
<표 IV-5> 주요 변수의 기업규모별 기초통계량(2016년 흑자기업)	112
<표 IV-6> 표본선정 반경에 따른 관측치 수(2015~2016년 흑자기업)	113
<표 IV-7>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2015~2016년 흑자기업)	116

<표 IV-8> 주요 변수의 기업규모별 기초통계량(2015~2016년 후자기업)	117
<표 IV-9> 2016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2016년 후자기업)	122
<표 IV-10> 2015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2015년 후자기업)	123
<표 IV-11> Joint Test(당해년도 후자기업)	126
<표 IV-12> 2016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2015년 및 2016년 후자기업)	131
<표 IV-13> 2015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2014년 및 2015년 후자기업)	132
<표 IV-14> Joint Test(2년 연속 후자기업 표본)	134
<표 IV-15> 2016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2016년 후자기업)	136
<표 IV-16> 2015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2015년 후자기업)	137
<표 IV-17> Joint Test(당해년도 후자기업)	138
<표 IV-18> 2016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2015~2016년 후자기업)	139
<표 IV-19> 2015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2014~2015년 후자기업)	140
<표 IV-20> Joint Test(2년 연속 후자기업)	141
<표 V-1> 설문조사 개요	147
<표 V-2>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지역 분포	148
<표 V-3>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업종 분포	149
<표 V-4>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업력 분포	149
<표 V-5>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 여부	151
<표 V-6>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 여부	152
<표 V-7>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기초통계량(전체기업)	152
<표 V-8>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기초통계량(중소·중견기업)	153
<표 V-9>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기초통계량(대기업)	154
<표 V-10> 표본기업의 재무자료 기초통계량(전체기업)	155
<표 V-11> 표본기업의 재무자료 기초통계량(중소·중견기업)	156
<표 V-12> 표본기업의 재무자료 기초통계(대기업)	157
<표 V-13> 설문자료를 이용한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 분석(전체기업)	158
<표 V-14> 설문자료를 이용한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 분석(중소·중견기업)	159

<표 V-15> 설문자료를 이용한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 분석(대기업)	160
<표 V-16>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 여부(기업규모별)	161
<표 V-17>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 정도	162
<표 V-18> 「청년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규모 파악 정도	163
<표 V-19>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 시점	163
<표 V-20>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 경로	164
<표 V-21> 「청년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규모 확대 파악 정도	165
<표 V-22> 「청년고용증대세제」 제도 확대 인지 경로	165
<표 V-23> 2016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영향	166
<표 V-24> 2016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영향이 미미한 이유	167
<표 V-25> 2016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은 이유	168
<표 V-26> 2017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영향	169
<표 V-27> 2017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공제규모 확대의 영향	170
<표 V-28> 2017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영향이 미미한 이유	171
<표 V-29> 2017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은 이유	172
<부표 I-1>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기업종류별)	182
<부표 I-2>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업태별)	183
<부표 I-3>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업태 및 기업종류별)	184
<부표 I-4>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지역별)	187
<부표 I-5>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지역 및 기업종류별)	188
<부표 I-6>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자산 규모별)	193
<부표 I-7>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자본금 규모별)	194
<부표 I-8>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매출액 규모별)	195

<부표 I-9>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수입금액 규모별)	196
<부표 I-10>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과세표준 규모별)	197
<부표 I-11>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총부담세액 규모별)	198
<부표 I-12>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종업원수 규모별)	199
<부표 II-1>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업종별)	200
<부표 II-2>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201
<부표 II-3>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사업소득금액 규모별)	202
<부표 II-4>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과세표준 규모별)	203
<부표 II-5>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결정세액 규모별)	204
<부표 III-1> 표본선정 반경에 따른 관측치 수(2015년 흑자기업)	205
<부표 III-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2015년 흑자기업)	207
<부표 III-3> 주요 변수의 기업규모별 기초통계량(2015년 흑자기업)	208
<부표 III-4> 표본선정 반경에 따른 관측치 수(2014~2015년 흑자기업)	209
<부표 III-5>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2014~2015년 흑자기업)	211
<부표 III-6> 주요 변수의 기업규모별 기초통계량(2014~2015년 흑자기업)	212

그 립 목 차

[그림 II-1] 기업규모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의 상관관계(법인세)	47
[그림 II-2] 소득규모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의 상관관계(소득세)	57
[그림 III-1] 청년 및 전체 실업률 추이	71
[그림 III-2] 고용보조지표 구성 요소	73
[그림 III-3] 청년 고용보조지표 추이	74
[그림 III-4]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전단계 보조지표와의 차이 추이	74
[그림 III-5] 전체 대비 청년 실업자 및 경제활동인구 비중	76
[그림 III-6] 청년 및 전체 실업자 수 추이	76
[그림 III-7]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78
[그림 III-8]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79
[그림 III-9] 신규인력 고용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의 세제지원 효과	80
[그림 III-10] 신규인력 고용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의 세제지원 효과	81
[그림 III-11] 기업규모별 대졸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	82
[그림 III-12] 기업규모별 미충원을	83
[그림 III-13] 기업규모별 상용근로자의 이직자 비율	84
[그림 III-14] 기업규모별 상용근로자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자 비율	84
[그림 IV-1] 표본선정 반경 5%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6년 흑자기업)	109
[그림 IV-2] 표본선정 반경 7%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6년 흑자기업)	109
[그림 IV-3] 표본선정 반경 10%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6년 흑자기업)	110
[그림 IV-4] 표본선정 반경 5%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5~2016년 흑자기업)	114
[그림 IV-5] 표본선정 반경 7%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5~2016년 흑자기업)	114
[그림 IV-6] 표본선정 반경 10%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5~2016년 흑자기업)	115

[그림 IV-7] 표본선정 반경 5% 단절점 인근의 처치효과 차이 (2016년 흑자기업)	127
[그림 IV-8] 표본선정 반경 7% 단절점 인근의 처치효과 차이 (2016년 흑자기업)	128
[그림 IV-9] 표본선정 반경 10% 단절점 인근의 처치효과 차이 (2016년 흑자기업)	128
[부도 III-1] 표본선정 반경 5%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5년 흑자기업)	205
[부도 III-2] 표본선정 반경 7%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5년 흑자기업)	206
[부도 III-3] 표본선정 반경 10%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5년 흑자기업)	206
[부도 III-4] 표본선정 반경 5%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4~2015년 흑자기업)	209
[부도 III-5] 표본선정 반경 7%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4~2015년 흑자기업)	210
[부도 III-6] 표본선정 반경 10%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4~2015년 흑자기업)	210

I. 서론



I. 서론

- 고용지원이 목적인 조세특례 중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여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됨
 -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2016년도 조세지출 규모는 약 541억원임
 - 2015년도에 동 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도부터 조세지출이 발생함

- 본 연구는 2017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하여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동 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 그리고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동 제도의 일몰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함
 - 일몰을 연장할 경우 동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함

-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이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청년 실업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조세특례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유사한 목적의 다른 조세특례 및 재정지출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유사중복성이 큰 사업들 간의 조정을 위한 제도설계의 고민이 필요함

-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효과성 분석에서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을 이용해 동 제도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동 조세특례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회귀단절모형(RDD)을 통해 분석함

-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자료와 KISVALUE의 재무자료를 이용함
- 501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앞의 효과성 분석을 보완하고자 함
 - 앞의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동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처치집단 설정에 한계가 존재하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음
 - 이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기업의 고용 및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통해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설문조사는 다양한 정성적 질문을 통해 효과성 분석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일몰연장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앞의 타당성 분석과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 특히, 청년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이하의 각 장에서는 다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제Ⅱ장에서는 동 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함
 - 제Ⅳ장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함
 - 제Ⅴ장에서는 동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함
 - 제Ⅵ장에서는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Ⅱ. 제도 현황



II. 제도 현황

1. 제도 연혁 및 개요

가. 제도 연혁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15년 12월 15일에 도입되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 동 제도는 2015년 8월 10일에 입법예고되었으며, 최초 법률안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2015년 12월 15일 최종적으로 입법화됨¹⁾
 - 동 제도는 2015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2015년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부터 소급적용함

- 도입 당시 동 제도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에는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적용함

- 청년 실업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2017년 4월 18일에는 동 제도의 세액공제 규모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의 경우 300만원으로 기존보다 확대함
 - 확대된 세액공제 규모는 2017년도에 청년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적용함

1) 정부의 최초 법률안에서는 대기업의 세액공제 규모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250만원이었으나, 최종 법률안에서는 200만원으로 축소됨

〈표 II - 1〉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규모의 변화

	2015 ~ 2016년	2017년
중소기업	500만원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등 그 외 기업	200만원	300만원

자료: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 한편, 2017년 2월 7일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이 사라져 일부 기업의 경우 2016년도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속하지 못하다가 2017년 신고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규모가 증가한 기업도 존재함
 - 이러한 기업의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는 2015년도의 200만원에서 2016년도에 500만원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업종 제한 폐지로 인한 효과는 2016년도의 근로자 증가분부터 발생함
 - 다만 2017년도부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이 사라졌으나 건전한 소비문화를 저해하는 소비성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존재함

나. 제도 개요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증대시킨 대부분의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
 -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됨²⁾
 - 소비성서비스업이란 건전하지 못한 소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업종으로 관광 광숙박업에 포함되지 않는 호텔업 및 여관업과 단란주점과 같은 주점업 등이 이에 해당됨³⁾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 (청년 정의) 청년은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되며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⁴⁾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만큼 연령의 상한이 연장되어 최대 만 35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정규직 근로자 정의)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함⁵⁾
 - 또한,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⁶⁾
 - 한편, 다음과 같은 기업의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됨⁷⁾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위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기업의 이사 등의 임원

- (상시근로자 정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⁸⁾
 -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⁹⁾
 -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봄¹⁰⁾
 - 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봄¹¹⁾
 - 한편, 앞에서 살펴본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특수관계인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됨¹²⁾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3항,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6호,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3호~제5호,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6호,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2호,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3호~제5호,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 (근로자 수 계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는 과세기간의 매월 마지막 날 근로자 수의 평균을 의미함¹³⁾
 - 가령, 과세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경우 1월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명 채용하여 유지하였다면 이는 과세연도 중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명 채용한 것과 같지만, 12월에 채용하였다면 1/12명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함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전체 정규직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 (근로자 수 증가인원)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함¹⁴⁾
 -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각 과세연도의 월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의미함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 정규직과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함

- (증가인원에 대한 한도) 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청년 외의 정규직 근로자나 상시근로자를 대체하여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음¹⁵⁾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인원은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과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중 작은 인원보다 클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함

- (사후관리)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공제받은 과세연도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 고용을 감소시킬 경우 고용이 감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¹⁶⁾
 - 고용의 감소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정규직 근로자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도 포함됨¹⁷⁾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8항,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기획재정부령 제614호, 2017. 3. 17., 일부개정

15)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1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2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6항,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 기준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 근로자의 감소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인원 중 가장 큰 수에 해당 기업의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를 곱한 금액임¹⁸⁾
 - 다만, 2년 연속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고용감소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세금 납부 시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함
 - 한편,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이었던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는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청년으로 간주하여 고용의 증감 여부를 계산함¹⁹⁾
- (중복지원 배제)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²⁰⁾
- 한편, 외국인투자로 인한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나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동 제도로 인한 세액공제 규모는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지분의 비율만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²¹⁾
- (중복지원 허용) 한편, 유사한 목적의 조세특례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이하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이 허용됨²²⁾
-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킬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음
 - 즉, 2017년에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명 증가시킬 때마다 1,000만원과 청년 상시근로자의 평균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전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6항,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 (최저한세액 적용 대상)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적용으로 인한 세액이 다음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²³⁾

<표 II -2> 법인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율

구 분			최저한세율	
법인세	중소기업		7%	
	일반 기업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 기준	3년 이내	8%
			3년 초과 5년 이내	9%
		그 외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2%	
	1천억원 초과		17%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35%
			3천만원 초과	45%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 (이월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한 세액공제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²⁴⁾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금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함²⁵⁾
 - 또한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함²⁶⁾

2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제2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26)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과세관청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결정 및 경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빙서류에 근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적용하지 아니함²⁷⁾
 -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중소기업 정의)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면서 업종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함
 - 2016년도까지는 중소기업의 정의에 업종 기준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존재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업종 기준이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됨

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 2. 3., 일부개정

<표 II -3>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매출액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00억원 이하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0억원 이하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주: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대통령령 제27106호, 2016. 4. 26., 일부개정

- (중견기업 정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의미함²⁸⁾
 - 다만,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성서비스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됨²⁹⁾
 - 또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됨³⁰⁾

다. 유사 제도 연혁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하게 고용 상황이 악화된 시점에 고용증대가 목적인 조세특례가 과거에도 한시적으로 존재하였음

〈표 II -4〉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조세특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시행시기	2012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010년 3월 1일 ~ 2011년 6월 30일	2004년 7월 26일 ~ 2005년 12월 31일
수혜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포함 모든 기업
지원방식	급여비례지원방식	정액지원방식	정액지원방식
고용증가 인원당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의 100% • 그 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의 50% 	300만원	100만원

자료: 김재진 외(201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5년도 조세지출 심층평가 II』,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9, p. 554, <표 II-3> 수정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가목,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나목,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대통령령 제27467호, 2016. 8. 29., 일부개정

2.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 2016년 9월에 발표된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2016년도 조세지출은 약 54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실질적인 조세지출은 2016년도부터 발생함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은 소득세보다는 대부분 법인세에서 발생함
 - 2016년도의 경우 77.63%인 420억원의 조세지출이 법인세에서 발생함
 - 소득세에서 발생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121억원임
 - 한편, 동 조세특례로 인한 2017년도 조세지출 규모는 약 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7년도에는 법인세의 조세지출 비중이 더 증가하여 85.18%인 7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소득세의 경우에는 130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약 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5〉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

	2016년		2017년	
	규모	비중	금액	비중
합계	541	100.00	877	100.00
소득세	121	22.37	130	14.82
법인세	420	77.63	747	85.18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2016년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 541억원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지출 합계인 26조 5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 수준임
 - 법인세의 총조세지출은 약 6조 6천억원이며, 이 중 420억원인 0.64%가 동 조세특례로 인해 발생함
 - 소득세의 총조세지출은 약 19조 9천억원으로 이 중 약 0.06%인 121억원이 동 조세특례로 인하여 발생함

<표 II -6> 세목별 조세지출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원, %)

		소득세	법인세	합계	
세목별 조세지출		(A)	198,973	66,010	264,983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출규모	(B)	121	420	541
	비중	(C=B/A×100)	0.06	0.64	0.20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은 2016년 전체 조세지출 36조 5천억원 중 약 0.15%를 차지하며, 국세가 약 0.02%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도 총국세수입은 약 232조 7천억원이며, 조세지출이 전혀 없을 경우를 가정한 조정 국세수입은 269조 2천억원임
 - 조정 국세수입에서 총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56%인 것으로 나타남
 - 이중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국세감면율은 약 0.02%임
 - 이는 조정 국세수입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표 II -7> 「청년고용증대세제」가 국세감면율에 미친 영향

(단위: 억원, %)

구분			
국세수입총액		(A)	2,327,390
국세감면액		(B)	365,077
			비중
고용지원 목적 조세지출		(C)	2,843
청년고용증대세제		(D)	541
조정 국세수입액		(E=A+B)	2,692,467
국세감면율		(F=B/E×100)	13.56
고용지원 목적 조세지출		(G=C/E×100)	0.11
청년고용증대세제		(H=D/E×100)	0.02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같이 고용지원을 위한 2016년 조세지출 규모는 2,843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0.78%를 차지함
 - 고용지원 목적의 조세지출로 인한 국세감면율은 약 0.11%임

- 2016년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중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중 규모가 가장 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다음으로 큰 규모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은 약 1,534억원으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의 약 54%를 차지함
 - 또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조세지출은 약 513억원으로 동 조세특례와 유사한 수준임
 - 고용지원을 위한 총 조세지출 2,843억원 중 동 조세특례 포함 상위 3개 조세지출이 약 91%(2,588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8>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조항	조세지출	비중
고용지원 목적 조세지출	-	2,843	100
조특법상 조세지원	-	2,787	98.02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30	1,534	53.957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조특§29의5	541	19.02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30의4	513	18.04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29의4	183	6.43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30의2	14	0.492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30의3	1.69	0.059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29의2	0.01	0.000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	54.78	1.927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30의4	54	1.899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30	0.78	0.027
기타	-	1.52	0.053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2016년도 조세지출 규모 전망치는 이하에서 살펴볼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 신고자료상의 조세지출 규모와 매우 유사함

3. 2015년도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가. 기초통계 분석

- 2015년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법인은 총 2,164개로 이 중 약 80%인 1,732개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은 103개로 약 4.8%를 차지함
 -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은 330개로 약 15.2%를 차지함
-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은 동 조세특례를 통하여 평균적으로 약 0.15%의 실효세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됨³¹⁾
 -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1,334억원임
 - 평균 소득금액은 약 173억원이며, 평균 과세표준은 약 127억원임

〈표 II -9〉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평균 금액)

(단위: 백만원, %)

	총액	평균	과세표준 대비 비중
매출액	288,619,422	133,373	-
당기순이익	26,500,506	12,240	-
소득금액	37,473,103	17,309	-
과세표준	27,543,033	12,722	-
산출세액	5,896,419	2,724	21.41
총공제감면세액	434,036	200	1.58
청년고용증대세제	42,086	19	0.15
총부담세액	5,463,141	2,523	19.83

주: 법인세 신고 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2,164개 법인에 대한 통계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31)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을 의미함

- 평균 산출세액은 약 27억원으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 실효세율은 약 21.41%임
- 평균 세액공제감면액은 약 2억원으로 실효세율이 약 1.58%포인트 낮아짐
- 이중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평균 세액공제액은 약 1천 9백만원으로 실효세율을 약 0.15%포인트 감소시킴
- 가산세 등이 포함된 평균 총부담세액은 약 25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9.83%임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 폭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약 0.85%포인트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 높음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하여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약 0.35%포인트 감소함
- 대기업을 포함한 그 외 기업의 실효세율은 약 0.048%포인트 감소함

<표 II - 10>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기업종류별)

(단위: 개, 백만원, %, %포인트)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청년고용증대세제			동 특례 비중 ¹⁾	실효 세율 감소 ²⁾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개수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165	100	42,086	100	19	9.697	0.153
중소기업	1,732	80.000	25,137	59.726	15	15.885	0.847
중견기업	103	4.758	6,101	14.497	59	11.586	0.348
그 외 기업	330	15.242	10,848	25.776	33	4.862	0.048

주: 1)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총공제감면세액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2)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과세표준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총공제감면세액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약 10%임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의 비중은 중소기업이 가장 높아 약 15.9%를 차지함
- 중견기업의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약 11.6%를 차지함
-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의 경우 동 조세특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임

- 법인의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 중 중소기업에 지출된 부분이 가장 높아 약 59.7%임
 - 중견기업에 지출된 부분은 약 14.5%이며,
 -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에 지출된 부분은 약 25.8%임
 - 한편, 뒤에서 살펴볼 소득세 신고자료의 개인사업자들을 모두 중소기업이라 가정할 경우 중소기업에 지출된 비중은 68.8%로 증가함

- 업태별로 살펴보면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제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업태는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다음으로는 서비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숙박업 순임
 - 동 조세특례에 의한 제조업의 세액공제액은 약 139억원으로 전체 421억원의 약 32.9%를 차지함
 - 그다음인 서비스업의 세액공제액은 약 94억원(22.3%)이며,
 - 도매업의 세액공제액은 약 66억원(15.6%)인 것으로 분석됨
 - 소매업의 세액공제액은 약 34억원(8.0%)이며,
 - 음식·숙박업의 세액공제액은 약 25억원(5.9%)으로 나타남
 - 위 상위 5개 업태의 세액공제액은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전체 세액공제액 중 약 85%를 차지함

- 업태별 총세제혜택은 해당 업태의 법인 수와도 높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균 세제혜택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수도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3억 3천 9백만원으로 동 제도로 인한 가장 높은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인력수요가 많은 대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그다음으로는 음식·숙박업이 9천 6백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세 번째로는 보건업으로 평균적으로 약 4천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함
 - 동 제도를 신청한 기업 중 위 세 가지 업태에 속한 법인의 수가 작아 해당 업태에 속한 기업들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수의 기업들이 주로 동 제도를 신청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신청 기업 3개 중 2개의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태에서는 평균적으로 2천만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분석됨

<표 II -11>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업태별)

(단위: 개, 백만원, %, %포인트)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청년고용증대세제			동 특례 비중 ¹⁾	실효 세율 감소 ²⁾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개수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165	100	42,086	100	19	9.697	0.153
농림어업	2	0.092	19	0.044	9	99.893	1.559
광업	2	0.092	10	0.024	5	11.279	0.592
제조업	717	33.118	13,853	32.915	19	8.715	0.291
전기가스수도업	3	0.139	1,016	2.414	339	1.994	0.011
건설업	135	6.236	1,762	4.187	13	18.119	0.237
도매업	462	21.339	6,559	15.584	14	23.044	0.339
소매업	111	5.127	3,366	7.998	30	48.196	0.323
음식숙박업	26	1.201	2,491	5.919	96	82.277	0.807
운수창고통신업	74	3.418	1,469	3.490	20	40.669	0.442
금융보험업	112	5.173	1,572	3.735	14	2.076	0.022
부동산업	19	0.878	170	0.403	9	44.884	0.226
서비스업	488	22.540	9,386	22.301	19	9.850	0.467
보건업	10	0.462	401	0.953	40	52.370	1.050
기타	4	0.185	13	0.031	3	27.054	0.566

주: 1)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총공제감면세액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2)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과세표준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지역별 세액공제 규모를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에서 신청한 세액공제 규모가 약 330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함
 - 이는 기업과 인력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됨
 -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조세특례들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세제혜택이 차등지원되지만,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지역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 없어 수도권 기업이 동 제도를 선택할 유인이 있다는 점도 일부 작용하였을 것이라 판단됨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지원이 배제됨

<표 II -12>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지역별)

(단위: 개, 백만원, %, %포인트)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청년고용증대세제			동 특례 비중 ¹⁾	실효 세율 감소 ²⁾
	개수	비중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금액	비중			
전체	2,165	100	42,086	100	19	9.697	0.153
서울특별시	988	45.635	20,419	48.516	21	13.353	0.170
부산광역시	67	3.095	1,440	3.421	21	2.139	0.164
대구광역시	45	2.079	925	2.198	21	7.150	0.447
인천광역시	106	4.896	2,107	5.007	20	16.143	0.475
광주광역시	14	0.647	139	0.330	10	35.410	0.764
대전광역시	33	1.524	621	1.475	19	23.495	0.120
울산광역시	18	0.831	172	0.409	10	21.748	0.678
경기도	624	28.822	10,427	24.774	17	11.993	0.505
강원도	20	0.924	976	2.319	49	31.334	1.281
충청북도	41	1.894	656	1.558	16	13.791	0.569
충청남도	55	2.540	750	1.781	14	10.995	0.093
전라북도	24	1.109	180	0.428	8	29.321	0.568
전라남도	26	1.201	1,152	2.737	44	2.082	0.020
경상북도	40	1.848	895	2.127	22	13.672	0.024
경상남도	50	2.309	592	1.407	12	3.502	0.083
제주특별자치도	9	0.416	434	1.031	48	73.986	0.805
세종특별자치시	5	0.231	203	0.483	41	8.493	0.290

주: 1)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총공제감면세액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2)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과세표준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평균 세액공제액의 지역 간 편차는 업태 간 편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지역 평균 세액공제액은 약 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역 평균 세액공제액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4천 9백만원과 8백만원으로 업태 평균 세액공제액의 편차보다 상당히 작은 수준임

-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산이 증가할수록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 금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약 2백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함
 - 반면, 세액공제 규모는 자산 규모와 함께 증가하여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평균 세액공제 규모는 약 9천 6백만원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기업의 규모와 고용의 규모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하지만 자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청년고용증대세제」가 해당 기업의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분석됨
 - 자산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전체 공제감면세액 중에서 동 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7.9%에 이룸
 - 이에 자산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하여 약 2.1%포인트 감소함

<표 II -13>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자산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포인트)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청년고용증대세제			동 특례 비중 ¹⁾	실효 세율 감소 ²⁾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개수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165	100	42,086	100	19	9.697	0.153
5억원 이하	165	7.621	280	0.666	2	57.889	2.067
5억원~10억원	193	8.915	660	1.568	3	38.841	1.774
10억원~20억원	269	12.425	1,982	4.709	7	40.006	2.074
20억원~50억원	392	18.106	4,052	9.628	10	31.374	1.667
50억원~100억원	325	15.012	5,164	12.271	16	27.163	1.223
100억원~200억원	240	11.085	5,279	12.543	22	21.440	1.031
200억원~500억원	253	11.686	6,949	16.512	27	15.459	0.616
500억원~1,000억원	119	5.497	4,639	11.022	39	13.604	0.492
1,000억원~5,000억원	152	7.021	7,604	18.068	50	9.911	0.245
5,000억원 초과	57	2.633	5,477	13.013	96	2.552	0.026

주: 1)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총공제감면세액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2)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과세표준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 동 제도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비중은 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소하여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이 비중이 약 2.6% 수준임
-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은 동 제도로 인하여 약 0.03%포인트 감소함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 규모의 특징을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다도 자산 규모별 특징과 유사하게 나타남

□ 자산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기업의 세액공제 신청 금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기업들의 동 제도에 대한 평균 세액공제 신청 금액은 약 1백만원 정도로 규모가 작음
- 반면, 동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 금액은 매출액과 함께 증가하여 매출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1억 1천 8백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함

<표 II -14>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매출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포인트)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청년고용증대세제			동 특례 비중 ¹⁾	실효 세율 감소 ²⁾
	개수	비중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금액	비중			
전체	2,165	100	42,086	100	19	9.697	0.153
3억원 이하	34	1.570	37	0.087	1	56.754	2.606
3~5억원	25	1.155	20	0.046	1	40.262	1.428
5~10억원	90	4.157	196	0.466	2	37.969	1.929
10~20억원	171	7.898	570	1.354	3	37.230	1.590
20~50억원	414	19.122	2,495	5.927	6	27.780	1.496
5~100억원	356	16.443	3,492	8.298	10	19.323	1.206
100~200억원	378	17.460	6,099	14.492	16	25.565	1.144
200~300억원	190	8.776	4,121	9.792	22	18.883	0.955
300~500억원	176	8.129	4,672	11.102	27	16.704	0.542
500~1,000억원	142	6.559	5,696	13.535	40	16.484	0.555
1,000~5,000억원	130	6.005	7,832	18.609	60	9.203	0.259
5,000억원 초과	58	2.679	6,854	16.286	118	3.241	0.032
없음	1	0.046	2	0.005	2	100.000	0.425

주: 1)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총공제감면세액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2)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과세표준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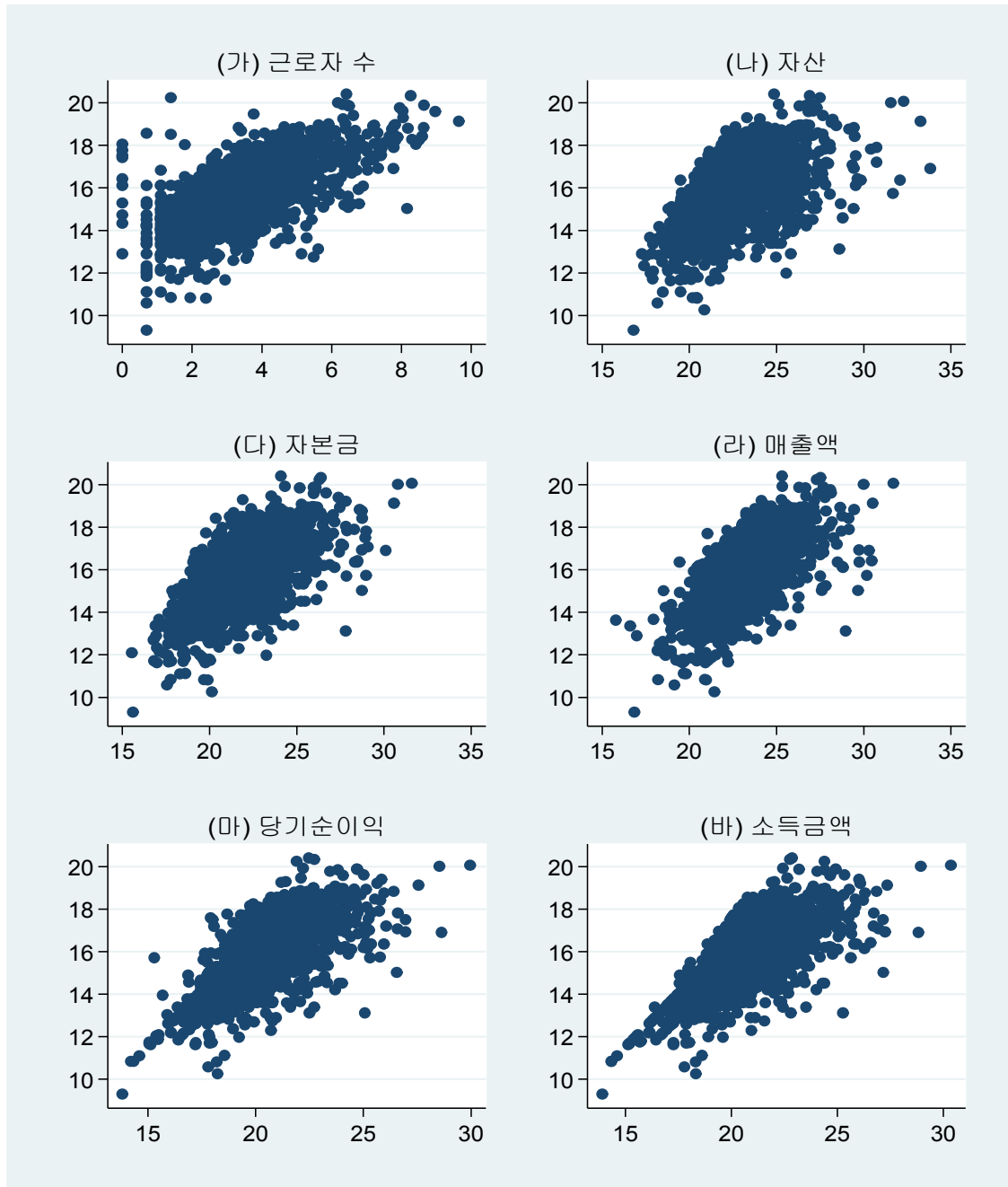
-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동 제도를 통한 절대적인 세액공제 규모는 작지만 해당 기업의 전체 세액공제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커짐
 -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기업의 동 제도로 인한 평균 세액공제액은 해당 기업의 전체 세액공제액에의 약 56.8%를 차지함
 - 반면, 매출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전체 세액공제감면액에서 동 제도의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로 낮은 수준임

나. 세액공제 규모 결정요인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 제도에 의한 개별 기업의 세액공제 규모는 기업 규모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
 - 이러한 특징은 아래의 [그림 II-1]에서도 확인되는데, 「청년고용증대세제」에 의한 세액공제 규모는 상시근로자 수, 자산,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등으로 측정된 기업 규모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표 II-15>에서 보여주듯이 「청년고용증대세제」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기업 규모 변수에 대한 탄력성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
 - 상시근로자 수가 1% 증가할 경우 동 제도에 의한 세액공제액은 0.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이 1% 증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0.4% 증가하며,
 - 자본금이 1% 증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0.45%,
 - 매출액이 1% 증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0.54%,
 - 당기순이익이 1% 증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0.56%,
 - 소득금액이 1% 증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0.5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동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증가가 필요조건인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창출의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세지출이라는 특성상 순이익이 많아 납부할 세액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커져 기업의 규모와 세제혜택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 이는 저량(stock)변수인 자산 혹은 자본금보다 유량(flow)변수로서 과세표준에 더 가까운 매출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의 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 -2] 기업규모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의 상관관계(법인세)



주: 1. 가로축은 기업규모변수의 자연대수 값

2. 세로축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한 세액공제액의 자연대수 값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표 II -15〉 기업규모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의 상관관계
(법인세, 기업규모변수만 존재)

변수	회귀분석의 주요 설명 변수					
	근로자수	자산	자본금	매출액	당기 순이익	소득 금액
ln(근로자 수)	0.6535*** (0.0184)					
ln(자산)		0.3996*** (0.0127)				
ln(자본금)			0.4475*** (0.0122)			
ln(매출액)				0.5432*** (0.0137)		
ln(당기순이익)					0.5563*** (0.0127)	
ln(소득금액)						0.5557*** (0.0122)
상수	13.5371*** (0.0703)	6.7059*** (0.2891)	6.0095*** (0.2662)	3.2187*** (0.3164)	4.4692*** (0.2595)	4.3475*** (0.2507)
관측치 수	1,784	2,165	2,154	2,164	2,146	2,165
결정계수(R ²)	0.4147	0.3135	0.3861	0.4222	0.4706	0.4912

주: 1. 종속변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한 세액공제액의 자연대수 값
 2.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표 II-11>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동 제도에 의한 개별 기업 세액공제액이 업태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업의 규모를 통제한 뒤 업태의 영향을 살펴보면 앞의 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남
- <표 II-11>에서 전기·가스·수도업에 속한 기업의 세액공제액이 다른 업태의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해당 업태의 고유한 특성보다는 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표 II-16>의 회귀분석에서 기업 규모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전기·가스·수도업의 세액공제액이 전체 평균과 유사한 제조업의 세액공제액과 통계적으로 유사하다는 귀무가설을 10% 유의수준에서도 기각할 수 없음

〈표 II -16〉 기업규모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의 상관관계
(법인세, 업태변수 포함)

변수	회귀분석의 주요 설명 변수					
	근로자 수	자산	자본금	매출액	당기 순이익	소득 금액
ln(근로자 수)	0.6601*** (0.0188)					
ln(자산)		0.4960*** (0.0133)				
ln(자본금)			0.4819*** (0.0124)			
ln(매출액)				0.5632*** (0.0138)		
ln(당기순이익)					0.5696*** (0.0129)	
ln(소득금액)						0.5671*** (0.0123)
상수	14.6903*** (0.7850)	3.9782*** (0.7572)	4.7212*** (0.7306)	2.6188*** (0.7377)	3.3480*** (0.6920)	3.2010*** (0.6771)
건설업	-0.2812** (0.1184)	-0.2102** (0.1052)	-0.2900*** (0.1034)	-0.4610*** (0.1012)	-0.2366** (0.0977)	-0.1889** (0.0957)
도매업	0.0381 (0.0756)	-0.0840 (0.0678)	-0.0413 (0.0669)	-0.3397*** (0.0645)	-0.0575 (0.0629)	-0.0336 (0.0617)
소매업	-0.0380 (0.1221)	0.1784 (0.1144)	0.2712** (0.1131)	-0.1719 (0.1101)	0.1754* (0.1064)	0.1813* (0.1040)
음식·숙박업	0.3138 (0.2345)	0.5661** (0.2234)	0.7134*** (0.2197)	0.4373** (0.2155)	0.7337*** (0.2109)	0.6691*** (0.2032)
운수·창고·통신업	-0.4413*** (0.1482)	-0.0266 (0.1367)	-0.0539 (0.1352)	-0.2029 (0.1317)	-0.0660 (0.1274)	-0.0551 (0.1243)
금융·보험업	-0.7378*** (0.1146)	-2.1542*** (0.1200)	-1.3395*** (0.1144)	-0.8192*** (0.1096)	-0.8931*** (0.1054)	-0.8718*** (0.1035)
부동산업	0.0160 (0.3213)	-0.9101*** (0.2603)	-0.6375** (0.2558)	-0.6421** (0.2508)	-0.5145** (0.2409)	-0.6091** (0.2366)
서비스업	-0.2465*** (0.0706)	0.2096*** (0.0677)	0.1167* (0.0661)	0.1997*** (0.0650)	0.0811 (0.0622)	0.0659 (0.0606)
보건업	-0.0738 (0.3934)	0.4809 (0.3567)	0.6605* (0.3506)	0.6254* (0.3438)	1.1676*** (0.3476)	1.0487*** (0.3242)
관측치 수	1,784	2,165	2,154	2,164	2,146	2,165
결정계수(R ²)	0.4367	0.4181	0.4370	0.4590	0.4999	0.5183

- 주: 1. 종속변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한 세액공제액의 자연대수 값
 2. 업태 가변수(dummy variable)는 제조업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모든 모형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은 가변수(dummy variable)는 위 표에서 생략
 3.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4.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한편, 위 회귀분석에서 기업규모변수를 포함하더라도 일부 업태의 세액공제액은 제조업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추정됨
 - <표 II-17>은 위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한 것으로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더라도 해당 업태의 세액공제액이 제조업에 비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임
 - 가령, <표 II-16>에서 기업규모변수로 매출액을 사용하였을 경우 서비스업에 대한 상관계수가 0.1997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표 II-17>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매출액 규모가 동일하다면 동 제도로 인한 서비스업의 세액공제액이 제조업보다 약 22.1%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기업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보건업의 「청년고용증대세제」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제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음식·숙박업의 경우 기업규모변수에 따라 제조업보다 54.85~108.28%가량 세액공제액이 높음
 - 서비스업의 경우 기업규모변수로 자산, 자본금, 매출액을 사용할 경우 제조업보다 12.38~23.32%가량 세액공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변수로 당기순이익과 소득금액을 고려할 경우에는 제조업과 유사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
 - 보건업의 경우 기업규모변수로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을 사용할 경우 제조업보다 86.9~221.43%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기업규모변수로 자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기업규모가 동일하더라도 건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의 세액공제액은 제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건설업의 경우 기업규모변수에 따라 제조업보다 17.21~36.93%가량 세액공제액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금융·보험업은 52.18~88.40%가량 제조업보다 낮고,
 - 부동산업은 40.22~47.38%가량 제조업보다 세액공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17> 제조업 대비 업태별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 차이(법인세)

(단위: %)

업태	회귀분석의 주요 설명 변수					
	근로자수	자산	자본금	매출액	당기 순이익	소득 금액
건설업	-24.51	-18.96	-25.17	-36.93	-21.07	-17.21
도매업	3.88	-8.06	-4.05	-28.80	-5.59	-3.30
소매업	-3.73	19.53	31.15	-15.79	19.17	19.88
음식·숙박업	36.86	76.14	104.09	54.85	108.28	95.25
운수·창고·통신업	-35.68	-2.62	-5.25	-18.36	-6.39	-5.36
금융·보험업	-52.18	-88.40	-73.80	-55.92	-59.06	-58.18
부동산업	1.61	-59.75	-47.14	-47.38	-40.22	-45.62
서비스업	-21.85	23.32	12.38	22.10	8.45	6.81
보건업	-7.11	61.75	93.58	86.90	221.43	185.39

주: 음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 기업의 규모를 통제한 뒤 지역별 「청년고용증대세제」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살펴 보면, 서울특별시에 비해 남부지방의 세액공제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모든 기업규모변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서울특별시에 비하여 동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표 II-12>에서 보여주듯이 전라남도의 경우 평균 세액공제액이 약 4천 4백만원으로 서울특별시의 2천 1백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음
 - 이러한 평균 세액공제액의 차이를 <표 II-18>의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해석하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들의 규모가 서울특별시에 비해 전라남도가 더 크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 세액공제액을 비교하면 전라남도의 세액공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규모의 기업들을 비교하면 오히려 전라남도의 세액공제액이 더 낮은 것을 의미함
 - 경상남도의 경우 기업규모를 당기순이익으로 통제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기업규모변수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액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는 기업규모변수로 자산을 가정할 경우에만 서울특별시보다 유의하게 세액공제액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나, 다른 기업규모변수로 통제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표 II-12>에서 보여주듯이 대구광역시의 평균 세액공제액은 2천 1백만원으로 서울특별시와 유사함

- 하지만 <표 II-18>의 회귀분석 결과는 동일한 규모의 기업들을 비교할 경우 서울특별시보다 대구광역시의 세액공제액이 더 작은 것을 의미함

□ <표 II-19>는 <표 II-18>의 회귀분석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있는 동일한 규모의 기업과 비교하여 해당 지역에 속한 기업의 세액공제액 차이를 비율로 환산하여 보여줌

<표 II -18> 기업규모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의 상관관계
(법인세, 지역변수 포함)

변수	회귀분석의 주요 설명 변수					
	근로자수	자산	자본금	매출액	당기 순이익	소득 금액
ln(근로자 수)	0.6543*** (0.0184)					
ln(자산)		0.4082*** (0.0128)				
ln(자본금)			0.4496*** (0.0122)			
ln(매출액)				0.5426*** (0.0137)		
ln(당기순이익)					0.5554*** (0.0128)	
ln(소득금액)						0.5548*** (0.0122)
상수	13.5632*** (0.0752)	6.5989*** (0.2892)	6.0079*** (0.2668)	3.2277*** (0.3181)	4.4915*** (0.2614)	4.3579*** (0.2526)
대구광역시	-0.0420 (0.1784)	-0.4019** (0.1836)	-0.1323 (0.1760)	0.0364 (0.1692)	0.0391 (0.1620)	0.0444 (0.1589)
울산광역시	-0.3660 (0.2815)	-0.5945** (0.2863)	-0.2740 (0.2716)	-0.2137 (0.2640)	-0.2699 (0.2526)	-0.2422 (0.2479)
전라북도	-0.7688*** (0.2815)	-0.9866*** (0.2485)	-0.7732*** (0.2408)	-0.6040*** (0.2294)	-0.4092* (0.2197)	-0.3837* (0.2155)
전라남도	-0.5438** (0.2467)	-0.5758** (0.2393)	-0.5626** (0.2271)	-0.3668* (0.2206)	-0.4331** (0.2111)	-0.3865* (0.2071)
경상북도	0.0110 (0.1898)	-0.3464* (0.1945)	-0.2458 (0.1844)	-0.0193 (0.1790)	-0.0568 (0.1714)	-0.0056 (0.1681)
경상남도	-0.4653*** (0.1744)	-0.6535*** (0.1749)	-0.4674*** (0.1657)	-0.2862* (0.1609)	-0.2266 (0.1540)	-0.2641* (0.1511)
관측치 수	1,784	2,165	2,154	2,164	2,146	2,165
결정계수(R ²)	0.4245	0.3287	0.3949	0.4282	0.4753	0.4959

- 주: 1. 종속변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한 세액공제액의 자연대수 값
 2. 지역 가변수(dummy variable)는 서울특별시와 차이를 의미하며, 모든 모형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은 가변수(dummy variable)는 위 표에서 생략
 3.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4.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전라북도의 기업들은 서울특별시의 동일한 규모의 기업들에 비해 31.87~62.72% 가량 세액공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기업들은 서울특별시의 기업들에 비해 30.71~43.77%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경상남도의 기업들은 서울특별시에 비해 23.21~47.98%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기업의 규모를 당기순이익으로 통제할 경우에는 경상남도과 서울특별시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II -19> 서울특별시 대비 지역별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 차이(법인세)

(단위: %)

지역	회귀분석의 주요 설명 변수					
	근로자수	자산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대구광역시	-4.11	-33.10	-12.39	3.71	3.99	4.54
울산광역시	-30.65	-44.82	-23.97	-19.24	-23.65	-21.51
전라북도	-53.64	-62.72	-53.85	-45.34	-33.58	-31.87
전라남도	-41.95	-43.77	-43.03	-30.71	-35.15	-32.06
경상북도	1.11	-29.28	-21.79	-1.91	-5.52	-0.56
경상남도	-37.21	-47.98	-37.34	-24.89	-20.28	-23.21

주: 음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4.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가. 기초통계 분석

-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개인사업자는 동 조세특례를 통하여 평균적으로 약 1.96%의 실효세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됨³²⁾
 -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약 2억 8천 4백만원이며, 그 중 사업소득금액이 약 2억 7천 7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32)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을 의미함

- 평균 과세표준은 약 2억 7천 4백만원임
- 평균 산출세액은 약 8천 7백만원으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 실효세율은 약 31.69%임
- 평균 세액공제감면액은 약 1천 3백만원으로 실효세율이 약 4.67%포인트 낮아짐
- 이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평균 세액공제액은 약 5백만원으로 실효세율을 약 1.96%포인트 감소시킴
- 이에 평균 결정세액은 약 7천 4백만원으로 실효세율은 약 27.02%임

<표 II -20>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평균 금액)

(단위: 백만원, %)

	총액	평균	과세표준 대비 비중
종합소득금액	644,172	284	-
사업소득금액	628,739	277	-
과세표준	620,570	273	-
산출세액	196,672	87	31.69
총공제감면세액	28,968	13	4.67
청년고용증대세제	12,187	5	1.96
결정세액	167,705	74	27.02

주: 소득세 신고 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2,269명에 대한 통계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업종별로 살펴보면 동 제도로 인한 소득세 전체 조세지출 122억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84억원으로 약 69%를 차지함
 - 그다음으로 제조업이 11억원으로 약 9.3%를 차지하며,
 - 세 번째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8억 6천만원으로 약 7.1%를 차지함
 - 네 번째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7억 5천 5백만원으로 약 6.2%를 차지함

- 업종별 평균 세액공제액을 살펴보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약 1천 1백만원으로 가장 높음
 - 그다음으로는 제조업으로 약 7백만원이며, 세 번째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약 6백만원으로 전체 평균인 5백만원보다 높음

<표 II -21>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업종별)

(단위: 개, 백만원, %, %포인트)

집단구분	신고인원 수		청년고용증대세제			동 특례 비중 ¹⁾	실효 세율 감소 ²⁾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개수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269	100	12,187	100	5	42.071	1.964
농업, 임업 및 어업	2	0.088	4	0.031	2	6.409	0.551
제조업	170	7.492	1,138	9.337	7	17.733	1.959
건설업	7	0.309	30	0.244	4	26.143	2.971
도매 및 소매업	212	9.343	862	7.076	4	49.851	2.772
운수업	9	0.397	29	0.238	3	45.015	2.265
숙박 및 음식점업	76	3.349	311	2.549	4	61.776	3.63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0.926	93	0.760	4	29.566	2.8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0.264	5	0.043	1	38.577	0.47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9	11.855	755	6.191	3	43.799	2.5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	0.529	127	1.044	11	19.564	1.963
교육서비스업	15	0.661	63	0.519	4	79.705	5.82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80	60.820	8,417	69.065	6	50.138	1.79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0.176	19	0.159	5	67.084	7.39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86	3.790	334	2.744	4	68.960	3.940

주: 1)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개인의 총공제감면세액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2)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개인의 과세표준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들도 사업규모가 증가할수록 동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동 제도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약 1백만원이거나 그 이하임

○ 반면,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액도 증가하여 사업소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액은 약 1천 9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 -22〉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사업소득금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인원 수		청년고용증대세제			동 특례 비중 ¹⁾	실효 세율 감소 ²⁾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개수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269	100	12,187	100	5	42.071	1.964
1,000만원 이하	20	0.881	5	0.038	0	17.720	1.213
1,000만원~2,000만원	23	1.014	13	0.105	1	46.915	2.685
2,000만원~3,000만원	48	2.115	51	0.416	1	56.224	3.204
3,000만원~4,000만원	68	2.997	100	0.820	1	56.257	4.261
4,000만원~5,000만원	72	3.173	139	1.137	2	58.765	4.604
5,000만원~6,000만원	98	4.319	215	1.767	2	54.046	4.332
6,000만원~8,000만원	173	7.625	482	3.953	3	54.559	4.251
8,000만원~1억원	187	8.242	645	5.294	3	53.375	4.088
1억원~1억 5,000만원	376	16.571	1,493	12.252	4	49.566	3.381
1억 5,000만원~2억원	313	13.795	1,349	11.066	4	45.126	2.612
2억원~3억원	314	13.839	1,727	14.170	5	46.029	2.306
3억원~5억원	287	12.649	2,300	18.873	8	45.583	2.147
5억원~10억원	209	9.211	2,095	17.191	10	37.077	1.509
10억원 초과	81	3.570	1,574	12.919	19	28.778	0.960

주: 1)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개인의 총공제감면세액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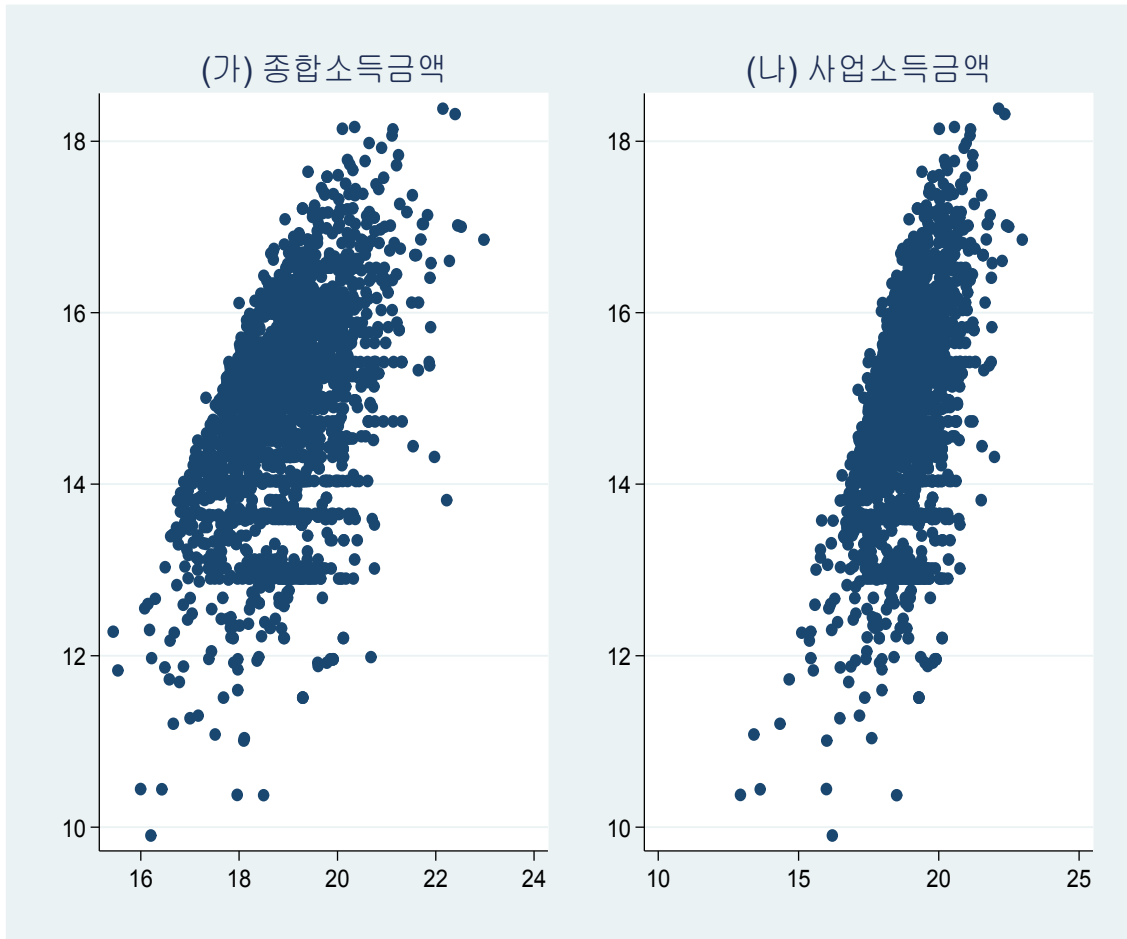
2)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개인의 과세표준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나. 세액공제 규모 결정요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 조세특례에 의한 세액공제 규모는 소득규모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 이러한 특징은 [그림 II-2]에서 확인됨
 - 특히, 법인과 유사하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규모가 증가할수록 동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줌

[그림 II -3] 소득규모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의 상관관계(소득세)



주: 1. 가로축은 소득규모변수의 자연대수 값
 2. 세로축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한 세액공제액의 자연대수 값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 <표 II-23>에서 보여주듯이 「청년고용증대세제」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소득규모변수에 대한 탄력성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에 대한 가변수(dummy variable)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 증가할 경우 동 제도에 의한 세액공제액은 0.58% 증가하며,
- 사업소득금액이 1% 증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0.57% 증가함

<표 II -23> 기업규모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의 상관관계(소득세)

업종 가변수 포함 여부	업종 가변수 미포함		업종 가변수 포함		
	주요 설명 변수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ln(종합소득)	0.5767*** (0.0223)		0.6219*** (0.0246)		
ln(사업소득)		0.5702*** (0.0209)		0.6168*** (0.0230)	
상수	3.9501*** (0.4227)	4.0965*** (0.3952)	3.3140*** (0.4729)	3.4324*** (0.4426)	
운수업			-0.5971* (0.3475)	-0.5781* (0.34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293*** (0.4219)	-0.6788 (0.41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2615*** (0.1005)	-0.2623*** (0.09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0.4169 (0.3031)	0.4975* (0.2990)	
보건의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3149*** (0.0830)	-0.3181*** (0.0819)	
관측치 수	2,268	2,268	2,269	2,269	
결정계수(R ²)	0.2281	0.2477	0.2504	0.2926	

- 주: 1. 종속변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한 세액공제액의 자연대수 값
 2. 업종 가변수(dummy variable)는 제조업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모든 모형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은 가변수(dummy variable)는 위 표에서 생략
 3.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4.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한편, 사업소득규모가 같더라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속한 개인 사업자는 제조업에 속한 개인사업자보다 동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세액공제액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표 II-23>에서 주요 설명변수가 사업소득금액일 경우 해당 업종을 나타내는 가변수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0.4975로 추정된 것에서 알 수 있음
 -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액공제액 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추정치는 <표 II-24>에서 설명하듯이 동일한 사업소득금액이더라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에 비해 약 64.46% 더 많은 세액공제액을 신청하였음을 의미함

- 반면 사업소득규모와 종합소득규모가 같더라도 운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세액공제액은 제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운수업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제조업보다 43.9~44.96%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23.01~23.07%가량 낮으며,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27.01~27.05%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소득규모변수 중 종합소득규모를 이용할 경우 제조업보다 약 67.67%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업소득규모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표 II -24> 제조업 대비 업종별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규모 차이(소득세)

(단위: %)

업종	회귀분석의 주요 설명 변수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운수업	-44.96	-43.90
부동산업 및 임대업	-67.67	-49.2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3.01	-23.0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1.73	64.4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01	-27.25

주: 음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5. 제도 관련 고용 증가 인원 현황

- 동 제도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였을 경우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세제혜택 규모로부터 간접적으로 개별 기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추정할 수 있음
 - 이에 본 소절에서는 고용증가 현황에 대해 살펴봄
- 다만, 이렇게 추정된 고용 증가 인원이 동 제도의 고용창출효과라고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 동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켰을 기업들도 동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의한 고용창출은 동 제도의 효과라 할 수 없어 고용효과가 과대계상될 위험이 존재함
- 반면 동 제도로 인해 고용창출을 하였더라도 최저한세나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은 산출세액 등으로 인해 동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 고용효과가 과소계상될 수 있음
- 이에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효과성 분석에서 살펴봄
- 본 소절에서 살펴보는 고용 증가 인원은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

가. 동 조세특례 적용 청년 고용 증가 인원

- 기업들은 2015년 약 14,10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 것에 대하여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함
 - 이 중 법인의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약 11,672명으로 전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의 82.7%를 차지함
 - 개인사업체의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약 2,437명으로 전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의 약 17.3%임

<표 II -25>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기업종류별)

(단위: 개, 백만원, 명, %)

구간	신고 법인(인원) 수	총 세액공제액	총 청년고용 증가인원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	
				비중		
전체	4,434	54,273	14,109.21	100	3.18	
법인	소계	2,165	42,086	11,671.80	82.72	5.39
	중소기업	1,732	25,137	5,027.35	35.63	2.90
	중견기업	103	6,101	1,220.27	8.65	11.85
	그외기업	330	10,848	5,424.18	38.44	16.44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2,269	12,187	2,437.41	17.28	1.07
중소기업 계		4,001	37,324	7,464.76	52.91	1.87

주: 개인사업자는 모두 중소기업이라 가정함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수혜대상 기업 중 개인사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은 약 7,465명으로 전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의 약 52.91%를 차지함
 -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약 1,220명으로 전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의 약 8.65%를 차지하며,
 -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의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5,424명으로 전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의 약 38.44%인 것으로 나타남

-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의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은 약 3.18명인 것으로 나타남
 - 법인의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은 약 5.39명으로, 개인사업자의 1.07명보다 높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인 1명이 1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동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수치로 실제 개인사업체의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은 위 수치보다 낮을 수 있음
 - 법인 중에서도 대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들의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은 16.44명으로, 중견기업의 11.85명이나 중소기업의 2.9명보다 높음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1인 이하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기업의 56.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1인 이하가 전체의 71.31%를 차지함
 - 법인은 약 40.09% 수준임

- 한편, 법인의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55개가 존재함
 -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31개이며,
 - 그중 13개 기업이 100명을 초과하여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킴
 - 200명을 초과하여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 기업도 5개가 존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이 모두 20명 이하임

<표 II -26>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분포

(단위: 개, 백만원, 명, %)

고용 증가 인원	소득세			법인세			전체		
	신고 인원수	비중	누적 비중	신고 법인수	비중	누적 비중	기업수	비중	누적 비중
전체	2,269	100	-	2,165	100	-	4,434	100	-
1인 이하	1,618	71.31	71.31	868	40.09	40.09	2,486	56.07	56.07
1인~2인	381	16.79	88.10	390	18.01	58.11	771	17.39	73.46
2인~3인	118	5.20	93.30	206	9.52	67.62	324	7.31	80.76
3인~4인	63	2.78	96.08	156	7.21	74.83	219	4.94	85.70
4인~5인	32	1.41	97.49	90	4.16	78.98	122	2.75	88.45
5인~10인	46	2.03	99.52	239	11.04	90.02	285	6.43	94.88
10인~20인	11	0.48	100	110	5.08	95.10	121	2.73	97.61
20인~30인	-	-	-	51	2.36	97.46	51	1.15	98.76
30인~50인	-	-	-	24	1.11	98.57	24	0.54	99.30
50인~100인	-	-	-	18	0.83	99.40	18	0.41	99.71
100인~200인	-	-	-	8	0.37	99.77	8	0.18	99.89
200인 초과	-	-	-	5	0.23	100	5	0.11	100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나. 법인세 관련 고용 증가 현황

- 법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065명으로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나타냄
 - 그다음으로는 서비스업으로 2,584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함
 - 세 번째로는 도매업으로 1,505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함
 - 네 번째로는 음식·숙박업으로 1,112명의 청년 고용이 증가함
 - 다섯 번째로는 소매업으로 1,000명의 청년 고용이 증가함

〈표 II -27〉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법인세, 업태별)

(단위: 개, 백만원, 명, %)

집단	신고법인 수	총 세액공제액	총 청년고용 증가인원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
				비중	
전체	2,165	42,086	11,671.80	100	5.39
농림어업	2	19	9.32	0.08	4.66
광업	2	10	1.99	0.02	0.99
제조업	717	13,853	3,064.94	26.26	4.27
전기·가스·수도업	3	1,016	507.99	4.35	169.33
건설업	135	1,762	487.66	4.18	3.61
도매업	462	6,559	1,504.80	12.89	3.26
소매업	111	3,366	999.91	8.57	9.01
음식·숙박업	26	2,491	1,112.41	9.53	42.79
운수·창고·통신업	74	1,469	445.42	3.82	6.02
금융·보험업	112	1,572	764.29	6.55	6.82
부동산업	19	170	62.18	0.53	3.27
서비스업	488	9,386	2,584.25	22.14	5.30
보건업	10	401	122.74	1.05	12.27
기타	4	13	3.90	0.03	0.97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 법인의 전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인 11,672명 중 위 다섯 개 업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9.39%에 이룸
 -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약 26.26%이며,
 - 서비스업의 비중은 약 22.14%,
 - 도매업의 비중은 약 12.89%,
 - 음식·숙박업의 비중은 약 9.53%
 - 소매업의 비중은 약 8.57%인 것으로 분석됨

- 업태별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인원을 살펴보면, 전기·가스·수도업이 약 169명으로 다른 업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다음으로 높은 음식·숙박업의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이 약 43명으로, 이보다도 전기·가스·수도업의 증가 인원이 약 126명 많음
 - 하지만 앞의 세액공제 규모 결정요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전기·가스·수도업의 고유한 특성이기보다는 해당 업태의 기업 규모가 다른 업태들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보건업도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이 약 12명으로 다른 업태들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 정규직 증가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서 약 8,84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체 증가 인원의 약 75.81%에 해당됨
- 지역별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을 살펴보면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는 앞의 세액공제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해당 지역의 기업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표 II -28〉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법인세, 지역별)

(단위: 개, 백만원, 명, %)

집단	신고법인 수	총 세액공제액	총 청년고용 증가인원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
				비중	
전체	2,165	42,086	11,671.80	100	5.39
서울특별시	988	20,419	5,684.23	48.70	5.75
부산광역시	67	1,440	386.71	3.31	5.77
대구광역시	45	925	241.64	2.07	5.37
인천광역시	106	2,107	512.75	4.39	4.84
광주광역시	14	139	35.61	0.31	2.54
대전광역시	33	621	135.01	1.16	4.09
울산광역시	18	172	38.53	0.33	2.14
경기도	624	10,427	2,651.79	22.72	4.25
강원도	20	976	389.87	3.34	19.49
충청북도	41	656	138.41	1.19	3.38
충청남도	55	750	188.12	1.61	3.42
전라북도	24	180	40.41	0.35	1.68
전라남도	26	1,152	506.99	4.34	19.5
경상북도	40	895	339.53	2.91	8.49
경상남도	50	592	161.31	1.38	3.23
제주특별자치도	9	434	140.65	1.21	15.63
세종특별자치시	5	203	80.25	0.69	16.05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즉, 기업규모가 동일하다면 다른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그 지역이 특이한 것은 아님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청년 고용 증가 인원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의 <표 II-29>와 <표 II-30>은 각각 기업규모를 자산과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두 가지 기업규모에 대한 지표 모두에 대하여 평균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이 기업규모와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 -29>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법인세, 자산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명, %)

집단	신고법인 수	총 세액공제액	총 청년고용 증가인원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
				비중	
전체	2,165	42,086	11,671.80	100	5.39
5억원 이하	165	280	57.18	0.49	0.35
5~10억원	193	660	137.78	1.18	0.71
10~20억원	269	1,982	450.53	3.86	1.67
20~50억원	392	4,052	855.60	7.33	2.18
50~100억원	325	5,164	1,099.29	9.42	3.38
100~200억원	240	5,279	1,346.33	11.53	5.61
200~500억원	253	6,949	1,521.99	13.04	6.02
500~1,000억원	119	4,639	1,048.45	8.98	8.81
1,000~5,000억원	152	7,604	2,451.17	21.00	16.13
5,000억원 초과	57	5,477	2,703.50	23.16	47.43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표 II -30〉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법인세, 매출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명, %)

집단	신고법인 수	총 세액공제액	총 청년고용 증가인원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
				비중	
전체	2,165	42,086	11,671.80	100	5.39
3억원 이하	34	37	7.53	0.06	0.22
3~5억원	25	20	4.33	0.04	0.17
5~10억원	90	196	40.91	0.35	0.45
10~20억원	171	570	127.64	1.09	0.75
20~50억원	414	2,495	560.91	4.81	1.35
5~100억원	356	3,492	773.95	6.63	2.17
100~200억원	378	6,099	1,342.04	11.50	3.55
200~300억원	190	4,121	886.80	7.60	4.67
300~500억원	176	4,672	1,034.15	8.86	5.88
500~1,000억원	142	5,696	1,426.66	12.22	10.05
1,000~5,000억원	130	7,832	2,077.70	17.80	15.98
5,000억원 초과	58	6,854	3,388.19	29.03	58.42
값 없음	1	2	1.00	0.01	1.00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다. 소득세 관련 고용 증가 현황

- 개인사업자가 증가시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인원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83명으로 개인사업자 전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인 2,437명의 약 69.07%를 차지함
 -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약 9.34%(228명)임
 - 세 번째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약 7.08%(172명)임
 - 네 번째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약 6.19%(151명)임

- 개인사업자의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은 약 1.07명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25명으로 전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1.04%)은 크지 않으나, 평균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약 2.12명으로 다른 업종보다 높음
 - 그다음으로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약 1.34명임
 - 세 번째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약 1.22명임
 - 그 외 다른 업종의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은 모두 1명 이하로 전체 업종의 평균보다 낮음

〈표 II -31〉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소득세, 업종별)

(단위: 개, 백만원, 명, %)

집단	신고인원 수	총 세액공제액	총청년고용 증가인원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
				비중	
전체	2,269	12,187	2,437.41	100	1.07
농업, 임업 및 어업	2	4	0.75	0.03	0.37
제조업	170	1,138	227.58	9.34	1.34
건설업	7	30	5.95	0.24	0.85
도매 및 소매업	212	862	172.47	7.08	0.81
운수업	9	29	5.80	0.24	0.64
숙박 및 음식점업	76	311	62.13	2.55	0.8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93	18.52	0.76	0.88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5	1.04	0.04	0.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9	755	150.91	6.19	0.5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	127	25.46	1.04	2.12
교육서비스업	15	63	12.64	0.52	0.8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80	8,417	1,683.41	69.07	1.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19	3.88	0.16	0.9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86	334	66.87	2.74	0.78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 개인사업자 또한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개인사업체의 규모를 사업소득금액으로 측정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약 0.05명 증가시키는 데 그침
 - 이는 조세지출의 특성상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세액공제의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업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가 추가적인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할수록 청년 고용 증가 인원도 함께 증가하여 사업소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약 3.8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2014년보다 2015년에 더 고용함

〈표 II -32〉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소득세, 사업소득금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명, %)

집단	신고인원 수	총 세액공제액	총 청년고용 증가인원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
				비중	
전체	2,269	12,187	2,437.41	100	1.07
1,000만원 이하	20	5	0.94	0.04	0.05
1,000~2,000만원	23	13	2.56	0.11	0.11
2,000~3,000만원	48	51	10.13	0.42	0.21
3,000~4,000만원	68	100	19.98	0.82	0.29
4,000~5,000만원	72	139	27.73	1.14	0.39
5,000~6,000만원	98	215	43.08	1.77	0.44
6,000~8,000만원	173	482	96.34	3.95	0.56
8,000만원~1억원	187	645	129.03	5.29	0.69
1억~1억 5,000만원	376	1,493	298.62	12.25	0.79
1억 5,000만원~2억원	313	1,349	269.71	11.07	0.86
2~3억원	314	1,727	345.38	14.17	1.10
3~5억원	287	2,300	460.01	18.87	1.60
5~10억원	209	2,095	419.01	17.19	2.00
10억원 초과	81	1,574	314.89	12.92	3.89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Ⅲ. 타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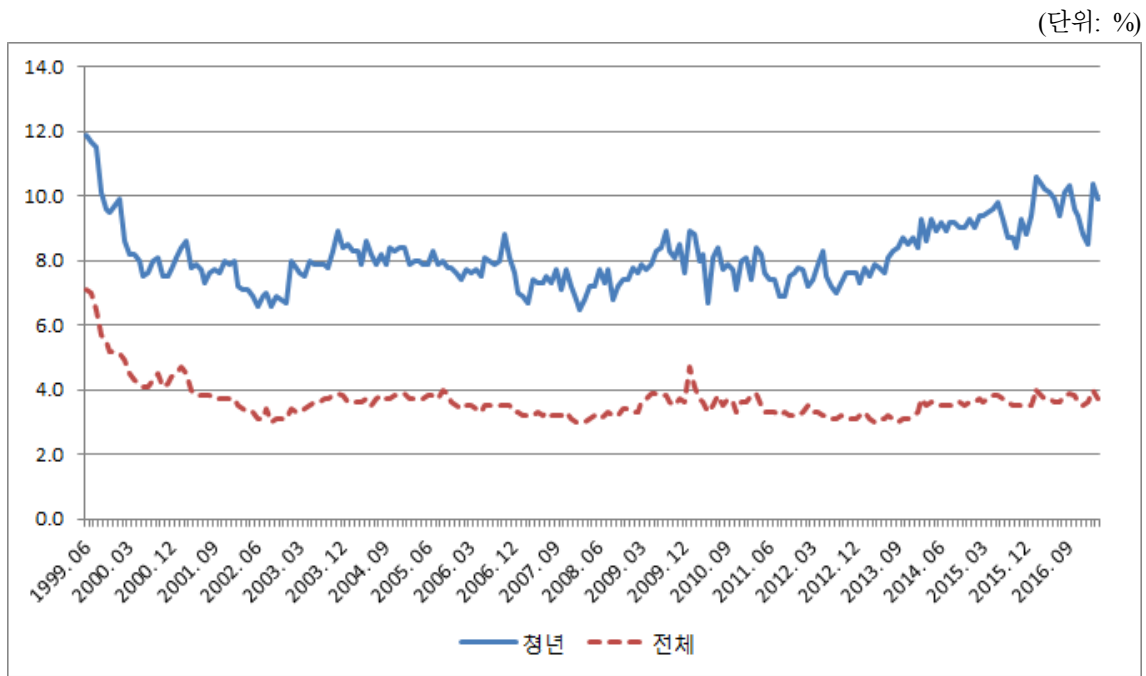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7월 8.1%를 기록한 이후 매월 8%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이 매월 4%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임

[그림 Ⅲ-1] 청년 및 전체 실업률 추이



주: 계절 조정 시계열 자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러한 청년 실업률은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999년 6월 청년 실업률이 11.6%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것으로 이후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하여 2000년 6월 7.5%를 기록하고 2002년 6월에는 6.6%를 기록하는 등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줌

- 하지만 이후 청년 실업률은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8% 주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2000년 1월 청년 실업률이 9.9%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2014년 2월 9%를 넘는 9.3%를 기록함
 - 그 뒤 2016년 2월에는 10.6%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0%를 넘었으며,
 - 올해인 2017년에 들어서도 2월에 10.4%를 기록하였음
-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중으로 장기적인 실업상태 등으로 인해 구직을 포기한 잠재적인 경제활동인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통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음
- 먼저 고용보조지표1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뿐만 아니라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포함한 지표임
-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 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함

<표 III-1> 고용보조지표의 정의

고용지표	정의
실업률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고용보조지표1	$\frac{\text{실업자} + \text{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고용보조지표2	$\frac{\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고용보조지표3	$\frac{\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 \text{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자료: 통계청, 통계별 설명자료조회(<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4&inputYear=2017>, 최종접속일: 2017. 5. 16.)

- 고용보조지표2는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률의 개념으로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인 확장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함

- 고용보조지표3은 가장 광의의 실업률로 확장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그리고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의미함

[그림 III-2] 고용보조지표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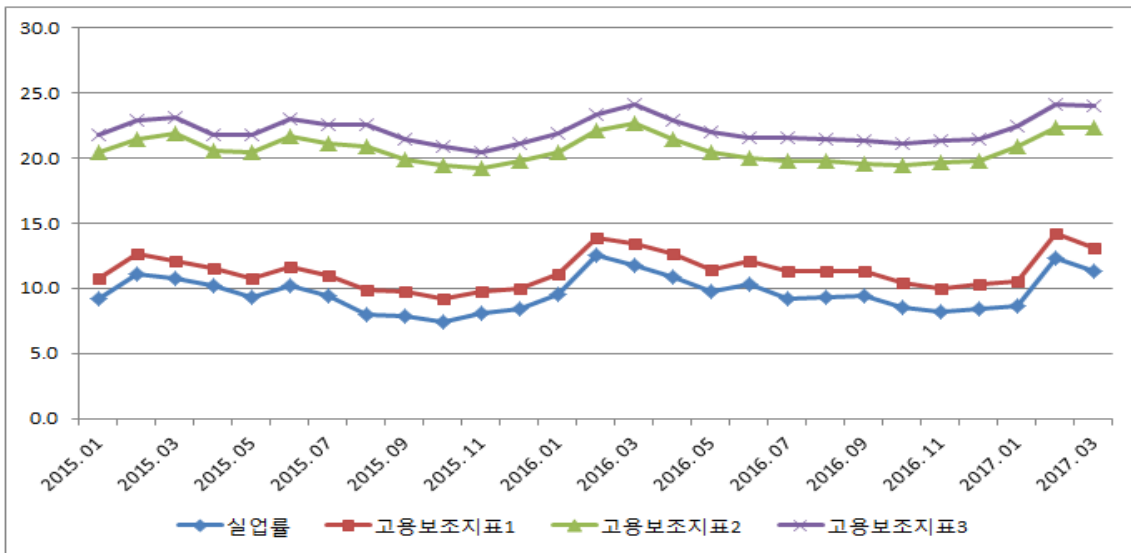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별 설명자료조회(<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4&inputYear=2017>, 최종접속일: 2017. 5. 16.)

- [그림 III-2]와 [그림 III-3]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조지표1과 고용보조지표2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 두 지표 차이의 평균은 약 9.3%포인트임
 - 한편 같은 기간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1의 평균 차이는 약 1.7%포인트이며,
 - 고용보조지표2와 고용보조지표3의 평균적인 차이는 약 1.5%포인트임

- 고용보조지표1과 고용보조지표2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 청년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1, 그리고 고용보조지표2와 고용보조지표3의 차이는 모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에 의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실업률을 왜곡시키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해석됨

[그림 III-3] 청년 고용보조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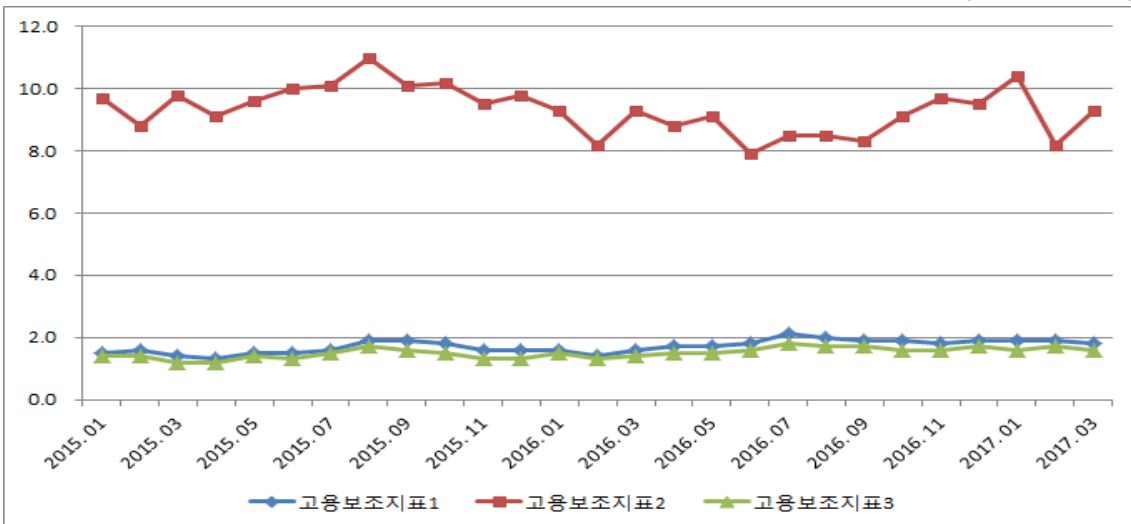
(단위: %)



주: 계절 미조정 시계열 자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4]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전단계 보조지표와의 차이 추이

(단위: %포인트)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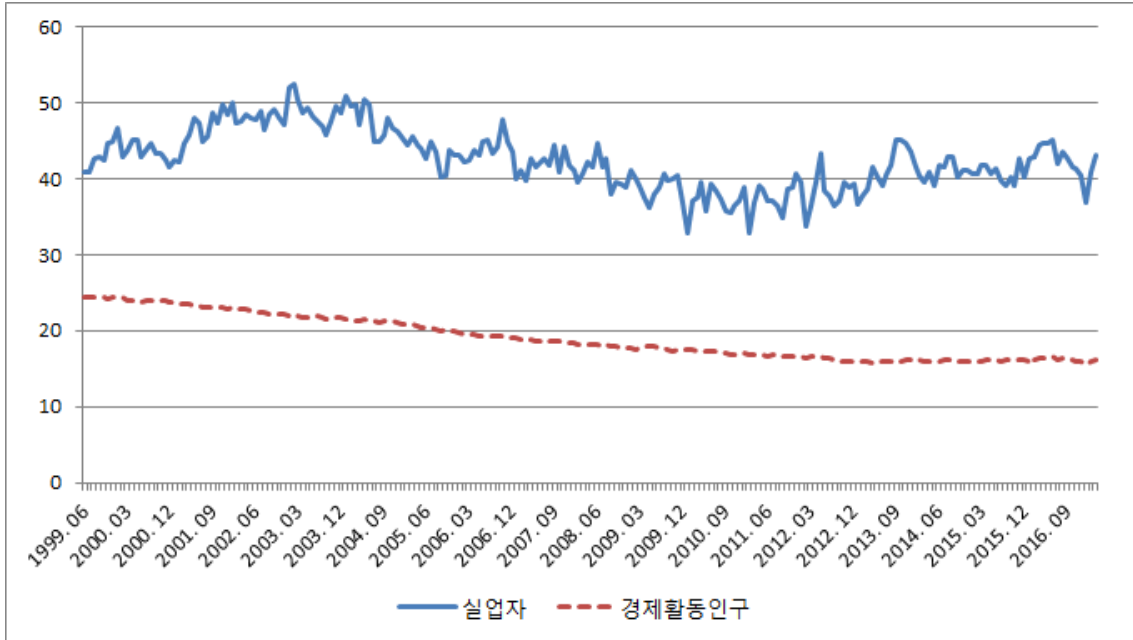
- 가장 광의의 실업률이라 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3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년 4명 중 1명이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심각한 상황임
 -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논의되기 시작된 2015년 8월의 고용보조지표3은 22.6%이었으며, 제도가 도입된 2015년 12월에는 21.1%로 우리나라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광의의 개념으로 실업상태에 있었음
 - 이러한 청년 고용의 심각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인 2017년 3월에는 고용보조지표3이 24%를 기록하였음

- 전체 실업자에서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4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임
 - 전체 실업자 중 청년 실업자의 비중은 2003년 2월 52.45%를 기록한 이후 2011년 2월 32.8%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음
 - 하지만 최근 이 수치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3월에는 43.1%를 기록함

- 청년 실업자 비중의 추세만을 살펴보면 최근의 양상이 2000년대 초반보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살펴볼 경우 현재 청년 실업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 III-5]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까지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
 - 즉, 2000년대 초반에 전체 실업자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은 청년의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임
 - 이후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청년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남
 - 하지만 최근에는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다른 계층보다도 청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줌

[그림 III-5] 전체 대비 청년 실업자 및 경제활동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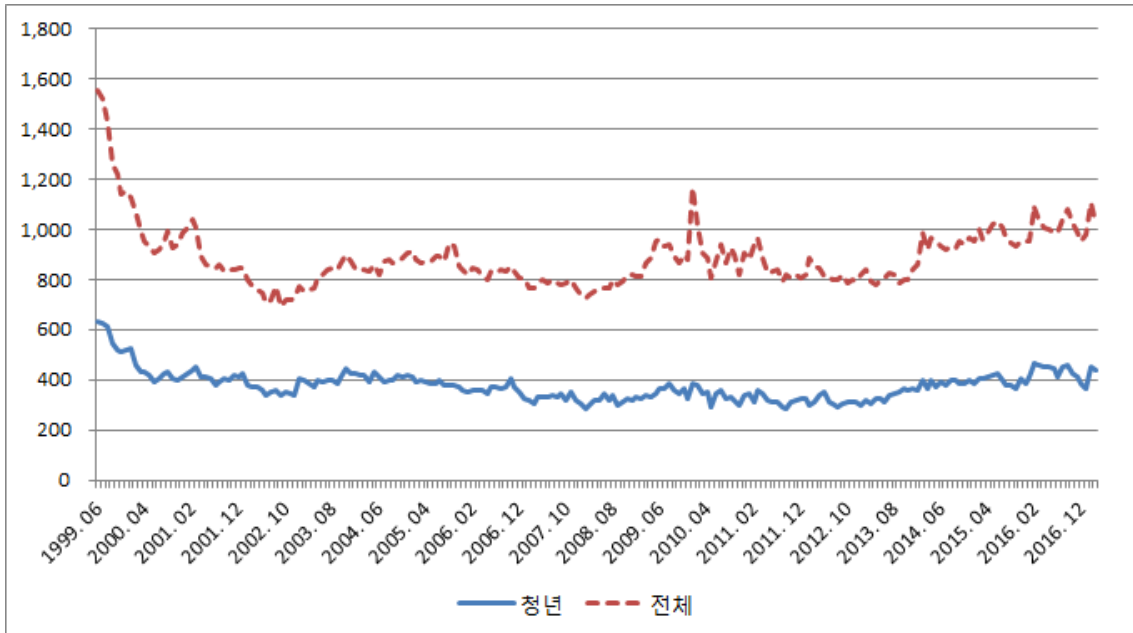
(단위: %)



주: 계절 조정 시계열을 이용하여 작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II-6] 청년 및 전체 실업자 수 추이

(단위: 천명)



주: 계절 조정 시계열 자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는 200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15년 2월 4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7년 3월에는 44만 1천명의 청년이 실업상태에 있었음
 - 2017년 3월 전체 실업자는 102만 3천명임

- 이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및 각종 고용지표를 살펴볼 때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됨

2. 수행방법의 적절성

- 수행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절성
 - 정책지원방식의 적절성
 - 일회성 지원의 적절성

가.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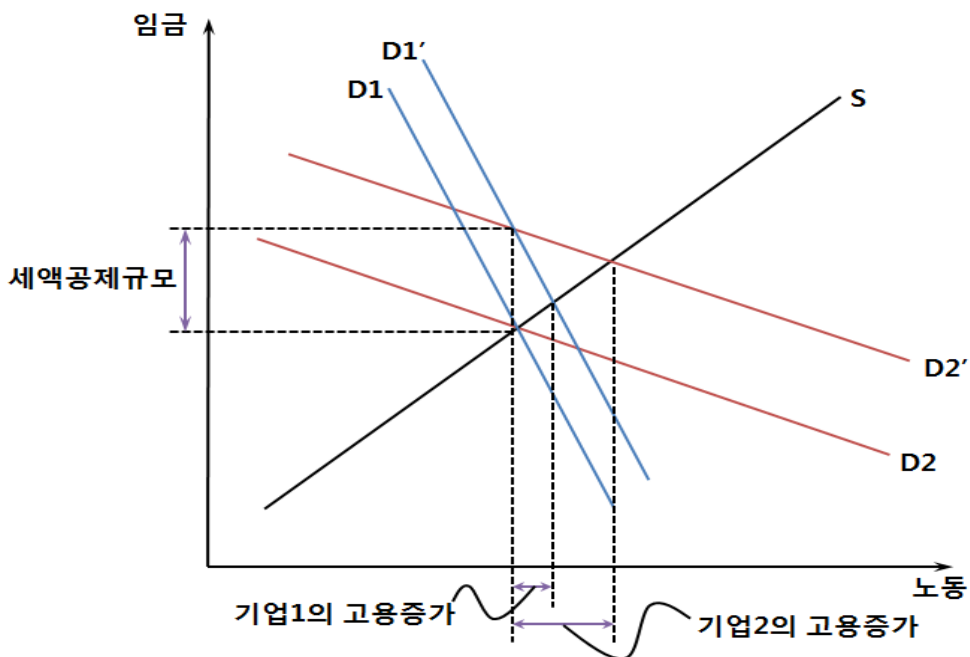
- 동일한 규모의 고용창출을 하였더라도 「청년고용증대세제」에 의한 세제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낮아짐
 - 현행 제도의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는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7백만원, 대기업은 3백만원임
 - 2015년과 2016년의 청년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5백만원, 대기업은 2백만원이었음

-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간에 상충되는 면이 존재하여 정책의 지향점에 따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우리나라의 조세특례 중 상당수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등 형평성을 강조하며, 「청년고용증대세제」 또한 이러한 조세특례 중의 하나임
 - 반면, 차등적인 세제지원은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으로 효율성을 저해함

-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대기업보다 한계적으로 생산성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수요가 더 증가해 생산성이 낮은 기업으로 노동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

- 한편 형평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이 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여기서 효과성이란 얼마나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정의함
 -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효과성이 다른 정책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일 수 있음
- 이론적으로 살펴볼 때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클수록 동일한 규모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고용창출효과도 더 큼
 - 아래의 [그림 III-7]에서 기업2에 해당하는 노동수요(D2)의 임금탄력성이 기업1에 해당하는 노동수요(D1)의 임금탄력성보다 큼
 - 이 경우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용 증가인원 1인당 동일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기업1보다 기업2의 고용창출효과가 더 큼

[그림 III-7]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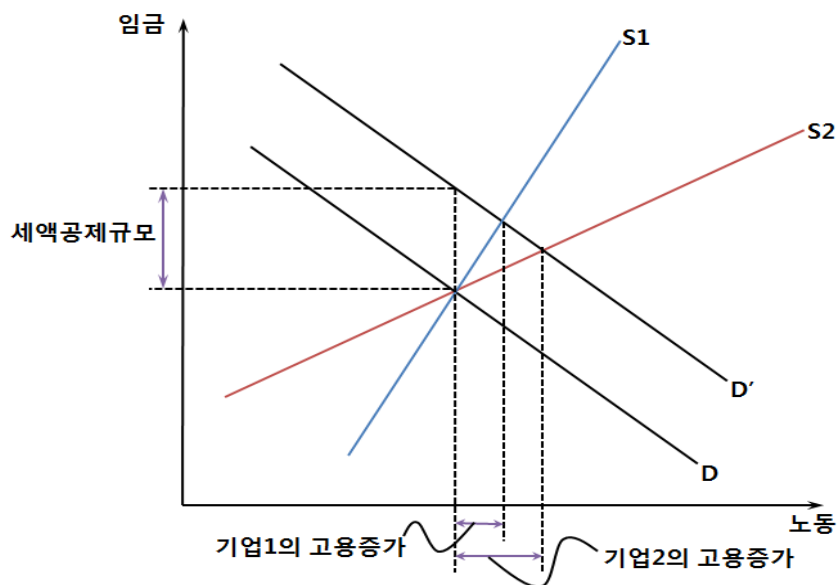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작아 동일한 규모의 세제혜택에 대한 고용창출효과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작음
 - 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의미하며, 노동을 보완하는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가 증가할수록 노동의 한계생산성도 함께 증가함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노동을 보완하는 다른 생산요소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생산성 또한 낮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감소함
 -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낮음을 의미함

- 노동수요뿐만 아니라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또한 고용창출효과에 영향을 미침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과 마찬가지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또한 그 크기가 클수록 동일한 규모의 세제혜택에 대한 고용창출효과도 더 큼
 - 아래의 [그림 III-8]에서 근로자 유형2에 해당하는 노동공급(S2)의 임금탄력성이 근로자 유형1에 해당하는 노동공급(S1)의 임금탄력성보다 큼
 - 이 경우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용 증가인원 1인당 동일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노동공급곡선 S1에 직면한 기업1보다 S2에 직면한 기업2의 고용창출효과가 더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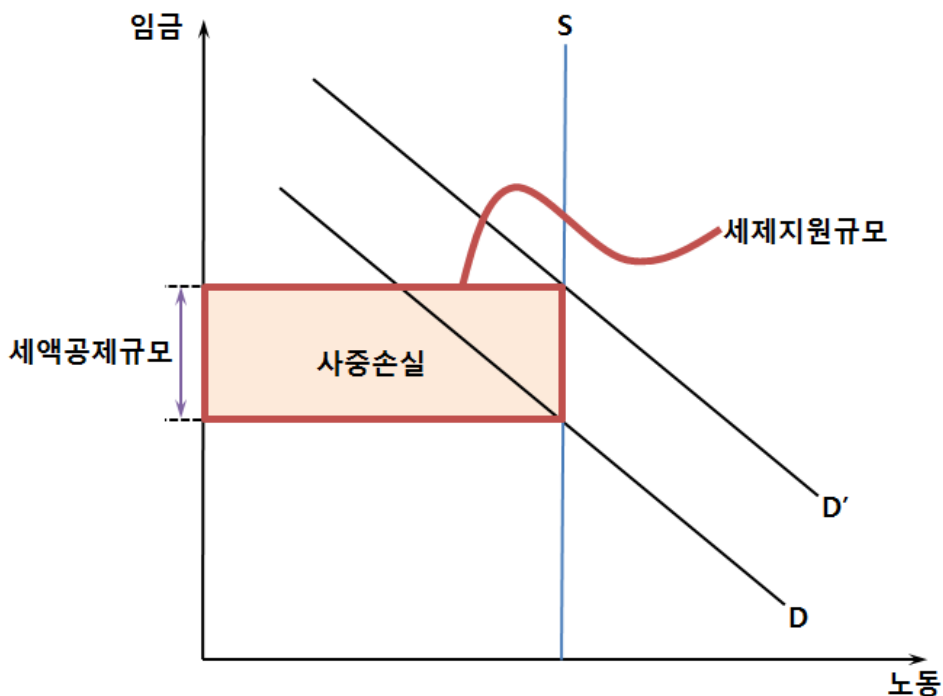
[그림 III-8]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직면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대기업이 직면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보다 작을 것으로 판단됨
 -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임금을 1% 상승시킬 경우 노동공급의 변화율을 의미함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임금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수준 및 장래에 대한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
 - 이는 동일한 임금 증가에 대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노동공급이 더 많이 증가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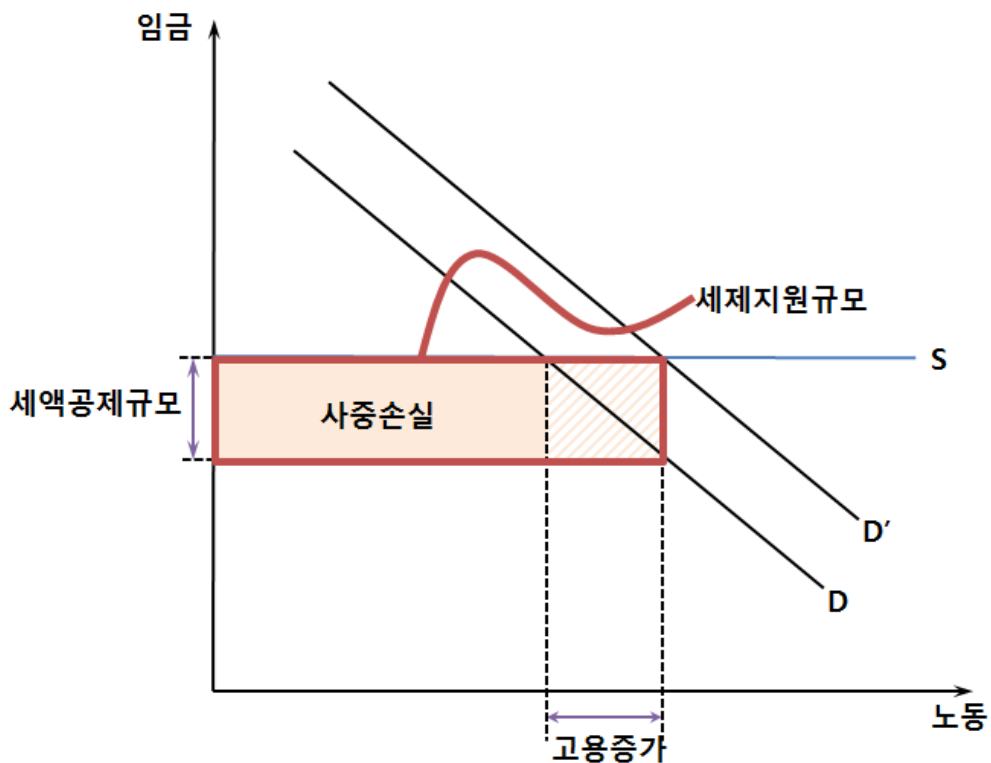
- 극단적이지만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세제지원이 모두 사중손실로 귀착되기 때문에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의 타당성이 없음
 - 아래의 [그림 III-9]에서 임금이 변하더라도 노동공급은 변하지 않아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임
 - 아래의 그림이 신규고용에 대한 채용시장이라고 할 때 「청년고용증대세제」에 의한 세제지원은 전체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발생함

[그림 III-9] 신규인력 고용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의 세제지원 효과



- 하지만 이는 세제지원이 없더라도 창출되었을 고용이며, 세제지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체 세제지원이 모두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됨
 - 전병목(2010)에 따르면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의 효과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중손실(Dead-Weight Loss), 순효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세제지원의 제공 없이도 발생할 일자리에 대해 세제지원을 제공한 일자리 수로 정의함
- 한편 정반대의 극단적인 경우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는 비탄력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에 대한 사중손실이 발생하지만 추가적인 고용 또한 창출함
 - [그림 III-10]에서 약간의 임금변화가 노동공급을 없애거나 무한대로 변화시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완전탄력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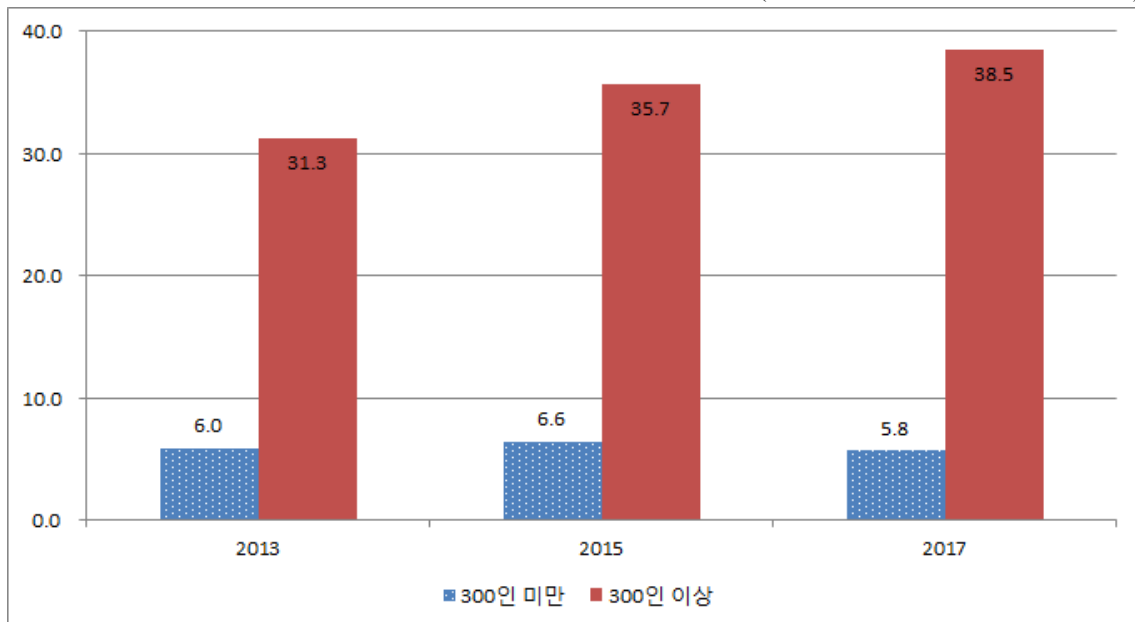
[그림 III-10] 신규인력 고용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의 세제지원 효과



- 이 경우 노동시장의 균형은 노동수요가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비용 절감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증가는 고용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됨
 - 다만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도 조세지출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모습은 앞에서 살펴본 두 극단 중 전자인 [그림 III-9]에 가까울 것이며, 대기업의 모습은 후자인 [그림 III-10]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이 직면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가정임
 -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할 때 중소기업이 직면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일 것임
-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인 2017년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 경쟁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약 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취업 경쟁률은 38.5대 1인 것으로 조사됨
 -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후 취업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림 III-11] 기업규모별 대졸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

(단위: 채용 인원 1명당 지원자 수)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각 연도

- 반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취업 경쟁률은 5.8대 1로 대기업보다 상당히 낮음
 - 2017년 중소기업의 취업 경쟁률은 2016년의 취업 경쟁률인 6.6대 1보다 낮아진 수치임

□ 2015년에 비해 2017년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경쟁률이 더 낮아진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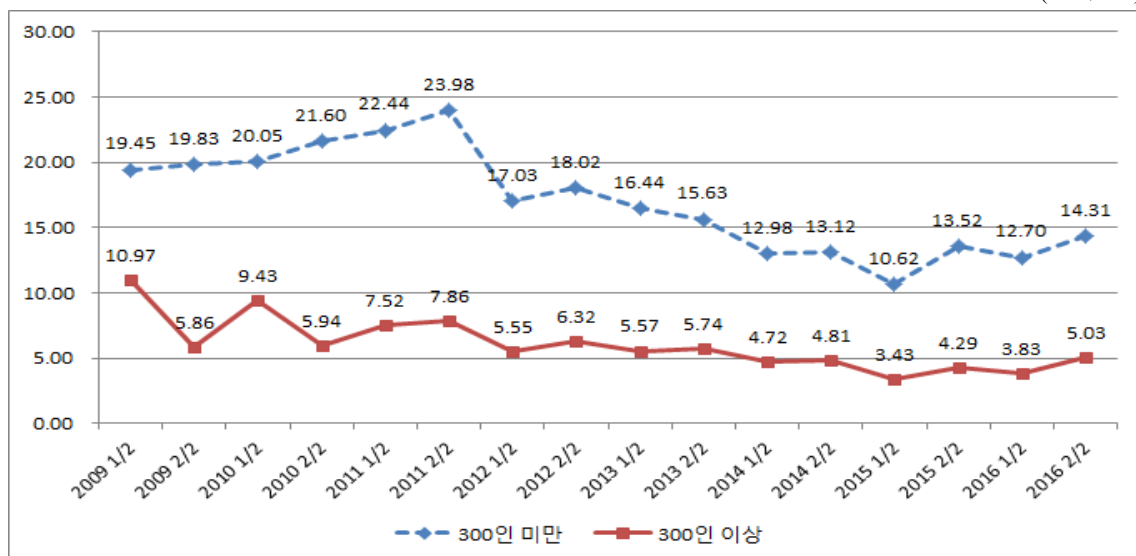
- 2017년 우리나라의 대졸 취업준비자들이 평균적으로 5.8개 이상의 기업에 지원한다면, 대졸자에 대한 중소기업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 기업규모별 미충원율을 살펴보다라도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미충원율이 대기업(300인 이상)의 미충원율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충원인원이란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을 의미하며, 미충원율은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의 비율을 의미함³³⁾

[그림 III-12] 기업규모별 미충원율

(단위: %)



자료: 고용노동통계

33) 고용노동통계 통계해설(<http://laborstat.molab.go.kr/newOut/quickmenu/swsearch.jsp>, 최종접속일: 2017. 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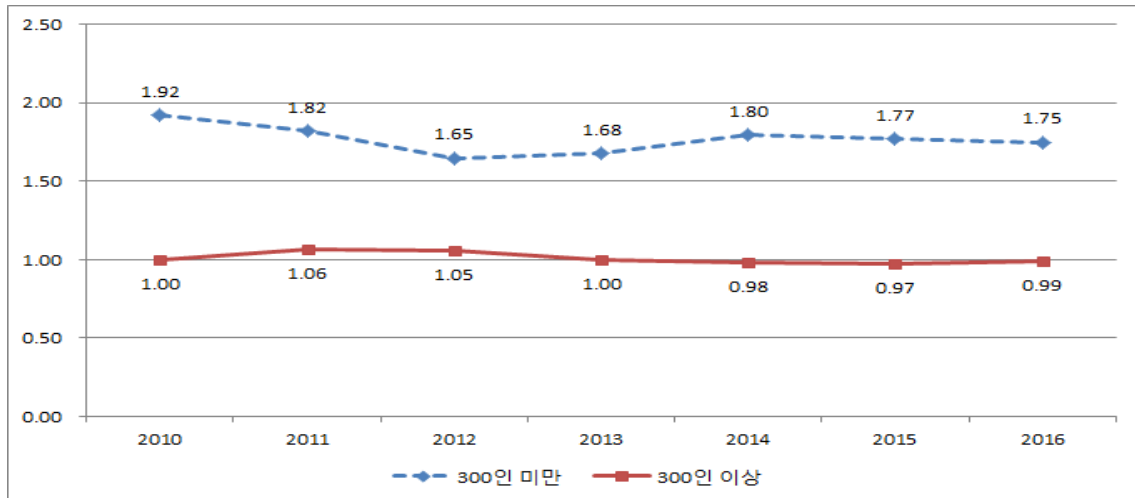
○ 2017년의 경우 대기업의 미충원율은 5.03%인 반면,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은 14.31%로 대기업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임

□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채용한 인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대기업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중 이직자의 비중은 1.75%로 대기업의 0.99%보다 약 1.8배 높음

[그림 III-13] 기업규모별 상용근로자의 이직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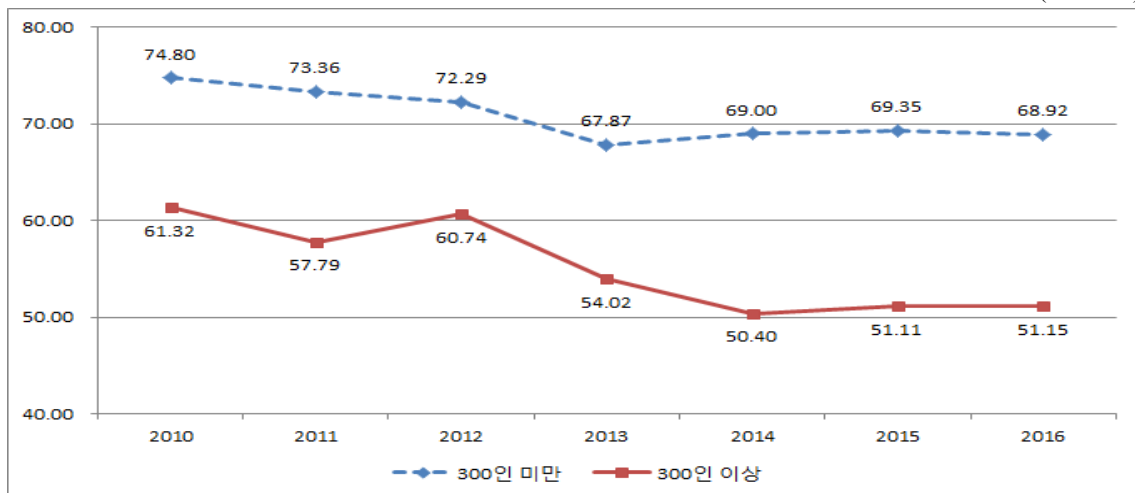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고용노동통계

[그림 III-14] 기업규모별 상용근로자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자 비율

(단위: %)



자료: 고용노동통계

- 더 심각한 것은 2017년 대기업을 경우 상용근로자의 이직자 중 약 51.15%가 자발적 이직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약 68.92%로 대기업보다 약 17.77%포인트가량 높다는 점임
- 50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또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청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설문조사의 개요 및 표본의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은 제 V 장 설문조사 분석을 참고하기 바람
-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2016년 청년 인력의 충원에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각각 82.22%와 71.7%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0%로 낮아짐
 - 특히, 청년들이 우리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의 경우 대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견기업은 2.83%, 중소기업은 14.29%로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짐
- 2017년 청년 인력 충원에 대한 문항에서는 청년 인력 충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37.43%인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구인난이 2016년도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기업은 2016년과 동일한 82.22%가 2017년 청년 인력 충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응답함

〈표 III-2〉 2016년 청년 인력 충원 시 어려움 정도

(단위: 개,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청년 인력 충원에 문제 없었다	140	40.00	76	71.70	37	82.22
대체인력 충원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추가인력 채용에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36	10.29	11	10.38	3	6.67
대체인력도 가까스로 충원했다	44	12.57	6	5.66	2	4.44
청년들이 우리 기업을 선호하지 않아 기존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50	14.29	3	2.83	0	0.00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다	80	22.86	10	9.43	3	6.67
전체	350	100	106	100	45	100

〈표 III-3〉 2017년 청년 인력 충원 시 예상되는 어려움 정도

(단위: 개,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청년 인력 충원에 문제 없을 것이다	131	37.43	68	64.15	37	82.22
대체인력 충원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추가 인력 채용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39	11.14	13	12.26	3	6.67
대체인력도 가까스로 충원할 것이다	41	11.71	11	10.38	2	4.44
청년들이 우리 기업을 선호하지 않아 기존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66	18.86	4	3.77	0	0.00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	73	20.86	10	9.43	3	6.67
전체	350	100	106	100	45	100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시장에서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수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노동공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정액지원방식의 적절성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정액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음
- 동 제도와 같이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중 정액지원방식을 택한 과거의 제도로는 2004~2005년도에 시행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와 2010~2011년도에 시행된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함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는 대기업 포함 모든 기업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1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하였음
 -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는 300만원이었음
- 한편,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와 같이 증가한 고용인원의 임금에 비례해서 세제지원을 하는 급여비례지원방식도 존재함

- 정액지원방식은 급여비례지원방식에 비해 제도의 적용이 용이하여 납세협력비용 등의 행정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존재함
 - 정액지원방식의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만 파악하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반면, 급여비례지원방식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의 급여 계산방식을 준용할 경우 청년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함
 - 다만,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중복적용이 허용되며, 「사회보험료세액공제」신청 시 평균 급여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은 미미할 수 있음

- 기업 간의 형평성을 강조한다면 정액지원방식이 급여비례지원방식보다 선호되는 방식임
 - 정액지원방식은 고용창출 인원만 같다면 동일한 규모의 세제지원이 제공됨
 - 반면 급여비례지원방식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는데,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환경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세제혜택이 역진적일 수 있음

- 하지만 동 조세특례가 노동비용의 절감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의 직접비용인 급여에 비례해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정액지원방식보다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함

- 이와 더불어 급여비례지원방식은 정액지원방식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노동이 분배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임
 - 급여의 결정에는 노동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여비례지원방식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임

- 또한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인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액지원방식이 형평성 제고에 더 유리하지만, 간접적인 수혜대상인 청년의 관점에서 본다면 임금 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급여비례지원방식이 형평성 제고에 더 유리할 수 있음

- 한편, 급여비례지원방식이라 하더라도 현행 제도와 유사하게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도 있음
 -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16년 청년의 임금총액은 평균 2,814만원으로 현재의 공제규모인 1천만원, 7백만원, 3백만원은 이에 각각 35.53%, 24.87%, 10.66%임
 - 하지만 아래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임금총액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이보다 더 높고, 대기업의 공제율은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5~299인 기업의 경우 2016년 임금총액에서 중소기업의 공제금액인 1천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9.53%에 달함
 - 중견기업을 300~499인 기업이라 가정한다면, 2016년 임금총액에서 중견기업 공제금액인 7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46%임
 - 대기업인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대기업 공제금액인 3백만원이 2016년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7%임

<표 III-4> 기업규모에 따른 2016년 연봉과 세제지원 비율

(단위: 만원, %)

기업규모	평균 연봉		청년 연봉에서 세제지원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청년	1천만원	7백만원	3백만원
전규모	4,021.758	2,814.240	35.53	24.87	10.66
5~9인	3,003.631	2,253.350	44.38	31.06	13.31
10~29인	3,420.609	2,388.393	41.87	29.31	12.56
30~99인	3,679.933	2,612.106	38.28	26.80	11.48
100~299인	4,147.214	2,890.442	34.60	24.22	10.38
300~499인	4,807.993	3,117.059	32.08	22.46	9.62
500인 이상	6,498.761	4,125.491	24.24	16.97	7.27
5~299인	3,556.092	2,530.003	39.53	27.67	11.86

자료: 고용노동통계 이용 저자 작성

- 정책지원방식과 급여비례지원방식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한 가지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정책의 지향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

다. 일회성 지원의 적절성

- 현행 제도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킨 과세연도에 한해 일회성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함

- 기업은 세제지원을 받은 후 고용을 감소시킬 유인이 존재하나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동 제도와 같이 정규직 채용에 한하여 세제를 지원한다면, 정규직은 기업이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사라진 후에도 고용이 계속하여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동 제도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 세제혜택을 받은 후 2년 내에 고용을 감소시킨다면 고용 감소분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는 채용 첫해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기업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으로는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이 있어, 2년차부터 세제혜택이 사라지더라도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조세특례 중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제도로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이에 청년이 취업하여 생산성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다년간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준다면 동 제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존재하는 한 노동수요 진작을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
 - 현재의 세제지원 수준이 다년간 지원하기에는 높다고 판단된다면 연간 지원 규모를 일정수준 낮추는 대신 다년간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세제혜택을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다년간 제공하게 되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령 청년 근로자 증가에 대해 3년간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최소 과거 3년까지의 고용정보를 관리해야 함
 -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도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 기업은 세제혜택을 제공받은 후 향후 2년간 고용정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의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음

3. 다른 조세특례 또는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가. 조세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속한 제도로 해당 절에는 다음과 같은 조세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위 조세특례 중 고용증대가 목적인 제도는 아래의 세 가지이며 이 제도들은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동 제도는 모든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증대의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정책 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동 제도는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조세특례를 보완하는 성격이 있음

- 또한 동 제도는 청년이라는 특정 계층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조세특례들과 차별됨
 -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 또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청년 고용을 유도함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동 제도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의 중복적용이 허용되어 두 제도가 중복될 여지가 있음
 - 하지만, 두 제도가 중복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에 세제혜택을 더 많이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동 제도의 세제지원 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두 제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의 조세특례는 고용증대가 목적이거나보다는 고용의 질적 개선이 목적인 제도로써 동 제도와 중복되지 않음
 -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또한 위 조세특례 중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노동공급자에 대한 지원으로 동 제도가 노동수요자인 기업에 지원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동 제도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속하지만 고용요건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지원의 성격이 있는 조세특례라 할 수 있음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동 제도와 중복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제도라 할 수 없음

나.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 <표 IV-5>와 같이 정부는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재정지출 사업은 청년취업인턴제와 같이 청년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방식도 존재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의 취업을 지원함
- 동 제도와 같이 기업의 인건비를 보조하여 청년 취업을 지원하더라도 정규직 채용 인원 증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취업인턴제도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지만 그 이전에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해야 하는 등 절차가 동 제도보다 복잡함
 - 이처럼 재정지출 사업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 방식이나 직업군 등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함
 - 또한 재정지출 사업의 경우 전체적인 고용 인원에 대한 요건보다는 특정 근로자의 채용 절차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창출 없이 기존 인력을 대체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 반면 동 제도는 채용 절차와는 상관없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인원 수만 고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조건이며, 제도의 적용이 단순하고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직업군에 대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음
- 재정지출 사업과 동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지원의 특성상 동 제도는 후자가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고용을 지원함
- 이에 동 제도가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출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I-5〉 청년 고용 지원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 사업

정부기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형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프로그램, 자금지원(참여 및 취업성공수당)
	청년취업인턴 사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자금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	자금지원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	프로그램, 자금지원(교육비)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기업	프로그램, 자금지원 (시설운영비, 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K-move(해외취업지원사업)	청년	프로그램, 자금지원(참가비 지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대학내 취업지원 서비스)	청년	자금지원(교육비, 취업알선 등)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청년	프로그램
	대학청년고용센터	청년	프로그램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청년	자금지원(인건비 및 프로그램 비용)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창업 희망사다리장학금	기업	프로그램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기업	자금지원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청년	자금지원(등록금 및 취업준비 장려금)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청년	프로그램, 자금지원(연수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프로그램, 자금지원(등록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일자리사업	청년	자금지원
	관광분야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프로그램
	생활체육 지도자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체육진흥공)	자금지원(인건비 및 활동비)
	문화시설 전문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도서관 관련 인력)	자금지원(임금)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콘텐츠 분야)	프로그램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문화예술분야 취업 지원)	청년(문화예술분야)	자금지원(급여)	

정부기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형태
	국제회의산업(MICE) 육성사업	청년	프로그램
	박물관 전문인력 일자리 사업	청년(관련 자격증 취득자)	자금지원(임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사업	청년(체육 전공자)	자금지원(인건비)
	예술강사 일자리 지원 사업(문화예술교육활성화)	청년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	자금지원(인건비)
중소기업청	산학맞춤 기술·기능인력양성사업	청년(대학생)	프로그램, 자금지원(교육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청년(특성화고생)	프로그램, 자금지원(연수비 등)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청년	프로그램, 자금지원(연수비 등)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청년	프로그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제도	청년	프로그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청년	프로그램
외교부	ODA 청년인턴	청년	프로그램, 자금지원(수당 및 인건비)
	다자협력전문가(KMCO) 파견사업	청년 (국제개발사업 관련 인력)	자금지원(항공비, 교육비, 인건비 등)
농림축산식품부	특성화농고 인력육성 프로그램	청년(농업계 고교 재학생)	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청년(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자)	자금지원(인건비)
	중소·중견기업(연구개발분야) 인턴사업	기업(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청년	자금지원(교육비),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사업	청년(여대생)	프로그램
국토교통부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프로그램
	해외 건설현장 훈련지원 사업	청년	자금지원(파견비, 훈련비)
병무청	맞춤특기병제	청년	프로그램, 자금지원(훈련비 및 취업성공수당)
농촌진흥청	이공·농기계 인턴쉽	청년	프로그램, 자금지원(인건비)
산림청	해외산림 인턴	청년	프로그램, 자금지원(체제비 등)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	청년	프로그램, 자금지원(체제비 등)
		청년	프로그램

자료: 고용노동부(2016),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저자 작성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1. 선행연구

- 본 연구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을 이용하여 「청년 고용증대세제」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함
 - 회귀단절모형(RDD)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을 참고하기 바람

- 회귀단절모형(RDD)에서 단절점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함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같이 기업규모에 따라 세제혜택이 차등지원될 경우 차등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업규모의 경계가 단절점이라 할 수 있음
 - 단절점이 하나인 경우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우석진 외(2014), 박상곤(2013) 등이 존재함

- Buddelmeyer and Skoufias(2003)은 사회적 실험을 진행한 PROGRESA social program 으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단절모형(RDD)이 처치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임
 - PROGRESA program은 멕시코 시골지역에서 실시된 빈곤퇴치 프로그램인데, 일정한 지원자격을 만족시켜야 수혜대상그룹이 될 수 있으므로 처치의 결정에 있어서 단절점이 존재함
 - 분석결과, 회귀단절모형(RDD)은 실험 자료에서 얻어지는 처치효과를 상당히 정확히 추정해 내는 것으로 나타남

- 비교적 최근의 국내연구인 현보훈·염명배(2014)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과 회귀단절모형(RDD)을 적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함
 -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 경계에서 정책의 처치가 무작위 배정되는 효과가 있어 분석모형으로 회귀단절모형(RDD)을 적용함

- 근로장려세제의 수혜 여부는 부부합산 총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하나의 단절점이 존재하는 회귀단절모형(RDD)이 적용됨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지출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단절점이 여러 개인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하고자 함
 - 조세지출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라 세제혜택이 차등지원되는 제도들이 다수 존재함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16년까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고용증가 인원 1인당 5백만원으로 동일한 세제혜택이 지원되었으나 대기업은 2백만원으로 세제혜택 규모가 작았음
 -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같이 고용창출이 목적이며 동 제도와 중복지원이 허용되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지원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이에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창출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게 되면 단절점이 복수로 존재함

- 국내문헌 중 강창희·유경준(2009)은 단절점이 여러 개인 회귀단절모형(RDD)을 적용하여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수준과 그 기업의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모형으로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보험요율 체계가 기업의 직업훈련 투자결정에 미치는 인과효과 추정을 위해 각 산업군별 기업규모 단절점들을 활용하는 회귀단절모형(RDD)을 적용함
 - 현보훈·염명배(2014)와는 달리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보험요율은 각 산업군 및 기업규모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산업군별로 존재하는 여러 단절점들을 이용하는 회귀단절모형(RDD)을 적용함
 -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이 상이하여 여러 단절점을 이용하는 회귀단절모형(RDD)을 적용할 수 있음

- 회귀단절모형(RDD)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세지출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도 존재하나 내생성 문제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 반면 회귀단절모형(RDD)은 기존 연구들에 비해 내생성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심충진·이준규(2011) 및 윤성만·박진하(2015)의 연구는 고용증대와 관련한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임
 - 두 연구는 유사하게 세액공제제도 수혜 여부 또는 세액공제액 규모가 상시종업원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함
 - 그러나 전체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경우 처치가 내생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 회귀분석(OLS)을 실시할 경우 분석에 포함되는 관측치 수는 많아지나, 처치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측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고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관측치들이 처치그룹에 포함되는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치효과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대해 단절점 경계에 있는 관측치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회귀단절모형(RDD)은 분석에 포함되는 관측치 수가 적어지는 단점이 존재하나 처치의 무작위 배정이 가능해 처치의 외생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김재진 외(2015)는 단순선형회귀(OLS)분석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Nearest Neighbor Matching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처치집단의 설정 방법상 내생성이 적절히 통제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가용자료의 한계상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해당 세액공제제도의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함
 - Nearest Neighbor Matching 추정방법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서 유사한 기업들 간에 비교를 유도하나 처치집단이 이미 고용을 창출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가 얼마나 완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회귀단절모형(RDD)에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처치집단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재진 외(2015)의 문제가 사라지는 장점이 있음

2. 분석방법론: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가. 회귀단절모형(RDD)의 기본적인 개념

- 회귀단절모형(RDD)은 처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절점 전후에서 수혜 여부의 차이가 있는 관측치를 대상으로 제도 효과를 분석함
 - 전체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경우 제도수혜 여부라는 처치가 내생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 예컨대 처치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측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청년고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관측치들이 처치그룹에 포함되는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치효과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함
 - 회귀단절모형(RDD)은 단절점 주변의 관측치로 분석 표본을 제한하여 처치의 외생성을 높이는 분석방법임
 - 단절점에 매우 가까운 경계에 위치한 관측치들로 분석 표본을 제한하면 처치 여부와 관계없이 분석 표본에 포함된 관측치들은 그 특성들이 매우 유사한 관측치들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표본제한을 통해 처치의 외생성을 높일 수 있음

- 어떠한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상적인 실증분석 모형은 다음 식 (IV-1)과 같음

$$y_i = \beta_0 + \beta_1 \cdot T_i + u_i \quad \text{식 (IV-1)}$$

- 회귀단절모형(RDD)은 추어진 관측치를 모두 이용하는 통상적인 방법 대신 단절점에 근사한 기업규모를 가진 관측치들만 분석대상으로 함
 - 기업규모가 단절점 주변에 위치하여 $Cov(D_i, u_i) = 0$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분석하면 T_i 의 차이가 y_i 의 차이에 미치는 순수한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관측치의 기업규모가 단절점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Cov(D_i, u_i) = 0$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통상적인 추정방법에 따른 추정치 $\hat{\beta}_1$ 은 β_1 의 바람직한 추정치

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런 관측치들은 분석에 이용하지 않고 제외하는 회귀 단절모형(RDD)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처치변수 T_i 가 외생적인 경우에는 식 (IV-1)의 OLS 추정치 $\hat{\beta}_1$ 은 단절점(c) 전후의 관측치들의 성과 차이로 볼 수 있음

$$\hat{\beta}_1 = \lim_{x \downarrow c} E[y_i | X=x] - \lim_{x \uparrow c} E[y_i | X=x] \quad \text{식 (IV-2)}$$

- 여기서 X 는 처치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규모 등과 같은 변수이며 $X=x$ 의 전후에서 처치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X=x$ 가 단절점이 됨

- 식 (IV-1)은 하나의 단절점만 존재하는 경우 추정하는 방식인바, 여러 단절점이 존재하는 경우 식 (IV-1)은 다음과 같이 수정됨

$$y_i = \beta_0 + \beta_1 T_i + \beta_2 D_1 + \beta_3 (T_i \cdot D_1) + u_i \quad \text{식 (IV-3)}$$

- 예컨대, 위 식 (IV-3)은 2개의 단절점이 존재하는 경우임
- 여기서 T_i 는 단절점보다 작은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며, D_1 은 두 번째 단절점에 해당하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임

- 각 단절점의 효과는 처치변수(T_i)의 계수(β_1)와 상호교차항(처치변수와 단절점 더미변수의 interaction term)의 계수(β_3)로 식별할 수 있음

- 식 (IV-3)에서 기준그룹은 첫 번째 단절점이 되어 첫 번째 단절점의 처치효과는 β_1 , 두 번째 단절점의 처치효과는 $(\beta_1 + \beta_3)$ 로 해석할 수 있음

나. 단절점 기준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있어 세액공제 규모가 상이하고,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므로 중소, 중견, 대기업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절점이 발생함

- 중소기업 기준은 산업군별로 매출액 기준이 상이하며, 중견기업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3천억원 이하 기업이 해당됨
 - <표 IV-1>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기타기업 포함)을 구분하며, 중소기업은 매출액 기준 이외에 자산기준 또한 적용함
 - 자산액 5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해 아래 <표 IV-1>에 해당하는 산업군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 중견기업의 경우 자산액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

- 중소, 중견, 대기업 분류기준에 따라 기업규모에 따른 단절점이 6개 발생함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구분되는 첫 번째 단절점이 발생하며 이 단절점에서의 차이에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청년고용 증대효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각 산업군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상이하므로 산업군별로 단절점이 발생(단절점 ②~⑥)하며, 각 산업군별 단절점에서의 차이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의 청년고용 증대효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IV-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산업군 분류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산업군 ①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3년 평균 3,0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산업군 ②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산업군 ③	24.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산업군 ④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산업군 ⑤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주: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대통령령 제27106호, 2016. 4. 26., 일부개정

<표 IV-2> 단절점 기준

구분	단절점 ①	단절점 ②	단절점 ③	단절점 ④	단절점 ⑤	단절점 ⑥
매출액 기준	3,000억원 (3년 평균)	1,500억원	1,000억원	800억원	600억원	400억원

다. 회귀단절모형(RDD)의 적용

□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에 있어 6개의 단절점이 존재하는바, 이를 식 (IV-3)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수정됨

$$\begin{aligned}
 y_i = & \beta_0 + \beta_1 T_i + \delta_1 D_{2,i} + \beta_2 (T_i \cdot D_{2,i}) && \text{식 (IV-4)} \\
 & + \delta_2 D_{3,i} + \beta_3 (T_i \cdot D_{3,i}) + \delta_3 D_{4,i} + \beta_4 (T_i \cdot D_{4,i}) \\
 & + \delta_4 D_{5,i} + \beta_5 (T_i \cdot D_{5,i}) + \delta_5 D_{6,i} + \beta_6 (T_i \cdot D_{6,i}) + u_i
 \end{aligned}$$

T_i : 처치변수

$D_{j,i}$: 단절점 j 에 해당하는지 여부(더미변수)

□ 단절점의 효과는 처치변수(T_i)의 계수와 상호교차항(처치변수와 단절점 더미변수의 interaction term)의 계수로 식별할 수 있음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수혜규모의 차이가 없으므로 처치효과를 식별할 수 없고 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의 처치효과만 식별 가능함
 - 따라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구분기준이 되는 단절점 ①에서 발생하는 처치효과(β_1)를 「청년고용증대세제」에 의해 발생하는 청년고용 증대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단절점 ②~⑥에서 식별되는 효과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와 같이 청년고용 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차등지원하는 조세특례의 청년고용 증대효과임
 - 단절점 ②~⑥에서 식별되는 처치효과는 처치변수의 계수인 β_1 과 처치변수와 단절점 더미변수의 상호교차항인 $\beta_2 \sim \beta_6$ 의 합으로 식별할 수 있음

- $(\beta_1 + \beta_2)$: 산업군 ①(단절점 ②)에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도 등의 청년고용 증대효과
- $(\beta_1 + \beta_3)$: 산업군 ②(단절점 ③)에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도 등의 청년고용 증대효과
- $(\beta_1 + \beta_4)$: 산업군 ③(단절점 ④)에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도 등의 청년고용 증대효과
- $(\beta_1 + \beta_5)$: 산업군 ④(단절점 ⑤)에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도 등의 청년고용 증대효과
- $(\beta_1 + \beta_6)$: 산업군 ⑤(단절점 ⑥)에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도 등의 청년고용 증대효과

3. 사용된 자료

가. 분석 자료

- 관련부처에 자료를 요청하여 기업의 고용정보 자료 및 업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확보하였음
 - (한국고용정보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들에 대한 고용정보 자료를 구축하였음
-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해 재무자료 등 기업 자료를 포함하는 외감기업자료(KISVALUE)를 확보함
 - 외감기업자료는 청년고용 등 고용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무자료 등 기업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확보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와 외감기업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할 자료를 구성하였음
 - 한국고용정보원의 행정자료에서 각 기업별 고용정보자료를 이용하고, 외감기업자료에서 각 기업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나. 분석 범위

-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한 분석은 각 단절점으로부터 매출액이 $\pm 5\%$, 7% , 10% 내에 존재하는 관측치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표본선정 반경이 좁을수록 관측치들 간의 유사성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내생성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표본선정 반경이 지나치게 좁으면 분석을 위한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 역시 존재함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의 청년고용량 차이를 이용하여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추정할 수 있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2015년과 제도를 시행한 2016년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시행 여부가 청년고용 증대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마찬가지로 기업규모별로 세제혜택을 차등지원하는 다수의 조세특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귀단절모형(RDD)을 통한 분석에서 각 단절점에서 나타나는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모두 동 제도로 인한 효과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 다만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다른 제도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다면 2015년과 2016년의 청년고용 증대효과의 차이를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세액공제제도의 특성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후자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각 표본선정 반경별로 당기순이익 기업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함
 - 특히, 조세특례의 2016년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① 2016년 당기순이익 기업과 ② 2년 연속 후자기업인 2015년 및 2016년 당기순이익 기업에 대한 표본을 분석함
 - 직전 과세연도에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당해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직전 과세연도의 적자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낮추거나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 당해 당기순이익 기업 중에서도 동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음

- 이에 2년 연속 흑자기업에 대한 표본에 대해서도 분석함
 - 또한, 조세특례의 2015년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③ 2015년 당기순이익 기업과 ④ 2014년 및 2015년 당기순이익 기업에 대한 표본을 분석함
 - 다만 본 연구에서의 흑자기업은 KISVALUE 자료가 수집하는 기업 재무재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양(+)의 값을 갖는 기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무조정 후 흑자기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단절점 ①의 경우 당해년도 매출액증감률이 $\pm 50\%$ 를 초과하는 관측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회귀단절모형(RDD)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는 기준 이외의 다른 특성들은 매우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분석하는 방법임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을 기준으로 구분되는바, 매출액증감률이 급변하는 관측치의 경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담보할 수 없음
 - 이에 매출액이 급변하는 관측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이하에서는 2016년 흑자기업과 2015~2016년 2년 연속 흑자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량에 대해 설명함
- 2015년 흑자기업과 2014~2015년 흑자기업에 대한 각 표본의 기초통계량은 지면관계상 <부록 III>에 제시하였음

다. 2016년 흑자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량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회귀단절모형(RDD)에서 각 단절점에 해당하는바, 2016년 흑자기업 표본에 대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별 관측치는 다음 <표 IV-3>과 같음
- 각 단절점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관측치를 살펴보면 1,500억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구분되는 단절점 ②(산업군 ①)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절점에서는 처치집단의 관측치가 통제집단의 관측치보다 많음
 - 단절점 중 단절점 ③(산업군 ②)이 가장 많은 관측치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산업으로는 농·임·어업 및 광업, 식료품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있음

- 단절점 ⑥(산업군 ⑤)의 경우 관측치가 많지 않아 표본선정 반경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

<표 IV-3> 표본선정 반경에 따른 관측치 수(2016년 흑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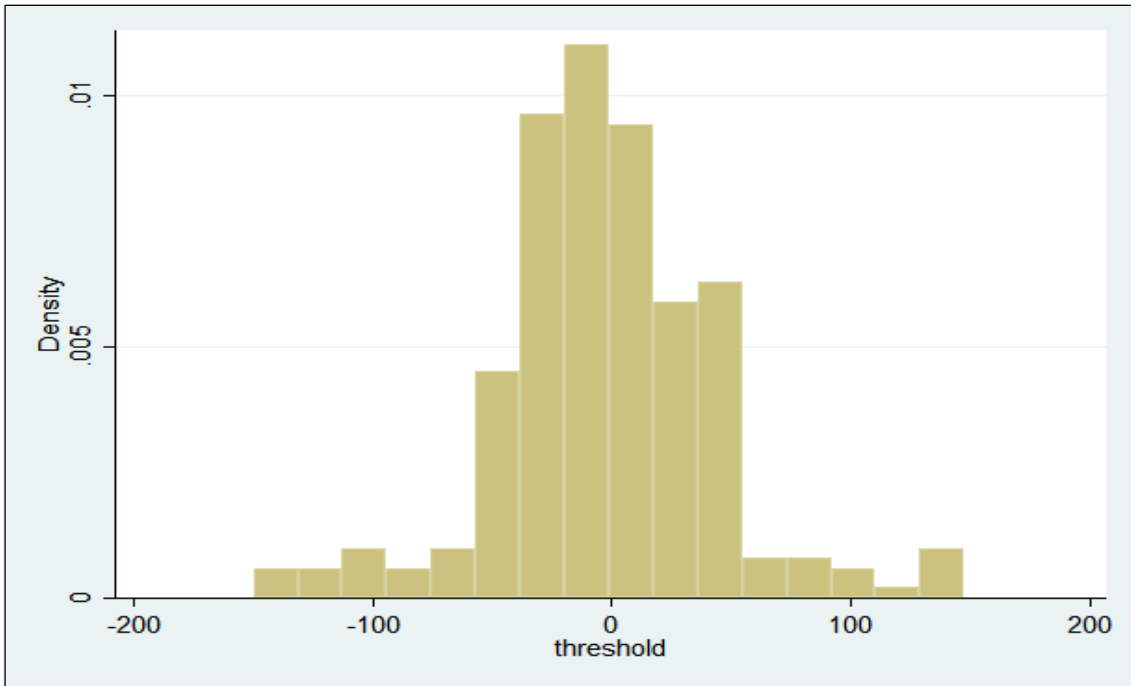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표본선정 반경									
	5%			7%			10%			
	합계	처치	통제	합계	처치	통제	합계	처치	통제	
전체	274	148	126	405	219	186	614	346	268	
중견·대기업(3,000억원)	51	29	22	90	50	40	135	82	53	
중소 · 중견 기업	산업군1(1,500억원)	25	10	15	38	16	22	55	25	30
	산업군2(1,000억원)	145	75	70	202	108	94	321	181	140
	산업군3(800억원)	42	25	17	55	31	24	71	39	32
	산업군4(600억원)	11	9	2	18	13	5	27	17	10
	산업군5(400억원)	0	0	0	2	1	1	5	2	3

□ 각각의 단절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통해 분포를 살펴보면 단절점 중심에 가까울수록 많은 관측치들이 분포하고 있는바, 이는 회귀단절모형(RDD)을 통한 분석의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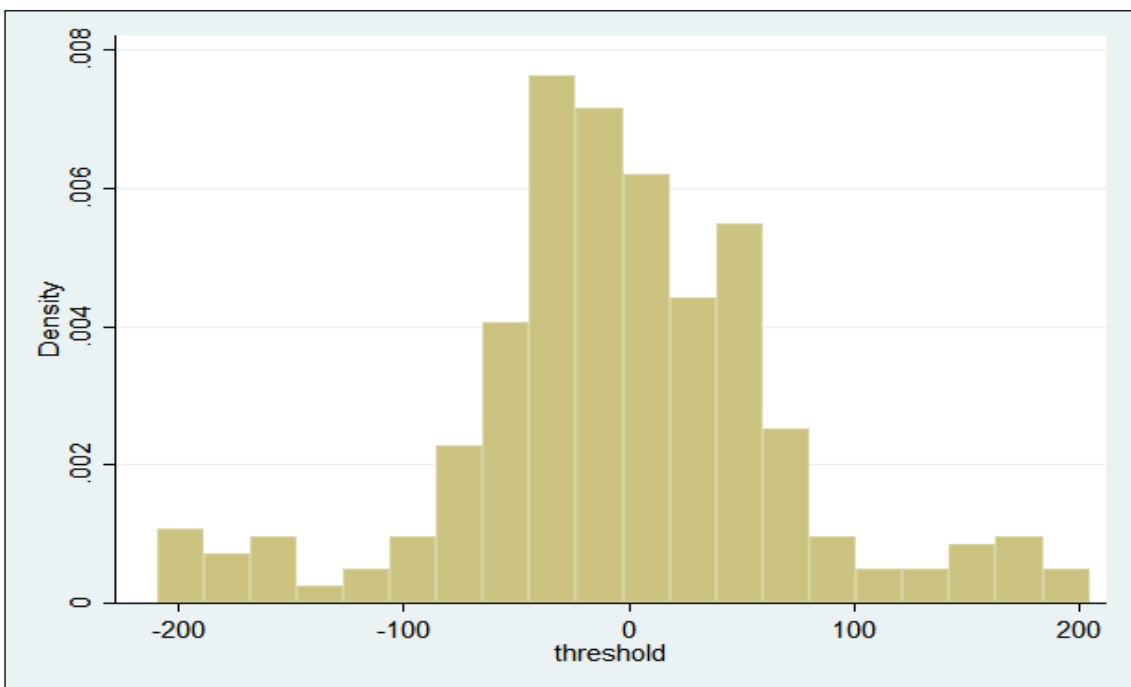
- 본 분석에서는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매출액 단절점이 5개 존재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단절점 1개까지 총 6개의 단절점이 존재함
- 6개 단절점은 최고 3,000억원(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단절점)부터 최저 400억원(산업군 ⑤에 해당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는 단절점)까지 존재하며, 각 단절점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의 ±5%, 7%, 10%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록한 기업들을 추출하였음
- 아래 [그림 IV-1] ~ [그림 IV-3]은 각 표본선정 반경별로 관측치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냄
 - 각 표본선정 반경에 따라 추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개별기업에 해당하는 단절점에서 개별기업의 매출액의 차이(threshold)”를 중첩하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단절점 중심에 가까울수록 많은 관측치가 분포함

[그림 IV-1] 표본선정 반경 5%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6년 흑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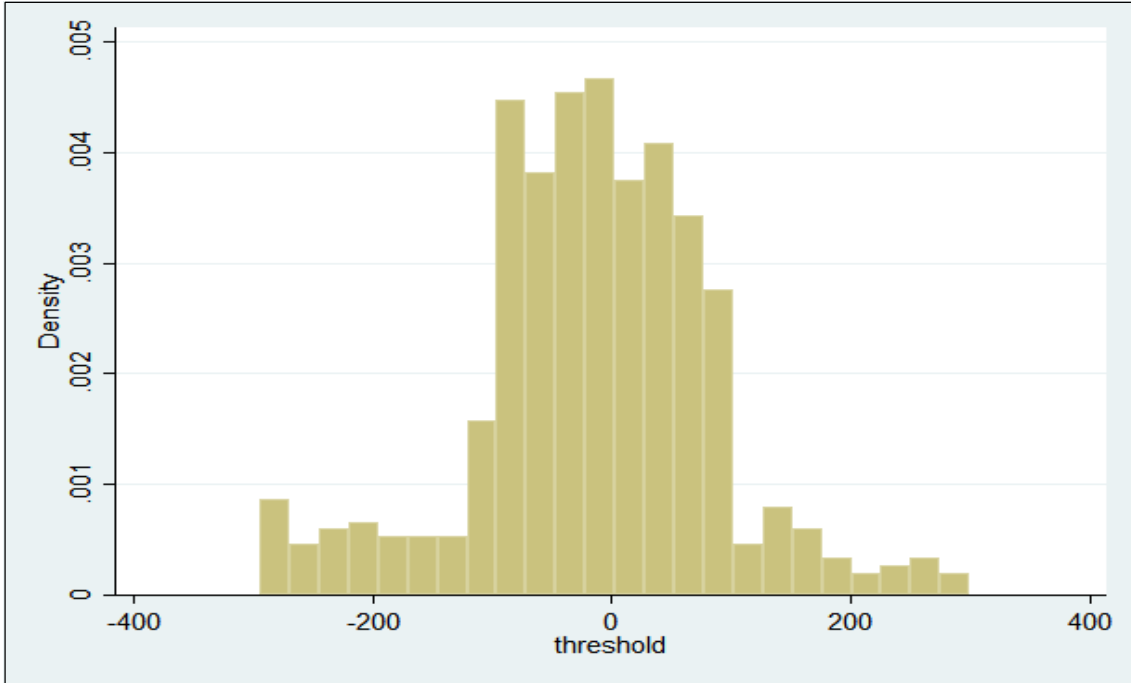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그림 IV-2] 표본선정 반경 7%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6년 흑자기업)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그림 IV-3] 표본선정 반경 10%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6년 흑자기업)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 <표 IV-4>는 표본선정 반경별로 2016년 흑자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고함
 - <표 IV-4>는 2016년 흑자기업 중 분석 대상에 포함된 모든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임
 - 다만, 단절점 ①은 매출액 3,000억원이고 표본선정 반경은 $\pm 5\%$, 7% , 10% 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최댓값이 4,334억원으로 나타남
 - 확인결과 단절점 ①의 기준인 매출액 3,000억원은 3년 평균 매출액인 반면 기초통계에 포함된 매출액은 2016년 매출액으로 2016년 매출액이 4,334억원으로 나타난 관측치 역시 3년 평균 매출액은 3,210억원(표본선정 반경 7% 기준)보다 작아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음

<표 IV-4>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2016년 흑자기업)

(단위: 명, 억원, 개월)

구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표본 선정 반경 5%	고용인원 (전체)	274	325.04	848.47	2.92	10,900.83
	고용인원 (청년)	274	73.65	306.19	0.08	4,548.42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274	0.09	18.91	-188.58	121.17
	매출액	274	1,375.02	831.22	575.00	3,797.17
	기업연한	274	305.57	175.26	35.00	1,166.00
표본 선정 반경 7%	고용인원 (전체)	405	326.24	754.48	1.00	10,900.83
	고용인원 (청년)	405	73.99	275.55	0.00	4,548.42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405	1.28	21.67	-188.58	266.00
	매출액	405	1,446.27	886.97	386.46	4,334.00
	기업연한	405	307.71	173.82	26.00	1,166.00
표본 선정 반경 10%	고용인원 (전체)	614	306.56	647.04	1.00	10,900.83
	고용인원 (청년)	614	68.43	232.25	0.00	4,548.42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614	0.95	20.30	-188.58	266.00
	매출액	614	1,434.37	878.78	365.98	4,334.00
	기업연한	614	300.45	171.10	26.00	1,166.00

□ <표 IV-5>는 2016년 흑자기업 중 분석 대상 관측치를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기타기업))별로 구분하여 기초통계량을 살펴봄

- 단절점 ①과 단절점 ②~⑥에 대해 중견기업과 대기업(기타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량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므로 각 단절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기타기업)의 관측치 수와 기초통계량을 살펴봄

-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은 당해년도 청년고용인원에서 전년도 청년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으로 뒤에 이어질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한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됨
- 단절점 ①에 해당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을 살펴보면 중견기업이 더 크게 나타나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모든 표본선정 반경에서 모두 음(-)으로 나타나 대기업은 전년보다 청년고용을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음

〈표 IV-5〉 주요 변수의 기업규모별 기초통계량(2016년 흑자기업)

(단위: 명, 억원, 개월)

구분	변수명	단절점 ②~⑥				단절점 ①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기업)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표본선정반경 5%	고용인원 (전체)	118	208.04	105	190.12	29	613.16	22	1,216.77
	고용인원 (청년)	118	39.49	105	36.10	29	117.64	22	378.13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118	0.16	105	1.71	29	0.88	22	-9.00
	매출액	118	947.52	105	1,052.94	29	2,939.16	22	3,143.39
	기업연한	118	280.96	105	301.07	29	423.17	22	304.00
표본선정반경 7%	고용인원 (전체)	168	215.02	147	211.84	50	520.29	40	971.22
	고용인원 (청년)	168	43.14	147	46.20	50	114.16	40	255.49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168	0.78	147	4.17	50	-0.23	40	-5.40
	매출액	168	942.94	147	1,057.26	50	2,936.40	40	3,127.20
	기업연한	168	276.64		309.28	50	391.50	40	327.68
표본선정반경 10%	고용인원 (전체)	263	208.78	216	232.73	82	481.12	53	822.58
	고용인원 (청년)	263	45.24	216	50.70	82	100.74	53	205.76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263	1.50	216	1.90	82	-0.21	53	-3.89
	매출액	263	935.38	216	1,061.89	82	2,882.39	53	3,188.18
	기업연한	263	270.46	216	297.07	82	382.06	53	336.72

- 반면 단절점 ②~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은 양(+)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년보다 청년고용을 증가시켰음
- 특히 단절점 ②~⑥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매출액 3,000억원 경계에 해당하는 단절점 ①의 중견기업보다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라. 2015~2016년 흑자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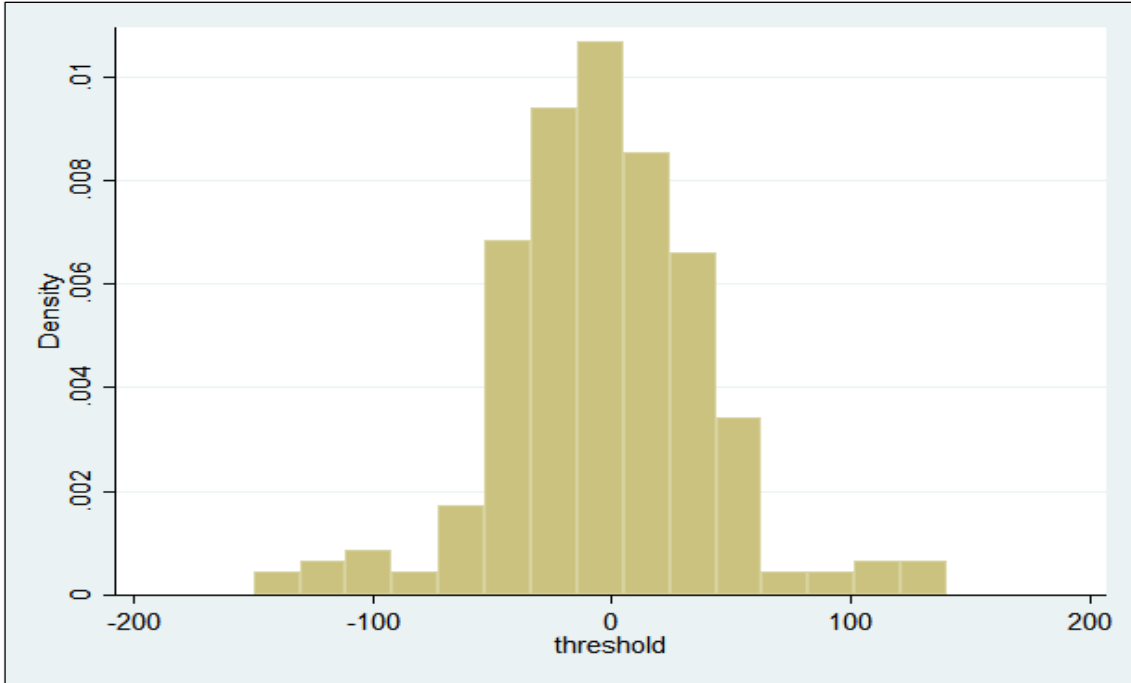
- <표 IV-6>은 2015~2016년 2년 연속 흑자기업 표본에 대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별 관측치임
 - 2년 연속 흑자기업 표본의 관측치는 2016년 흑자기업 표본의 관측치보다 약 12% 정도 적음
 - 즉 2016년 흑자기업 중 약 12%의 기업들은 2015년에는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임
 - 2년 연속 흑자기업 표본의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에 대한 관측치 분포는 2016년 흑자기업 표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단절점 ②(산업군 ①)를 제외하고는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많은 관측치를 보임
 - 또한 2016년 흑자기업 표본과 마찬가지로 단절점 ③(산업군 ②)에 해당하는 관측치가 가장 많음

<표 IV-6> 표본선정 반경에 따른 관측치 수(2015~2016년 흑자기업)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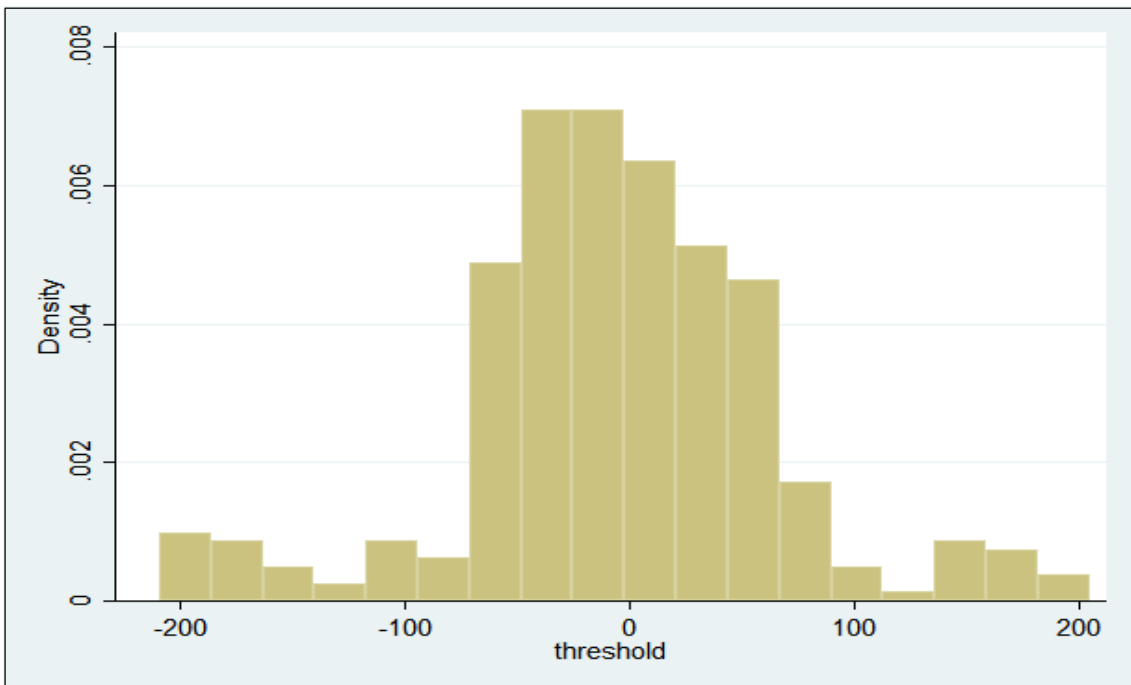
구분	표본선정 반경									
	5%			7%			10%			
	합계	처치	통제	합계	처치	통제	합계	처치	통제	
전체	242	132	110	356	194	162	546	309	237	
중견·대기업(3,000억원)	43	26	17	74	43	31	115	71	44	
중소 · 중견 기업	산업군1(1,500억원)	19	7	12	29	12	17	44	20	24
	산업군2(1,000억원)	135	68	67	187	97	90	293	163	130
	산업군3(800억원)	36	24	12	48	30	18	64	38	26
	산업군4(600억원)	9	7	2	16	11	5	25	15	10
	산업군5(400억원)	0	0	0	2	1	1	5	2	3

[그림 IV-4] 표본선정 반경 5%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5~2016년 흑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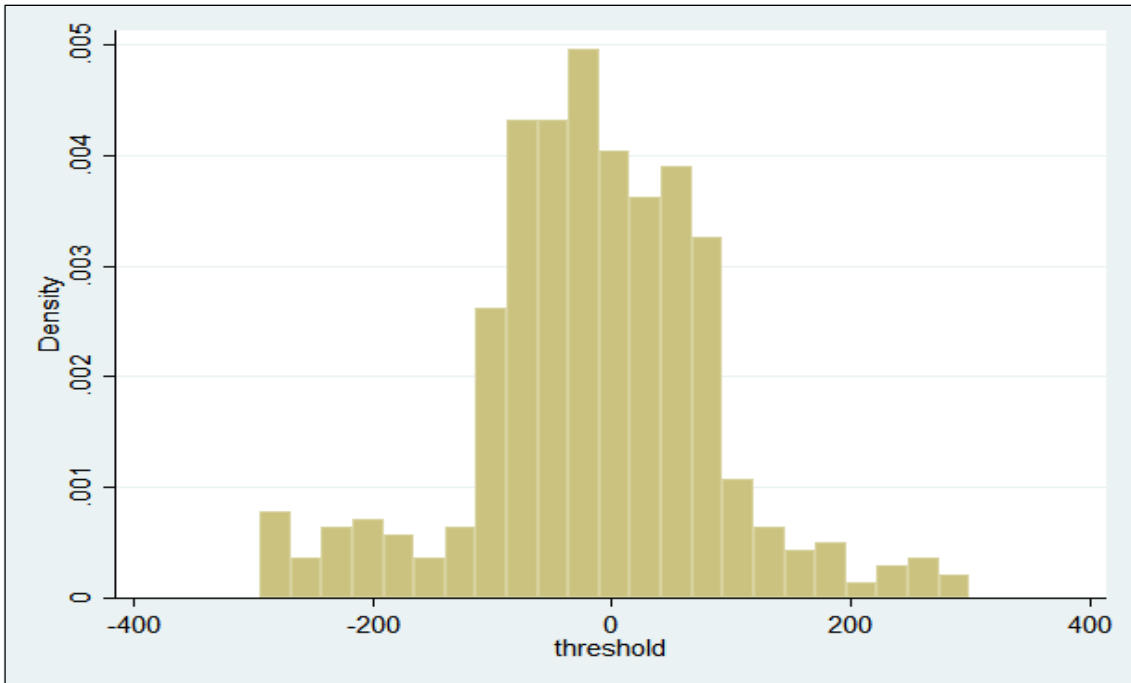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그림 IV-5] 표본선정 반경 7%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5~2016년 흑자기업)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그림 IV-6] 표본선정 반경 10%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5~2016년 흑자기업)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 <표 IV-7>은 표본선정 반경별로 2015~2016년 2년 연속 흑자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고함
 - <표 IV-4>와 비교해 볼 때, 2년 연속 흑자기업은 2016년 흑자기업보다 전체 고용인원 평균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은 더 크게 나타남

- <표 IV-8>은 2년 연속 흑자기업 중 분석 대상 관측치를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기타기업))별로 구분하여 기초통계량을 살펴봄
 - 2년 연속 흑자기업에 대해 단절점 ①에 해당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전년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을 살펴보면 2016년 흑자기업 표본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특히 표본선정 반경 5%에서 대기업의 전년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은 음(-)으로 나타남

<표 IV-7>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2015~2016년 흑자기업)

(단위: 명, 억원, 개월)

구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표본 선정 반경 5%	고용인원 (전체)	242	316.46	883.43	2.92	10,900.83
	고용인원 (청년)	242	72.67	320.74	0.09	4,548.42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242	1.23	15.24	-111.08	121.17
	매출액	242	1,351.72	812.88	575.00	3,797.17
	기업연한	242	297.58	174.90	35.00	1,166.00
표본 선정 반경 7%	고용인원 (전체)	356	322.04	787.81	2.92	10,900.83
	고용인원 (청년)	356	73.61	289.02	0.00	4,548.42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356	2.28	20.18	-111.08	266.00
	매출액	356	1,411.92	871.77	386.46	4,334.00
	기업연한	356	301.68	173.38	35.00	1,166.00
표본 선정 반경 10%	고용인원 (전체)	546	305.77	672.08	2.50	10,900.83
	고용인원 (청년)	546	68.42	242.03	0.00	4,548.42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546	1.95	18.59	-111.08	266.00
	매출액	546	1,414.09	875.67	365.98	4,334.00
	기업연한	546	296.06	169.69	35.00	1,166.00

<표 IV-8> 주요 변수의 기업규모별 기초통계량(2015~2016년 흑자기업)

(단위: 명, 억원, 개월)

구분	변수명	단절점 ②~⑥				단절점 ①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기업)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표본 선정 반경 5%	고용인원 (전체)	105	196.71	94	187.47	26	547.65	17	1,415.77
	고용인원 (청년)	105	37.69	94	37.55	26	94.38	17	449.71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105	0.61	94	2.05	26	2.29	17	-1.04
	매출액	105	939.57	94	1,051.36	26	2,923.29	17	3,154.64
	기업연한	105	272.47	94	289.56	26	442.08	17	276.06
표본 선정 반경 7%	고용인원 (전체)	150	208.65	132	209.09	43	502.43	31	1,101.41
	고용인원 (청년)	150	42.64	132	47.28	43	107.74	31	288.18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150	1.49	132	4.37	43	0.31	31	0.00
	매출액	150	933.97	132	1,050.04	43	2,932.92	31	3,155.79
	기업연한	150	269.86	132	303.14	43	406.67	31	303.84
표본 선정 반경 10%	고용인원 (전체)	237	205.82	194	233.01	71	479.94	44	883.90
	고용인원 (청년)	237	45.11	194	51.56	71	99.21	44	218.62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237	1.91	194	2.69	71	1.15	44	0.23
	매출액	237	927.90	194	1,053.70	71	2,902.08	44	3,220.79
	기업연한	237	267.23	194	291.62	71	388.52	44	321.77

4. 당해년도 후자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 본 분석을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의 조세특례가 청년고용 증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세액공제액 규모를 상이하게 함으로써 처치를 발생(단절점 ①)시킴
 -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이 수혜대상이므로 중견·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처치(단절점 ②~⑥)가 발생됨
 - 다만 기업규모별로 차등 지원되어 동일한 단절점을 가진 다른 조세특례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단년도 분석에서 나타난 고용창출효과를 모두 두 제도에 대한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음

-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실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인바, 샘플을 ① 당해년도 후자기업, ② 전년도와 당해년도 2년 연속 후자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함
 - 세액공제제도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의한 청년고용 증대효과 역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함

-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고용의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들 사이에서 규모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규모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음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 모두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증가시킨 청년고용인원 비중에 대해 수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킨 청년고용인원에 대해 수혜혜택을 제공하는바, 전체 고용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청년고용 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특성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 (1)과, 기업특성변수를 통제한 모형 (2)를 표본선정 반경별로 각각 분석을 실시함

- 통제변수로 기업고용규모, 기업연한과 매출액증감률을 추가함
 - 기업연한이 짧은 신생기업일수록 신규고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매출액증감률은 경영개선지표 중 하나로서 매출액증감률이 높은 기업이 신규 고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본 분석에서는 회귀단절모형(RDD)을 적용하여 처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내생성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는 기업특성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 (1)과 기업특성변수를 통제된 모형 (2)가 크게 다른 결과를 보이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기업특성변수를 통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보조적인 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기업특성변수를 통제한 분석결과를 함께 보고함

가. 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의 청년 고용 증대효과

- <표 IV-9>의 단절점 ① 전후에서 발견되는 고용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본선정 반경 5%의 모형 (1)에서 나타난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9.9명, 모형 (2)에서 나타난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9.7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청년고용을 약 10명 정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6년 흑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2015년 대비 2016년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살펴보면 표본선정 반경 5%에서 정(+)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모형 (1)에서 추정된 청년고용 증대효과의 크기는 <표 IV-5>에서 살펴본 기초 통계량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전년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의 차이와 동일함을 알 수 있음
- 「청년고용증대세제」 시행으로 증가한 청년고용인원 1명당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의 세액공제가 되어 중견기업의 청년고용 증대유인이 더 큰 것이 정(+)의 효과가 나타난 이유로 판단됨
- 다만 추정에 사용된 관측치의 기초통계량을 담고 있는 <표 IV-5>를 살펴보면 추정된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처치를 받은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증가시켰다

기보다 대기업이 청년고용을 크게 감소시켜 발생한 효과일 가능성이 있어, 추정된 청년고용 증대효과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2015~2016년 2년 연속 후자기업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담은 <표 IV-8>을 살펴보면 2년 연속 후자기업 표본의 경우 청년고용을 감소시킨 관측치들이 많이 제거되어 있어 보다 정확한 청년고용 증대효과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16년 후자기업 표본의 경우 전년 대비 청년고용을 크게 감소시킨 기업들이 통제집단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처치효과가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관측치들을 제거한 2년 연속 후자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표본선정 반경 7%와 10%에서 역시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정(+)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으나 이는 통계적 유의성 존재하지 않고 그 절댓값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따라서 단절점에서 멀어질수록 처치의 외생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5%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강창희·유경준, 2009)

□ <표 IV-10>은 제도시행 이전인 2014년 대비 2015년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분석함

-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회귀단절모형(RDD)이 식별전략으로 적절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도시행 이전에 동일한 분석을 실시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야 함
 - 2015년에는 제도시행 이전으로서 제도시행이 청년고용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반면 2016년에는 제도가 시행되어 청년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임

□ 분석결과, 단절점 ①에서 2015년과 2016년 청년고용 증대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모두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근거는 없으나, 동 제도가 실질적으로 2016년도부터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한다면 그 차이 중 일부는 동 제도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2014년 대비 2015년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정(+)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표본선정 반경 7%에서만 통계적 유의관계가 나타났을 뿐 표본선정 반경 5%와 10%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청년고용 증대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즉, 「청년고용증대세제」 시행으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3,000억원 주변에서 청년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앞에서 표본선정 반경으로 5%, 7%, 10%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는데, 표본선정 반경 5%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효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단절점에서 멀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개별 특성으로 인해 처치가 영향을 받는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처치의 외생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표 IV-9> 2016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2016년 흑자기업)

구분 주요 설명 변수	표본선정 반경: 5%		표본선정 반경: 7%		표본선정 반경: 10%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처치(단절점 ①)	9.880* (5.317)	9.717* (5.374)	5.175 (4.346)	5.383 (4.380)	3.677 (3.547)	3.727 (3.564)
단절점 ②	7.804 (6.298)	6.447 (6.351)	5.629 (5.438)	5.861 (5.523)	3.499 (4.598)	3.747 (4.663)
단절점 ③	9.824** (4.597)	7.352 (4.798)	7.224* (3.868)	7.170* (4.112)	4.043 (3.246)	4.133 (3.394)
단절점 ④	14.53** (6.073)	13.58** (6.087)	9.128* (5.290)	9.065* (5.335)	7.042 (4.505)	6.919 (4.525)
단절점 ⑤	34.00** (13.89)	33.62** (13.89)	72.45*** (9.718)	71.41*** (9.817)	25.81*** (6.938)	25.49*** (7.005)
단절점 ⑥	-	-	22.24 (20.74)	21.02 (20.81)	31.97*** (11.94)	30.71** (12.00)
단절점 ②×처치	-5.855 (9.340)	-5.871 (9.349)	-5.429 (8.013)	-5.553 (8.142)	-2.971 (6.502)	-3.115 (6.566)
단절점 ③×처치	-12.34** (6.168)	-11.90* (6.238)	-7.588 (5.219)	-7.589 (5.267)	-2.917 (4.208)	-3.055 (4.232)
단절점 ④×처치	-12.18 (7.952)	-12.66 (8.025)	-5.017 (7.065)	-5.287 (7.170)	-3.153 (5.968)	-3.267 (6.033)
단절점 ⑤×처치	-31.60** (15.63)	-30.82** (15.62)	-66.84*** (11.62)	-66.49*** (11.65)	-21.30** (8.770)	-21.32** (8.785)
단절점 ⑥×처치	-	-	-21.34 (29.30)	-20.37 (29.38)	-31.76* (18.71)	-30.13 (18.78)
log(고용규모)		-1.844 (1.248)		0.454 (1.087)		0.335 (0.875)
기업연한(월)		0.00217 (0.00704)		-0.00165 (0.00640)		0.000671 (0.00516)
매출액증감률(%)		0.0175 (0.0173)		0.0273 (0.0178)		0.0247* (0.0136)
상수항	-9.004** (4.010)	1.121 (8.176)	-5.402* (3.239)	-7.602 (7.076)	-3.888 (2.764)	-6.151 (5.738)
관측치 수	274	274	405	404	614	612
결정계수(R ²)	0.044	0.058	0.131	0.136	0.035	0.040

주: 1. 종속변수는 전년 대비 당해년도에 증가한 청년고용인원
 2.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IV-10> 2015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2015년 흑자기업)

구분	표본선정 반경: 5%		표본선정 반경: 7%		표본선정 반경: 10%	
	(1)	(2)	(1)	(2)	(1)	(2)
주요 설명 변수						
처치(단절점 ①)	0.983 (4.439)	1.112 (4.410)	9.158* (4.771)	8.946* (4.707)	5.289 (3.775)	5.833 (3.726)
단절점 ②	4.553 (6.120)	4.990 (6.096)	2.576 (6.887)	4.284 (6.790)	0.632 (5.522)	2.965 (5.456)
단절점 ③	5.056 (3.835)	4.167 (4.006)	3.680 (4.286)	5.479 (4.399)	3.656 (3.334)	5.881* (3.429)
단절점 ④	4.984 (5.942)	4.689 (5.920)	4.323 (6.220)	5.117 (6.120)	-0.872 (4.682)	0.742 (4.637)
단절점 ⑤	2.907 (8.746)	-1.598 (8.859)	1.865 (10.83)	-3.100 (10.80)	0.375 (8.542)	-1.332 (8.459)
단절점 ⑥	-	-	-	-	-	-
단절점 ②×처치	-3.045 (9.457)	-2.876 (9.387)	-9.072 (10.77)	-8.213 (10.56)	-4.746 (8.504)	-4.769 (8.348)
단절점 ③×처치	-1.112 (5.450)	-0.452 (5.419)	-9.025 (5.804)	-8.570 (5.711)	-7.440 (4.539)	-7.258 (4.474)
단절점 ④×처치	-0.247 (7.886)	0.274 (7.849)	-8.262 (8.227)	-5.462 (8.122)	1.204 (6.280)	2.017 (6.188)
단절점 ⑤×처치	-0.200 (12.39)	2.816 (13.05)	-24.19* (14.66)	-26.17* (15.06)	-16.59 (11.70)	-21.26* (11.92)
단절점 ⑥×처치	-	-	-	-	-	-
log(고용규모)		0.490 (1.262)		4.261*** (1.268)		3.697*** (0.936)
기업연한(월)		0.00206 (0.00694)		-0.00621 (0.00738)		-0.00666 (0.00564)
매출액증감률(%)		0.0879*** (0.0302)		0.106*** (0.0345)		0.0880*** (0.0259)
상수항	-3.074 (3.092)	-6.816 (7.719)	-2.032 (3.533)	-24.30*** (7.854)	-0.649 (2.761)	-20.15*** (5.977)
관측치 수	265	264	369	367	542	540
결정계수(R ²)	0.012	0.045	0.020	0.076	0.014	0.061

주: 1. 종속변수는 전년 대비 당해년도에 증가한 청년고용인원
 2.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청년 고용 증대효과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산업군별로 상이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됨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산업군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5개의 단절점이 존재함(단절점 ②~⑥)

- 단절점 ②~⑥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처치효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아닌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 등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청년고용 증대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왜냐하면 2016년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모두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혜택을 적용받고 있으며, 수혜규모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기준집단(단절점 ①)에 대한 처치효과와 해당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군의 처치효과, 즉 각 단절점과 처치의 상호교차항에서 추정되는 추정치의 합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가령,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이 1,500억원으로 산업군 ①에 속함
 - 이 경우 위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 등으로 인한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처치(단절점 ①)에 대한 추정치와 단절점 ②와 처치의 상호교차항(단절점 ②×처치)의 합으로 추정됨

- <표 IV-9>를 살펴보면 기준집단에 대한 처치효과는 정(+)의 효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각 단절점(단절점 ②~⑥)의 처치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부(-)의 값으로 추정됨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각 단절점(단절점 ②~⑥)에서 나타나는 처치효과의 절댓값이 기준그룹에 대한 처치효과의 절댓값(단절점 ①)보다 대체로 크게 나타나면서 단절점 ②~⑥에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 등의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청년고용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됨

- <표 IV-9>를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표본선정 반경 5%에서 단절점 ③의 처치 효과는 -12.3명(모형 (1))과 -11.9명(모형 (2))으로 나타나 기준그룹에 대한 처치 효과(단절점 ①)를 고려하면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2.5명(모형 (1)) 및 -2.2명(모형 (2))로 분석됨
 - 이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 등의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중견기업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을 의미함
 - 다만 단절점 ②에서는 +4.0명(모형 (1)) 및 +3.8명(모형 (2))로 나타나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한편 단절점 ②~⑥의 경우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기준집단에 대한 처치효과와 각 단절점과 처치의 상호교차항에서 추정되는 추정치의 합으로 파악하는바, 기준집단에 대한 처치효과 추정치와 각 단절점과 처치의 상호교차항에 대한 추정치의 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에 [처치(단절점 ①)]의 추정치와 각 [단절점×처치]의 추정치의 합이 0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Joint Test 실시하였으며, Test의 결과값으로 <표 IV-11>에 F-value 및 p-value가 제공됨
- Joint Test 결과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 IV-11>의 표본선정 반경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 표본선정 반경이 클수록 회귀단절모형에서 가정하는 처치의 외생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표본선정 반경 5%로 한정하여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각 단절점에서 통계적으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 등의 시행에 따른 청년고용 증대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표 IV-11> Joint Test(당해년도 흑자기업)

구분		표본선정 반경: 5%		표본선정 반경: 7%		표본선정 반경: 10%	
		(1)	(2)	(1)	(2)	(1)	(2)
2015년 청년고용 증대효과	단절점 ②	0.06 (0.8051)	0.05 (0.8322)	0.00 (0.9930)	0.01 (0.9384)	0.01 (0.9433)	0.02 (0.8870)
	단절점 ③	0.00 (0.9674)	0.04 (0.8341)	0.00 (0.9681)	0.01 (0.9077)	0.73 (0.3936)	0.33 (0.5654)
	단절점 ④	0.01 (0.9102)	0.05 (0.8312)	0.02 (0.8938)	0.28 (0.5977)	1.67 (0.1963)	2.53 (0.1124)
	단절점 ⑤	0.00 (0.461)	0.10 (0.7491)	1.17 (0.2791)	1.45 (0.2297)	1.04 (0.3078)	1.86 (0.1731)
	단절점 ⑥						
2016년 청년고용 증대효과	단절점 ②	0.27 (0.6006)	0.25 (0.6165)	0.00 (0.9700)	0.00 (0.9803)	0.02 (0.8970)	0.01 (0.9118)
	단절점 ③	0.62 (0.4311)	0.48 (0.4876)	0.70 (0.4044)	0.58 (0.4478)	0.11 (0.7373)	0.09 (0.7678)
	단절점 ④	0.15 (0.6972)	0.25 (0.6196)	0.00 (0.9773)	0.00 (0.9864)	0.01 (0.9132)	0.01 (0.9245)
	단절점 ⑤	2.18 (0.1407)	2.06 (0.1520)	32.72*** (0.0000)	31.87*** (0.0000)	4.83** (0.0284)	4.78** (0.0292)
	단절점 ⑥			0.31 (0.5772)	0.27 (0.6062)	2.34 (0.1269)	2.05 (0.1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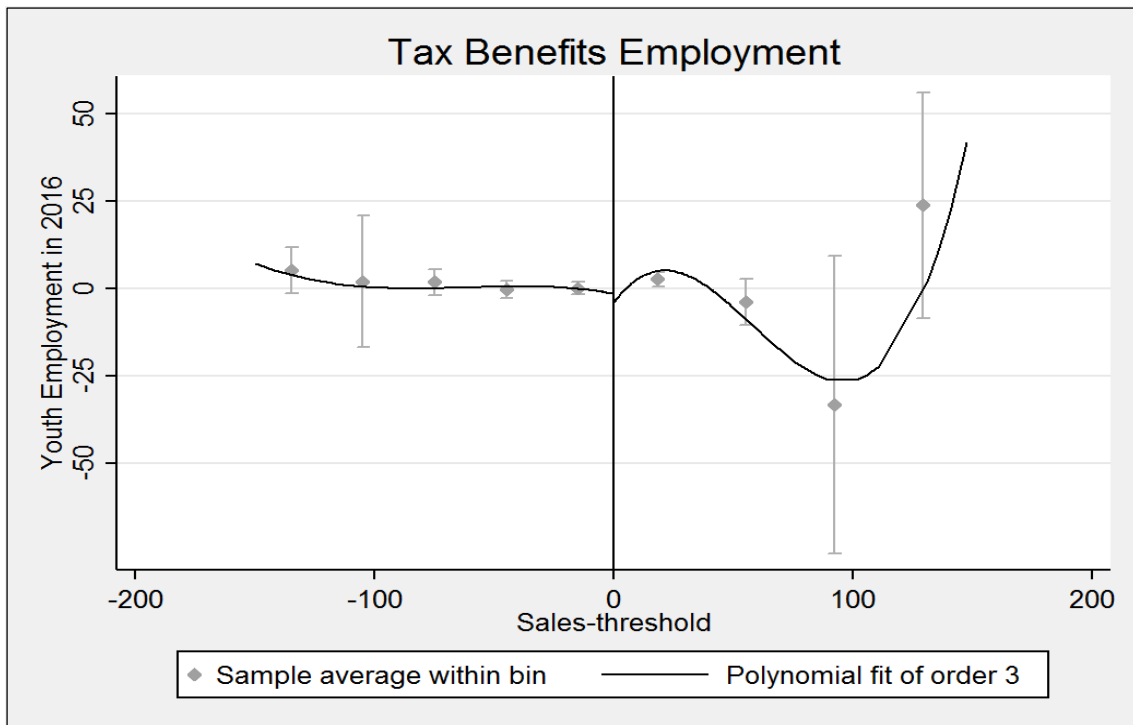
주: 1. 분석결과는 F-value를 의미
 2. 괄호 안은 p-value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다. 그래프를 이용한 회귀단절모형 분석

- 종속변수인 2015년 대비 2016년에 증가한 청년고용인원을 단절점 전후의 다양한 지점에서 평균고용량을 추정하고, 특히 단절점 주변의 전후 고용량 차이를 처치 효과로 추정함
 - 본 분석에서 단절점 기준은 매출액 기준이므로 단절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각 관측치의 매출액과 단절점 기준 매출액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음
 - 그래프를 통해 단절점 주변에 위치한 관측치들에 있어 처치효과 차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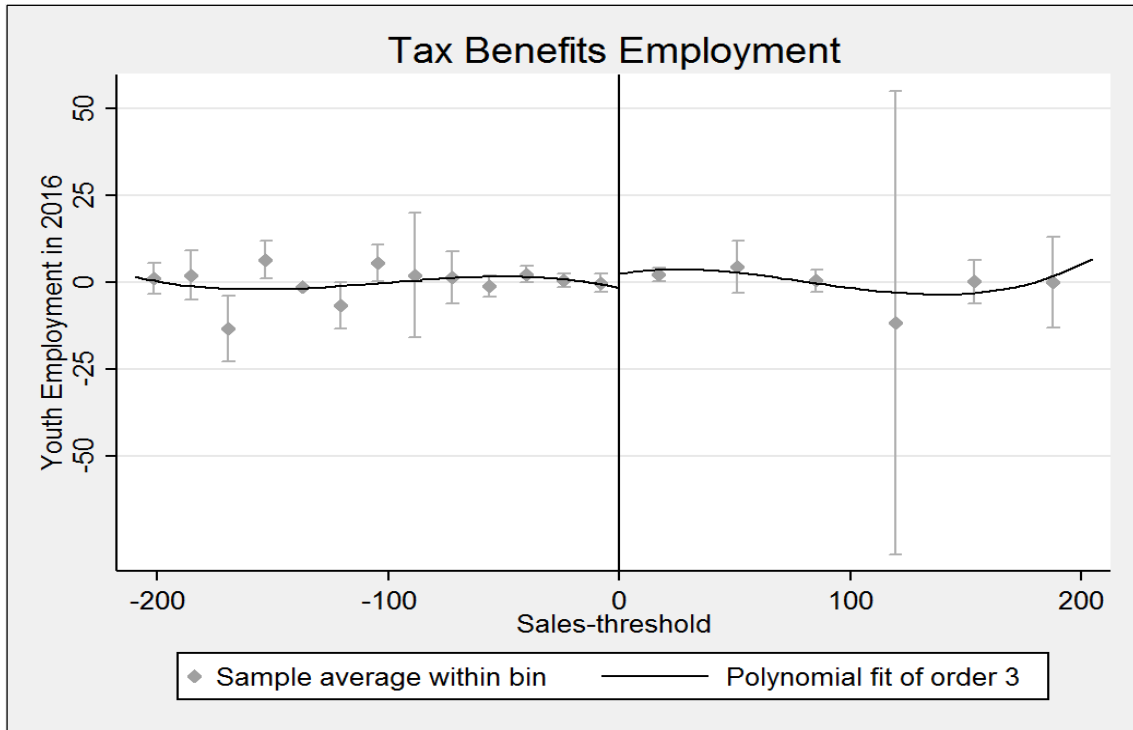
- 표본선정 반경 5%, 7%, 10% 이내 관측치를 대상으로 각각 회귀단절모형 그래프를 작성한 결과 단절점 이전과 이후의 청년고용의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표본선정 반경 5%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특히 본 분석은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흑자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절점 주위에 위치하는 관측치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음

[그림 IV-7] 표본선정 반경 5% 단절점 인근의 처치효과 차이(2016년 흑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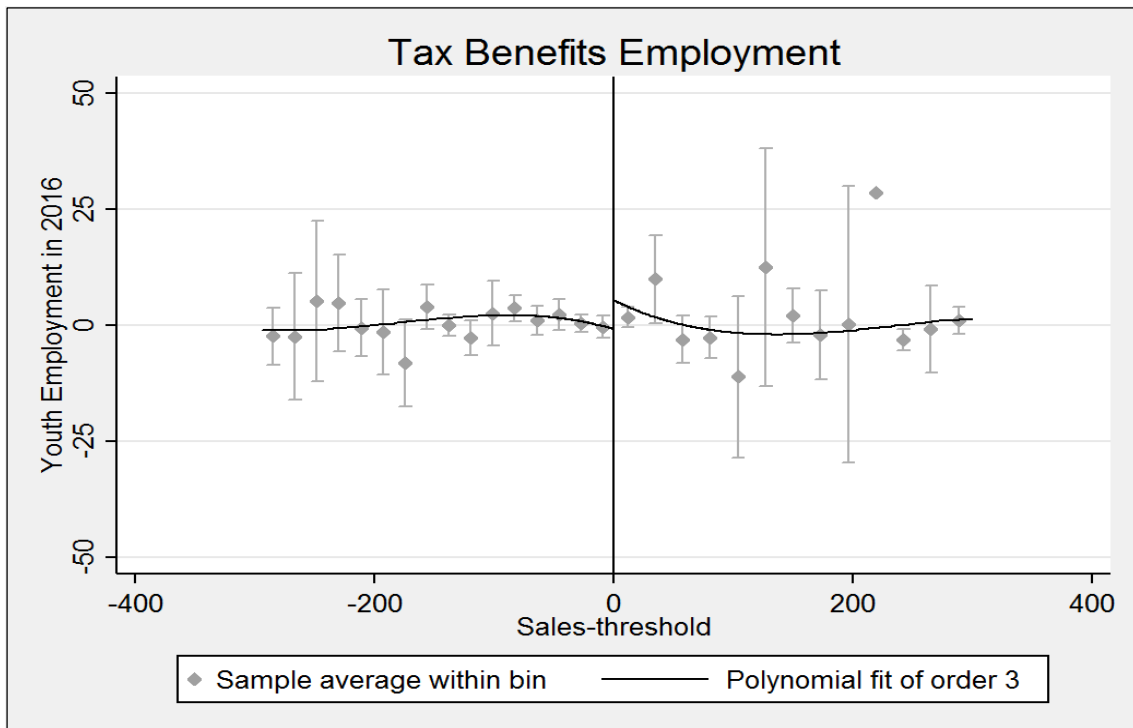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그림 IV-8] 표본선정 반경 7% 단절점 인근의 처치효과 차이(2016년 흑자기업)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그림 IV-9] 표본선정 반경 10% 단절점 인근의 처치효과 차이(2016년 흑자기업)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5. 2년 연속 흑자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 앞 소절에서 당해년도 흑자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주변의 기업들의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해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0명가량 추가 고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위 추정 결과는 중견기업이 고용을 증대시킨 것보다는 대기업이 고용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 <표 IV-5>를 살펴보면 표본선정 반경 5% 이내의 기업들에서 중견기업은 평균 0.88명의 청년고용을 증가시킨 반면 대기업은 9명의 청년고용을 감소시킴
 - 이로 인해 <표 IV-9>에서 표본선정 반경 5% 이내의 기업들에 대해 다른 통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 (1)을 통해 제도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동 제도로 인한 고용효과가 9.88명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됨

- 다만 위 추정결과는 전년도 적자기업의 경우 당해년도에 법인세 비용이 매우 낮아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고용 의사결정을 하였을 수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고용을 대폭 감소시켰다면 당해년도 흑자기업을 통해 분석한 효과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표 IV-6>에서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기업들의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을 살펴보면 전년도 적자기업을 제거할 경우 대기업은 9명 감소에서 1.0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감소 인원이 대폭 축소됨
 - 한편 중견기업의 경우 전년도 적자기업을 제거하더라도 청년고용 증가인원이 0.88명에서 2.29명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함
 - 이에 전년도 적자기업이 앞 소절의 회귀분석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소절에서는 2년 연속 흑자기업을 대상으로 앞 소절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한 분석을 실시함

가. 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의 청년 고용 증대효과

- 전년도 및 당해년도 2년 연속 흑자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대체로 정(+)의 효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결과를 보임
 - 표본선정 반경 5%의 모형 (1)에서 나타난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3.3명, 모형 (2)에서 나타난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4.2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청년고용을 약 3~4명 정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모형 (1)에서 추정된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2년 연속 흑자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담고 있는 <표 IV-8>에서 단절점 ①의 중견기업이 전년 대비 증가시킨 청년고용인원이 약 2명으로 나타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제도 시행 이전인 2014년 대비 2015년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표 IV-13>과 같이 분석한 결과, 2015년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표본선정 반경 5%에서는 부(-)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표본선정 반경 7% 및 10%에서는 정(+)의 효과가 나타나 표본선정 반경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

- 즉, 당해년도의 흑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 2년 연속 흑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앞 소절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표 IV-12> 2016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2015년 및 2016년 흑자기업)

구분	표본선정 반경: 5%		표본선정 반경: 7%		표본선정 반경: 10%	
	(1)	(2)	(1)	(2)	(1)	(2)
주요 설명 변수						
처치(단절점 ①)	3.339 (4.731)	4.217 (4.847)	0.311 (4.436)	1.198 (4.489)	0.918 (3.536)	1.436 (3.551)
단절점 ②	-0.136 (5.719)	-0.336 (5.779)	0.0659 (5.683)	1.359 (5.768)	-0.625 (4.677)	0.606 (4.729)
단절점 ③	1.991 (4.119)	1.187 (4.283)	1.742 (3.921)	3.048 (4.159)	0.921 (3.215)	1.974 (3.351)
단절점 ④	9.190 (5.719)	8.876 (5.750)	3.909 (5.580)	4.846 (5.648)	2.921 (4.559)	3.394 (4.576)
단절점 ⑤	26.04** (11.34)	25.30** (11.36)	67.05*** (9.074)	64.97*** (9.138)	21.69*** (6.457)	20.18*** (6.498)
단절점 ⑥	-	-	16.83 (19.13)	15.51 (19.14)	27.85** (11.00)	25.75** (11.02)
단절점 ②×처치	3.068 (8.627)	2.500 (8.673)	2.974 (8.371)	2.801 (8.538)	1.516 (6.607)	1.250 (6.669)
단절점 ③×처치	-5.521 (5.404)	-6.263 (5.529)	-2.155 (5.223)	-2.924 (5.293)	-0.879 (4.148)	-1.360 (4.165)
단절점 ④×처치	-8.717 (7.152)	-9.875 (7.268)	-0.684 (7.155)	-1.875 (7.319)	-0.669 (5.875)	-1.452 (5.949)
단절점 ⑤×처치	-22.49* (13.05)	-22.93* (13.08)	-59.96*** (11.08)	-59.54*** (11.09)	-17.21** (8.314)	-17.00** (8.302)
단절점 ⑥×처치	-	-	-16.48 (27.00)	-15.69 (27.02)	-29.00* (17.19)	-26.60 (17.21)
log(고용규모)		-0.466 (1.058)		1.495 (1.070)		1.426* (0.849)
기업연한(월)		-0.00482 (0.00623)		-0.00619 (0.00639)		-0.00471 (0.00510)
매출액증감률(%)		0.0147 (0.0141)		0.0252 (0.0168)		0.0295** (0.0141)
상수항	-1.044 (3.679)	2.950 (6.975)	0.00269 (3.382)	-7.047 (6.990)	0.229 (2.779)	-6.720 (5.548)
관측치 수	242	242	356	355	546	544
결정계수(R ²)	0.047	0.058	0.156	0.167	0.036	0.048

주: 1. 종속변수는 전년 대비 당해년도에 증가한 청년고용인원
 2.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IV-13> 2015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2014년 및 2015년 흑자기업)

구분	표본선정 반경: 5%		표본선정 반경: 7%		표본선정 반경: 10%	
	(1)	(2)	(1)	(2)	(1)	(2)
주요 설명 변수						
처치(단절점 ①)	-1.781 (4.559)	-1.442 (4.500)	6.990 (5.123)	7.273 (5.038)	3.748 (4.083)	4.701 (4.030)
단절점 ②	2.571 (6.270)	3.187 (6.200)	0.947 (7.509)	3.328 (7.365)	-0.388 (5.980)	2.605 (5.902)
단절점 ③	2.624 (3.915)	1.704 (4.062)	1.823 (4.569)	4.159 (4.672)	2.502 (3.617)	5.442 (3.718)
단절점 ④	3.059 (6.072)	2.763 (6.016)	3.078 (6.687)	4.219 (6.556)	-1.389 (5.068)	0.610 (5.018)
단절점 ⑤	-0.260 (9.513)	-0.236 (9.387)	-0.837 (12.29)	-2.853 (12.00)	-1.342 (9.429)	-0.899 (9.235)
단절점 ⑥	-	-	-	-	-	-
단절점 ②×처치	-0.446 (9.798)	-0.554 (9.652)	-6.857 (11.69)	-7.054 (11.40)	-3.038 (9.312)	-3.981 (9.120)
단절점 ③×처치	2.135 (5.568)	2.628 (5.501)	-6.819 (6.215)	-7.231 (6.094)	-5.939 (4.884)	-6.536 (4.815)
단절점 ④×처치	2.040 (8.033)	2.572 (7.939)	-6.993 (8.963)	-4.124 (8.829)	2.405 (6.815)	2.868 (6.705)
단절점 ⑤×처치	3.169 (12.87)	1.499 (13.33)	-21.41 (15.93)	-26.86* (16.12)	-14.63 (12.50)	-21.82* (12.63)
단절점 ⑥×처치	-	-	-	-	-	-
log(고용규모)		0.559 (1.279)		4.655*** (1.361)		4.019*** (1.004)
기업연한(월)		0.00308 (0.00702)		-0.00597 (0.00805)		-0.00622 (0.00614)
매출액증감률(%)		0.113*** (0.0336)		0.125*** (0.0399)		0.0982*** (0.0288)
상수항	-0.510 (3.171)	-5.166 (7.814)	0.0658 (3.791)	-24.77*** (8.364)	0.647 (3.033)	-21.10*** (6.422)
관측치 수	246	245	333	331	492	490
결정계수(R ²)	0.009	0.056	0.018	0.083	0.013	0.065

주: 1. 종속변수는 전년 대비 당해년도에 증가한 청년고용인원
 2.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청년 고용 증대효과

- <표 IV-12>를 살펴보면 기준집단에 대한 2016년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정(+)의 효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단절점에서의 추정치는 대체로 부(-)의 값이 나타남

- 특히 당해년도 흑자기업 분석과 마찬가지로 각 단절점에서 나타나는 처치효과(절댓값)가 기준집단에 대한 처치효과(절댓값(단절점 ①)보다 대체로 크게 나타나면서 단절점 ②~⑥에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의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청년고용이 감소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표본선정 반경 5%에서 단절점 ③의 처치효과는 -5.5명(모형 (1))과 -6.3명(모형 (2))으로 나타나 기준그룹에 대한 처치효과(단절점 ①)를 고려하면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2.2명(모형 (1)) 및 -2.0명(모형 (2))으로 분석됨 (<표 IV-12>)
 - 이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 등의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중견·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을 의미함
 - 다만 단절점 ②에서는 +3.1명(모형 (1)) 및 +2.5명(모형 (2))으로 나타나 기준집단에 대한 처치효과(단절점 ①)를 고려하면 청년고용 증대효과는 +6.4명(모형 (1)) 및 +6.7명(모형 (2))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IV-12>)

- <표 IV-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증감규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에는 청년고용 증대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V-14>는 <표 IV-12>와 <표 IV-13>에서 [처치(단절점 ①)]의 추정치와 각 [단절점×처치]의 추정치의 합이 0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Joint Test에 대한 결과임
 - 표본선정 반경이 클수록 회귀단절모형에서 가정하는 처치의 외생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표본선정 반경 5%로 한정하여 보수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각 단절점에서 통계적으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 등의 시행에 따른 청년고용 증대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표 IV-14> Joint Test(2년 연속 흑자기업 표본)

구분		표본선정 반경: 5%		표본선정 반경: 7%		표본선정 반경: 10%	
		(1)	(2)	(1)	(2)	(1)	(2)
2015년 청년고용 증대효과	단절점 ②	0.07 (0.7976)	0.05 (0.8158)	0.00 (0.9899)	0.00 (0.9830)	0.01 (0.9324)	0.01 (0.9300)
	단절점 ③	0.01 (0.9121)	0.14 (0.7079)	0.00 (0.9612)	0.00 (0.9903)	0.67 (0.4141)	0.49 (0.4849)
	단절점 ④	0.00 (0.9689)	0.03 (0.8630)	0.00 (0.9998)	0.19 (0.6631)	1.27 (0.2600)	2.00 (0.1580)
	단절점 ⑤	0.01 (0.9083)	0.00 (0.9964)	0.91 (0.3397)	1.64 (0.2012)	0.85 (0.3575)	2.05 (0.1524)
	단절점 ⑥						
2016년 청년고용 증대효과	단절점 ②	0.79 (0.3754)	0.87 (0.3533)	0.21 (0.6438)	0.30 (0.5834)	0.19 (0.6630)	0.23 (0.6349)
	단절점 ③	0.70 (0.4042)	0.61 (0.4374)	0.45 (0.5040)	0.39 (0.5333)	0.00 (0.9860)	0.00 (0.9719)
	단절점 ④	1.01 (0.3170)	1.10 (0.2946)	0.00 (0.9470)	0.01 (0.9054)	0.00 (0.9578)	0.00 (0.9974)
	단절점 ⑤	2.48 (0.1166)	2.36 (0.1255)	34.50*** (0.0000)	32.86*** (0.0000)	4.69** (0.0309)	4.27** (0.0392)
	단절점 ⑥			0.37 (0.5442)	0.30 (0.5867)	2.79* (0.0957)	2.23 (0.1359)

주: 1. 분석결과는 F-value를 의미
 2. 괄호 안은 p-value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한편 제도 시행으로 인한 청년고용 증대효과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제도 시행 이전인 2014년 대비 2015년 청년고용 증대효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대비 2015년 청년고용 증대효과 분석결과 각 단절점별 추정치는 2016년 청년고용 증대효과 분석결과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앞서 살펴본 기준집단에 대한 처치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표본선정 반경별로 일관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 간 청년고용 증대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6. 민감도 분석

- 앞의 기본분석에서는 특정 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주변의 표본선정 반경 내에 포함되더라도 당해년도 매출액증감률이 $\pm 50\%$ 를 초과한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표본선정 반경 내에 존재하더라도 최근 매출액이 급변한 기업들은 개별 연도 매출액의 경우 표본선정 반경에서 상당히 벗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다른 비교집단과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본 분석에 적용한 회귀단절모형(RDD)은 단절점 경계에 위치한 관측치들이 유사한 성격을 가진 관측치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므로 유사성을 담보할 수 없는 표본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단절점 ① 경계 주변에 있는 기업들 중 전년 대비 매출액증감률이 급증 또는 급감한 기업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하지만 분석에서 제외되는 관측치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어 관측치를 제거하지 않은 전체 표본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함
 - 앞의 기본분석과 비교해 4개의 관측치가 추가됨
 - 한편, 민감도 분석에서는 표본선정 반경 5% 주변에 대해서만 실시함

- 민감도 분석 결과 2016년 당해년도 흑자기업에 대한 대기업 대비 중견기업의 청년고용 증대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됨
 - 그 외 다른 결과들은 대체로 기준분석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당해년도 흑자기업에 대한 분석 시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주변에서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청년을 더 고용했다는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표본선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함

<표 IV-15> 2016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2016년 흑자기업)

구분 주요 설명 변수	전체		매출액증감률 ±50% 초과 제외	
	(1)	(2)	(1)	(2)
처치(단절점 ①)	7.796 (5.060)	8.360 (5.137)	9.880* (5.317)	9.717* (5.374)
단절점 ②	5.720 (6.075)	5.007 (6.118)	7.804 (6.298)	6.447 (6.351)
단절점 ③	7.740* (4.303)	5.834 (4.468)	9.824** (4.597)	7.352 (4.798)
단절점 ④	12.45** (5.844)	12.12** (5.845)	14.53** (6.073)	13.58** (6.087)
단절점 ⑤	31.92** (13.75)	32.09** (13.72)	34.00** (13.89)	33.62** (13.89)
단절점 ⑥	-	-	-	-
단절점 ②×처치	-3.771 (9.171)	-4.507 (9.180)	-5.855 (9.340)	-5.871 (9.349)
단절점 ③×처치	-10.26* (5.941)	-10.51* (6.013)	-12.34** (6.168)	-11.90* (6.238)
단절점 ④×처치	-10.10 (7.765)	-11.34 (7.849)	-12.18 (7.952)	-12.66 (8.025)
단절점 ⑤×처치	-29.52* (15.50)	-29.39* (15.46)	-31.60** (15.63)	-30.82** (15.62)
단절점 ⑥×처치	-	-	-	-
log(고용규모)		-1.875 (1.237)		-1.844 (1.248)
기업연한(월)		0.00174 (0.00697)		0.00217 (0.00704)
매출액증감률(%)		0.0201 (0.0167)		0.0175 (0.0173)
상수항	-6.920* (3.674)	2.842 (7.890)	-9.004** (4.010)	1.121 (8.176)
관측치 수	278	278	274	274
결정계수(R ²)	0.038	0.055	0.044	0.058

주: 1. 종속변수는 전년 대비 당해년도에 증가한 청년고용인원
 2.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IV-16> 2015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2015년 흑자기업)

구분 주요 설명 변수	전체		매출액증감률 ±50% 초과 제외	
	(1)	(2)	(1)	(2)
처치(단절점 ①)	2.002 (4.374)	1.837 (4.336)	0.983 (4.439)	1.112 (4.410)
단절점 ②	4.553 (6.122)	4.950 (6.086)	4.553 (6.120)	4.990 (6.096)
단절점 ③	5.056 (3.837)	4.029 (3.997)	5.056 (3.835)	4.167 (4.006)
단절점 ④	4.984 (5.944)	4.615 (5.911)	4.984 (5.942)	4.689 (5.920)
단절점 ⑤	2.907 (8.749)	-1.908 (8.840)	2.907 (8.746)	-1.598 (8.859)
단절점 ⑥	-	-	-	-
단절점 ②×처치	-4.065 (9.429)	-3.508 (9.344)	-3.045 (9.457)	-2.876 (9.387)
단절점 ③×처치	-2.132 (5.398)	-1.140 (5.363)	-1.112 (5.450)	-0.452 (5.419)
단절점 ④×처치	-1.267 (7.851)	-0.451 (7.799)	-0.247 (7.886)	0.274 (7.849)
단절점 ⑤×처치	-1.219 (12.37)	2.223 (13.02)	-0.200 (12.39)	2.816 (13.05)
단절점 ⑥×처치	-	-	-	-
log(고용규모)		0.467 (1.259)		0.490 (1.262)
기업연한(월)		0.00145 (0.00689)		0.00206 (0.00694)
매출액증감률(%)		0.0918*** (0.0299)		0.0879*** (0.0302)
상수항	-3.074 (3.093)	-6.482 (7.701)	-3.074 (3.092)	-6.816 (7.719)
관측치 수	267	266	265	264
결정계수(R ²)	0.011	0.046	0.012	0.045

주: 1. 종속변수는 전년 대비 당해년도에 증가한 청년고용인원
 2.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IV-17> Joint Test(당해년도 흑자기업)

구분		전체		매출액증감률 $\pm 50\%$ 초과 제외	
		(1)	(2)	(1)	(2)
2015년 청년고용 증대효과	단절점 ②	0.06 (0.8052)	0.04 (0.8406)	0.06 (0.8051)	0.05 (0.8322)
	단절점 ③	0.00 (0.9674)	0.05 (0.8247)	0.00 (0.9674)	0.04 (0.8341)
	단절점 ④	0.01 (0.9103)	0.05 (0.8310)	0.01 (0.9102)	0.05 (0.8312)
	단절점 ⑤	0.00 (0.9461)	0.11 (0.7406)	0.00 (0.9461)	0.10 (0.7491)
	단절점 ⑥				
2016년 청년고용 증대효과	단절점 ②	0.28 (0.5992)	0.26 (0.6138)	0.27 (0.6006)	0.25 (0.6165)
	단절점 ③	0.63 (0.4293)	0.47 (0.4917)	0.62 (0.4311)	0.48 (0.4876)
	단절점 ④	0.15 (0.6961)	0.26 (0.6137)	0.15 (0.6972)	0.25 (0.6196)
	단절점 ⑤	2.20 (0.1392)	2.07 (0.1511)	2.18 (0.1407)	2.06 (0.1520)
	단절점 ⑥				

주: 1. 분석결과는 F-value를 의미
 2. 괄호 안은 p-value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IV-18> 2016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2015~2016년 흑자기업)

구분 주요 설명 변수	전체		매출액증감률 ±50% 초과 제외	
	(1)	(2)	(1)	(2)
처치(단절점 ①)	2.487 (4.489)	3.740 (4.629)	3.339 (4.731)	4.217 (4.847)
단절점 ②	-0.989 (5.511)	-0.846 (5.570)	-0.136 (5.719)	-0.336 (5.779)
단절점 ③	1.138 (3.846)	0.660 (4.002)	1.991 (4.119)	1.187 (4.283)
단절점 ④	8.338 (5.511)	8.357 (5.536)	9.190 (5.719)	8.876 (5.750)
단절점 ⑤	25.19** (11.19)	24.76** (11.20)	26.04** (11.34)	25.30** (11.36)
단절점 ⑥	-	-	-	-
단절점 ②×처치	3.920 (8.466)	2.990 (8.515)	3.068 (8.627)	2.500 (8.673)
단절점 ③×처치	-4.668 (5.186)	-5.776 (5.326)	-5.521 (5.404)	-6.263 (5.529)
단절점 ④×처치	-7.865 (6.973)	-9.400 (7.102)	-8.717 (7.152)	-9.875 (7.268)
단절점 ⑤×처치	-21.64* (12.91)	-22.44* (12.93)	-22.49* (13.05)	-22.93* (13.08)
단절점 ⑥×처치	-	-	-	-
log(고용규모)		-0.464 (1.051)		-0.466 (1.058)
기업연한(월)		-0.00501 (0.00618)		-0.00482 (0.00623)
매출액증감률(%)		0.0154 (0.0139)		0.0147 (0.0141)
상수항	-0.192 (3.375)	3.501 (6.747)	-1.044 (3.679)	2.950 (6.975)
관측치 수	245	245	242	242
결정계수(R ²)	0.046	0.058	0.047	0.058

주: 1. 종속변수는 전년 대비 당해년도에 증가한 청년고용인원
 2.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IV-19> 2015년 청년 고용 증대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2014~2015년 흑자기업)

구분 주요 설명 변수	전체		매출액증감률 $\pm 50\%$ 초과 제외	
	(1)	(2)	(1)	(2)
처치(단절점 ①)	-0.654 (4.487)	-0.738 (4.416)	-1.781 (4.559)	-1.442 (4.500)
단절점 ②	2.571 (6.273)	3.167 (6.188)	2.571 (6.270)	3.187 (6.200)
단절점 ③	2.624 (3.918)	1.572 (4.051)	2.624 (3.915)	1.704 (4.062)
단절점 ④	3.059 (6.076)	2.690 (6.004)	3.059 (6.072)	2.763 (6.016)
단절점 ⑤	-0.260 (9.519)	-0.273 (9.369)	-0.260 (9.513)	-0.236 (9.387)
단절점 ⑥	-	-	-	-
단절점 ②×처치	-1.574 (9.769)	-1.184 (9.602)	-0.446 (9.798)	-0.554 (9.652)
단절점 ③×처치	1.007 (5.511)	1.955 (5.436)	2.135 (5.568)	2.628 (5.501)
단절점 ④×처치	0.912 (7.996)	1.861 (7.881)	2.040 (8.033)	2.572 (7.939)
단절점 ⑤×처치	2.041 (12.85)	0.661 (13.27)	3.169 (12.87)	1.499 (13.33)
단절점 ⑥×처치	-	-	-	-
log(고용규모)		0.530 (1.275)		0.559 (1.279)
기업연한(월)		0.00248 (0.00696)		0.00308 (0.00702)
매출액증감률(%)		0.117*** (0.0331)		0.113*** (0.0336)
상수항	-0.510 (3.173)	-4.819 (7.791)	-0.510 (3.171)	-5.166 (7.814)
관측치 수	248	247	246	245
결정계수(R ²)	0.007	0.058	0.009	0.056

주: 1. 종속변수는 전년 대비 당해년도에 증가한 청년고용인원
 2.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IV-20> Joint Test(2년 연속 흑자기업)

구분		전체		매출액증감률 ±50% 초과 제외	
		(1)	(2)	(1)	(2)
2015년 청년고용 증대효과	단절점 ②	0.07 (0.7977)	0.05 (0.8222)	0.07 (0.7976)	0.05 (0.8158)
	단절점 ③	0.01 (0.9122)	0.15 (0.7001)	0.01 (0.9121)	0.14 (0.7079)
	단절점 ④	0.00 (0.9689)	0.03 (0.8636)	0.00 (0.9689)	0.03 (0.8630)
	단절점 ⑤	0.01 (0.9084)	0.00 (0.9951)	0.01 (0.9083)	0.00 (0.9964)
	단절점 ⑥				
2016년 청년고용 증대효과	단절점 ②	0.80 (0.3730)	0.88 (0.3497)	0.79 (0.3754)	0.87 (0.3533)
	단절점 ③	0.71 (0.4019)	0.61 (0.4369)	0.70 (0.4042)	0.61 (0.4374)
	단절점 ④	1.02 (0.3145)	1.12 (0.2917)	1.01 (0.3170)	1.10 (0.2946)
	단절점 ⑤	2.51 (0.1148)	2.39 (0.1237)	2.48 (0.1166)	2.36 (0.1255)
	단절점 ⑥				

주: 1. 분석결과는 F-value를 의미
 2. 괄호 안은 p-value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7. 분석의 한계점

-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회귀단절모형(RDD)을 통하여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함
 - 단순선형회귀(OLS) 등 기존 선행연구의 방법론들은 기업들이 세제혜택으로 인해 고용을 창출한 것인지, 아니면 고용을 창출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표본에 포함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조세지출 이외에 고용 창출에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한 분석은 이러한 문제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세제혜택의 대한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장점이 있음
- 하지만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함
- 회귀단절모형(RDD)을 통한 분석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되는 제도적 특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특징은 다른 다수의 조세특례에서도 관찰됨
 - 다만 「청년고용증대세제」 이외의 다른 제도들이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을 하더라도 2015년과 2016년에 사이에 제도적 변화가 없었던 반면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실질적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달라진 고용창출효과를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변화한 제도들이 존재하여 온전히 「청년고용증대세제」만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수혜규모에 차이가 없는 기업군 간의 청년고용 증대효과를 분석할 수 없어 동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분석대상 시점인 2016년의 「청년고용증대세제」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혜규모가 동일하였음
 - 2017년 세액공제규모의 확대에 의해 중소기업(1천만원)과 중견기업(7백만원) 간의 세제혜택에 차이가 존재하는바, 향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고용창출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회귀단절모형(RDD)의 특성상 매출액이 단절점에 가까운 기업들에 대해 청년고용 증대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단절점에서 거리가 먼 영세규모와 대규모 기업군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함
 - 예컨대 식료품 제조업(중소기업 해당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표본선정 반경 5%, 7%, 10%를 벗어나 5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경우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 또한 회귀단절모형(RDD)은 표본선정 반경을 한정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전체 관측치를 분석에 사용하지 않고 일정 범위의 관측치만을 사용하여 많은 관측치가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이 존재함
 - 이로 인해 분석에 사용하는 관측치가 작아져 분석결과가 개별 관측치의 변동성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석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 어려움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더라도 그 이유가 제도 자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이 동 제도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제도적으로는 처치집단에 속하더라도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은 통제 집단과 유사하게 고용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가용한 자료에서는 개별 기업의 제도 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 기준에 의해서만 처치집단을 설정할 수밖에 없음
 - 이에 처치집단에 제도 비인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동 제도가 고용창출에 효과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분석에서는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특히, 동 제도는 실질적으로 분석대상 기간인 2016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클 수 있음

V. 설문조사 분석



V.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제Ⅳ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회귀단절모형(RDD)을 통한 고용창출효과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함
 - 추가적인 효과성 분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문조사 대상기업의 재무자료와 고용자료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함
 - 이와 더불어 동 제도 및 제도 확대에 대한 인지도, 고용의사결정 시 동 제도가 미친 영향 등을 직접 질문하여 동 제도의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을 보완함
- 동 설문조사는 국내에 본사를 둔 501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501개의 법인 중 중소기업이 350개, 중견기업이 106개, 대기업이 45개임
 - 모든 업종에 대하여 조사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기업, 그리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이는 소상공인으로 동 제도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임

<표 V-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전체 내국 법인
조사 모집단	2015년 이전 창업기업 2016년 후자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이상)
표본수	501개(중소기업 350개, 중견기업 106개, 대기업 45개)
표집 방법	업종 및 기업규모별 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 방법	전화, 팩스, 이메일, 웹링크 등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조사 기간	2017년 3~6월
실사 기간	2017년 5~6월
조사 기관	칸타 퍼블릭

- 2016년 전체 기간에 대한 고용의사결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2016년 기준 당기순손실 기업은 세제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함

2. 표본의 특성

-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인 수도권에 56.89%, 비수도권에 43.11%의 비율로 기업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수도권 지역을 더 세분화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에 각각 31.74%, 4.19%, 20.96%의 기업이 분포해 있음
 - 영남권에 위치한 기업은 22.5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남권에 위치한 기업은 10.38%인 것으로 조사됨

〈표 V-2〉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지역 분포

(단위: 개, %)

지역	법인 수	비중
서울특별시	159	31.74
부산광역시	29	5.79
대구광역시	8	1.60
인천광역시	21	4.19
광주광역시	19	3.79
대전광역시	10	2.00
울산광역시	14	2.79
경기도	105	20.96
강원도	7	1.40
충청북도	12	2.40
충청남도	18	3.59
전라북도	21	4.19
전라남도	12	2.40
경상북도	28	5.59
경상남도	34	6.79
제주특별자치도	3	0.60
세종특별자치시	1	0.20
전체	501	100

-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업종 분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조업이 47.5%, 건설업 12.97%, 도매 및 소매업 10.9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7.98%, 운수업은 4.3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3.79%의 비율로 나타남

<표 V-3>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업종 분포

(단위: 개, %)

업종	법인 수	비중
광업	1	0.20
제조업	238	47.5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	2.2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	1.60
건설업	65	12.97
도매 및 소매업	55	10.98
운수업	22	4.39
숙박 및 음식점업	4	0.8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2.59
금융 및 보험업	7	1.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	0.8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0	7.9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3.79
교육서비스업	5	1.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0.6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	1.20
전체	501	100

-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창업년월을 살펴보면 2010년 이전 창업기업이 92.02%로 대다수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창업한 기업이 6.79%,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창업한 기업이 1.20%의 비율을 차지함

<표 V-4>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업력 분포

(단위: 개, %)

창업시기	법인 수	비중
2010년 이전 창업	461	92.02
2010~2012년	34	6.79
2013~2015년	6	1.20
전체	501	100

3.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창출효과

가. 분석방법: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 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개별 기업의 재무정보와 고용정보를 토대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함
 - 「청년고용증대세제」이 실질적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다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동 제도로 인해 청년고용이 증대되어야 함
 - 또한 동 제도가 2016년도에 시행되었더라도 개별 기업의 제도 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고용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 인지 기업을 처치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이에 동 분석에 사용된 회귀방정식은 아래의 식 (V-1)과 같으며, 이 중 처치집단(T_i)과 제도시행기간(Y_{2016})의 교차항에 대한 상관계수인 β_1 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주요 관심 추정 모수임

$$y_i = \beta_0 + \beta_1(T_i \cdot Y_{2016}) + \beta_2 T_i + \beta_3 Y_{2016} + X_i' \gamma + \epsilon_i \quad \text{식 (V-1)}$$

T_i : 처치집단으로 제도 인지 여부 가변수(인지=1, 미인지=0)

Y_{2016} : 제도시행기간으로 2016년 가변수(2016년=1, 그 외=0)

X_i : 기타 통제변수 벡터

- 위와 같은 분석은 설문자료의 특성상 응답에 대한 편이(bias)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제Ⅳ장에서 이용한 회귀단절모형(RDD)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동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로 처치집단과 비처치집단을 구분하여 동 제도의 효과성 분석에 더 적합한 분석환경이 조성됨
 - 또한 앞장의 회귀단절모형(RDD)에서는 처치집단을 매출액 기준 기업규모로 구분하여 추정된 고용창출효과에 처치집단이 유사한 다른 제도의 효과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처치집단을 동 제도의 인지 여부로 구분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완화됨

- 다만 위 분석은 제Ⅳ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고용창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워 회귀단절모형(RDD)을 통한 분석에 비해 내생성 문제가 심화된다는 한계가 존재함
 -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에 포함된 변수들로만 분석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통제변수의 설정에 많은 제약이 따름

나. 기초통계량

- 분석대상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으로 개별 기업의 재무정보 및 고용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 일부 변수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분석대상 기간은 2015년과 2016년 2개년도임
- 동 분석에서 처치집단의 기준이 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인지 여부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 501개의 기업 중 동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155개로 약 30.94%에 이름
 - 하지만 155개 기업 중 2017년 상반기에 동 제도를 인지한 26개 기업은 2016년도의 고용의사결정에 동 제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2016년 이전에 동 제도를 인지한 129개의 기업만 처치집단에 포함하여 분석함
 - 처치집단 129개 기업은 전체 표본 501개 중 약 25.75%에 해당됨

〈표 V-5〉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 여부

(단위: 개, %)

	응답	비중
들어본 적이 있다	155	30.94
들어본 적이 없다	346	69.06
합계	501	100

〈표 V-6〉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 여부

(단위: 개, %)

	응답	비중
2016년 이전 인지	129	83.23
2017년 인지	26	16.77
합계	155	100

-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설문조사 대상 전체 기업의 평균적인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도 인지 기업의 경우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4년 53.63명에서 2015년 55.5명, 2016년 57.26명으로 증가함
 - 제도 미인지 기업의 경우에는 2014년 39.29명에서 2015년 41.4명, 2016년 44.15명으로 증가함

〈표 V-7〉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기초통계량(전체기업)

(단위: 개, 명)

제도인지 여부	연도	관측치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인지	2014	129	5	53.63	317.19	0	3,560
	2015	129	5	55.50	318.70	0	3,565
	2016	129	6	57.26	320.36	0	3,572
미인지	2014	372	4	39.29	146.64	0	1,850
	2015	372	5	41.40	162.26	0	2,175
	2016	372	5	44.15	187.44	0	2,550

- 제도 미인지 기업보다 제도 인지 기업의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2016년도 기준 제도 인지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57.26명으로 제도 미인지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인 44.15명보다 더 큼
 - 이러한 특징은 2014년과 2015년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됨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증윗값이 평균보다 작아 표본의 근로자 수는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판단됨
 - 가령 제도 인지 기업의 경우 2016년 기준 근로자 수의 평균은 57.26명인 데 비해 증윗값은 6명으로 평균과 증윗값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이러한 특징은 연도나 제도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6년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에 세제혜택을 차등지원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한 분석에서 세제혜택이 동일한 부분 표본에 대한 분석도 실시함
 -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을 기준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함
 - 한편, 설문자료에도 개별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 하나를 선택한 자료가 존재하는데,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기준이 제도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마다 대기업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이에 실증분석에서는 기업의 응답 자료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을 기준으로 부분 표본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 중소·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한정된 부분 표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다라도 전체 표본에 대한 기초통계량과 유사한 특징이 나타남
 - 제도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함

<표 V-8>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기초통계량(중소·중견기업)

(단위: 개, 명)

제도인지 여부	연도	관측치	증윗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인지	2014	110	5	18.55	53.03	0	370
	2015	110	5	18.81	52.75	0	371
	2016	110	5	18.84	51.35	0	380
미인지	2014	318	3	15.49	41.63	0	526
	2015	318	3	15.90	41.96	0	529
	2016	318	4	16.19	42.55	0	532

- 제도 인지 기업의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제도 미인지 기업보다 높음
- 또한 중위값이 평균보다 작아 부분 표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한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판단됨

<표 V-9>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기초통계량(대기업)

(단위: 개, 명)

제도인지 여부	연도	관측치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인지	2014	19	50	256.68	804.59	0	3,560
	2015	19	48	267.89	805.96	1	3,565
	2016	19	44	279.68	807.85	1	3,572
미인지	2014	54	61	179.44	341.69	0	1,850
	2015	54	64	191.54	383.26	0	2,175
	2016	54	61	208.76	450.34	0	2,550

-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될 기업의 재무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동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의 재무자료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
- 설문조사 대상 전체 기업에 대한 평균 매출액의 경우 제도 인지 기업보다 미인지 기업의 매출액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16년의 경우 제도 미인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2,237억원으로 제도 인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인 1,939억원보다 높음
 - 2014년과 2015년에도 이와 유사한 특징이 관찰됨

<표 V-10> 표본기업의 재무자료 기초통계량(전체기업)

(단위: 개, 만원)

		연도	관측치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인 지	2014	126	1,683,900	18,175,824	57,477,001	55,000	493,850,000
		2015	124	1,521,723	18,126,036	55,845,744	13,984	477,140,000
		2016	126	1,550,000	19,394,447	63,561,222	66,000	584,750,000
	미 인 지	2014	365	1,000,000	19,560,620	95,828,542	3,537	1,600,000,000
		2015	356	1,047,137	21,556,655	105,624,156	3,444	1,600,000,000
		2016	354	1,000,000	22,372,290	112,953,004	3,696	1,700,000,000
영업이익	인 지	2014	117	105,125	1,894,857	7,742,264	201	68,270,000
		2015	118	85,106	2,148,124	8,285,179	400	67,220,000
		2016	126	93,479	1,844,961	7,755,400	983	76,470,000
	미 인 지	2014	328	61,150	1,373,771	8,361,906	109	140,000,000
		2015	345	60,000	1,318,224	7,940,213	147	140,000,000
		2016	361	59,300	1,322,183	7,843,665	780	140,000,000
당기순이익	인 지	2014	117	45,832	1,405,552	6,145,734	300	50,490,000
		2015	119	68,230	1,368,854	5,879,222	100	51,400,000
		2016	128	49,255	1,560,730	6,675,358	263	59,460,000
	미 인 지	2014	333	35,000	739,233	4,468,780	25	78,000,000
		2015	347	37,920	921,848	4,283,463	112	70,000,000
		2016	370	39,988	832,353	4,644,007	45	83,000,000

-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제도 인지 기업이 제도 미인지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의 경우 제도 인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184억원으로 제도 미인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인 132억원보다 높음
 - 같은 해 평균 당기순이익 또한 제도 인지 기업은 156억원으로 제도 미인지 기업의 83억원보다 높음
 - 이와 유사한 특징이 2014년과 2015년에도 나타남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중위값보다 높아 동 지표 또한 꼬리가 긴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분 표본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체 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량과 유사한 특징들이 관찰됨
 - 다만, 전체 표본에서 평균 매출액의 경우 제도 미인지 기업들이 제도 인지 기업들보다 높은데, 이는 대기업 표본에서만 나타나고, 중소·중견기업 표본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남

<표 V-11> 표본기업의 재무자료 기초통계량(중소·중견기업)

(단위: 개, 만원)

		연도	관측치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인지	2014	108	995,000	4,489,262	6,771,953	55,000	26,057,747
		2015	107	1,100,000	4,651,569	7,263,357	13,984	30,925,333
		2016	109	1,000,000	4,835,211	7,892,789	66,000	40,000,000
	미인지	2014	313	690,000	4,012,871	7,903,933	3,537	60,340,000
		2015	303	701,782	3,908,028	7,153,446	3,444	31,346,121
		2016	302	730,000	3,877,681	7,100,331	3,696	30,473,850
영업이익	인지	2014	101	67,786	358,868	745,987	201	5,000,000
		2015	101	62,020	391,329	911,389	400	6,046,714
		2016	108	61,250	391,853	893,663	983	5,000,000
	미인지	2014	280	39,740	253,191	524,396	109	3,120,000
		2015	295	40,000	254,639	556,388	147	3,435,263
		2016	309	44,030	262,471	581,719	780	4,660,000
당기순이익	인지	2014	102	40,000	254,397	538,723	300	3,265,578
		2015	103	44,297	273,352	678,116	100	5,059,294
		2016	110	37,315	297,571	764,234	263	5,513,239
	미인지	2014	286	24,500	170,212	381,302	25	2,290,000
		2015	297	28,270	214,327	521,920	112	5,030,000
		2016	318	27,114	207,742	490,328	45	4,059,400

<표 V-12> 표본기업의 재무자료 기초통계(대기업)

(단위: 개, 만원)

		연도	관측치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인 지	2014	18	53,317,625	100,295,194	125,188,881	24,314,796	493,850,000
		2015	17	50,940,000	102,935,914	121,529,449	31,420,000	477,140,000
		2016	17	51,380,000	112,744,837	142,965,848	30,700,000	584,750,000
	미 인 지	2014	52	63,905,000	113,146,107	233,979,622	9,284,000	1,600,000,000
		2015	53	53,000,000	122,453,521	252,341,503	20,435,400	1,600,000,000
		2016	52	54,483,857	129,783,293	272,436,500	22,830,000	1,700,000,000
영업이익	인 지	2014	16	4,245,000	11,590,789	18,538,672	483,839	68,270,000
		2015	17	4,090,000	12,585,549	19,014,156	157,612	67,220,000
		2016	18	4,065,000	10,563,611	18,529,013	839,753	76,470,000
	미 인 지	2014	48	2,462,037	7,910,490	20,826,040	250,000	140,000,000
		2015	50	2,522,746	7,593,372	19,843,554	360,000	140,000,000
		2016	52	2,443,974	7,619,319	19,621,455	17,977	140,000,000
당기순이익	인 지	2014	15	1,800,000	9,233,407	15,347,677	144,539	50,490,000
		2015	16	2,207,318	8,421,143	14,404,691	215,406	51,400,000
		2016	18	3,017,740	9,280,040	15,991,572	320,000	59,460,000
	미 인 지	2014	47	1,760,423	4,201,788	11,356,383	12,489	78,000,000
		2015	50	2,299,011	5,124,525	10,337,172	74,250	70,000,000
		2016	52	2,188,339	4,652,086	11,714,893	80,000	83,000,000

다. 주요 결과

- 회귀방정식(V-1)에서 종속변수(y_i)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여 분석함
 - 즉, 종속변수는 $\Delta \log(\text{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임
- 회귀방정식(V-1)에서 기타 통제변수(X_i)로는 기업의 고용증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성장률 지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고려함
 - 구체적으로 통제변수는 $\Delta \log(\text{매출액})$ 이나, $\Delta \log(\text{영업이익})$, $\Delta \log(\text{당기순이익})$ 중 하나를 고려함

- 이중차분법(DID) 분석 결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청년고용증대세로 인해 기업들의 청년 고용이 증가하였다는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 <표 V-12>에 나타나듯이 동 제도의 효과를 의미하는 제도 인지 여부와 2016년도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의 상호교차항에 대한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지 않음

- 한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의 증가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고용은 동 제도보다는 기업의 성장률 등과 같은 경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표 V-12>에서 매출액이 1% 증가할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0.130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영업이익이 1% 증가할 경우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0.047%가량 증가하며, 이 추정치 또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당기순이익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3> 설문자료를 이용한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 분석(전체기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인지 여부 × 2016년도 여부	0.0197 (0.0537)	0.0292 (0.0540)	0.0483 (0.0559)	0.0467 (0.0562)
인지 여부 (인지=1, 미인지=0)	-0.0080 (0.0384)	-0.0064 (0.0385)	-0.0259 (0.0403)	-0.0263 (0.0405)
2016년도 여부 (2016년=1, 그 외=0)	-0.0058 (0.0280)	-0.0133 (0.0285)	0.0028 (0.0293)	-0.0043 (0.0297)
Δlog(매출액)		0.1303*** (0.0387)		
Δlog(영업이익)			0.0470*** (0.0153)	
Δlog(당기순이익)				0.0071 (0.0129)
상수	0.0296 (0.0199)	0.0282 (0.0204)	0.0240 (0.0213)	0.0280 (0.0215)
관측치	769	729	693	701
결정계수(R ²)	0.0002	0.0162	0.0145	0.0015

주: 1. 종속변수는 Δlog(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2016년 당시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가 5백만원이었던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더라도 앞에서 실시한 전체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함
 - <표 V-13>을 살펴보면 동 제도의 효과를 의미하는 제도 인지 여부와 2016년도에 대한 가변수의 상호교차항에 대한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청년 고용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대한 탄력성은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각각 통계적으로 1%와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됨

<표 V-14> 설문자료를 이용한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 분석(중소·중견기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인지 여부 × 2016년도 여부	-0.0104 (0.0602)	-0.0069 (0.0602)	0.0075 (0.0624)	0.0092 (0.0624)
인지 여부 (인지=1, 미인지=0)	0.0204 (0.0430)	0.0203 (0.0429)	0.0039 (0.0449)	0.0060 (0.0448)
2016년도 여부 (2016년=1, 그 외=0)	0.0048 (0.0314)	-0.0058 (0.0321)	0.0160 (0.0329)	0.0055 (0.0331)
△log(매출액)		0.1138*** (0.0419)		
△log(영업이익)			0.0408** (0.0167)	
△log(당기순이익)				0.0093 (0.0142)
상수	0.0225 (0.0223)	0.0226 (0.0230)	0.0142 (0.0240)	0.0194 (0.0240)
관측치	632	600	572	583
결정계수(R ²)	0.0005	0.0128	0.0110	0.0010

주: 1. 종속변수는 △log(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2016년 당시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가 2백만원이었던 대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대기업의 청년 고용 창출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표 V-14>를 살펴보면, 기업의 성장을 통제한 모형 (2)~모형 (4)에서 제도 인지 여부와 2016년도에 대한 가변수의 상호교차항에 대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추정됨

<표 V-15> 설문자료를 이용한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 분석(대기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인지 여부 × 2016년도 여부	0.1593 (0.1185)	0.2116* (0.1204)	0.2436* (0.1251)	0.2662** (0.1316)
인지 여부 (인지=1, 미인지=0)	-0.1394 (0.0846)	-0.1406 (0.0861)	-0.1731* (0.0909)	-0.2060** (0.0945)
2016년도 여부 (2016년=1, 그 외=0)	-0.0542 (0.0615)	-0.0474 (0.0608)	-0.0560 (0.0642)	-0.0627 (0.0685)
△log(매출액)		0.2593** (0.1036)		
△log(영업이익)			0.0834** (0.0377)	
△log(당기순이익)				-0.0140 (0.0329)
상수	0.0619 (0.0435)	0.0504 (0.0433)	0.0686 (0.0462)	0.0758 (0.0491)
관측치	137	129	121	118
결정계수(R ²)	0.0208	0.0750	0.0700	0.0440

주: 1. 종속변수는 △log(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모형 (2)~모형 (4)에서 추정된 값의 크기를 해석해보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인지했던 대기업은 2016년 동 제도로 인해 평균적으로 0.57~0.71명가량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고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표 V-14>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인지하고 있던 대기업은 동 제도로 인해 2015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0.21~0.27%가량을 2016년에 추가 고용함
 - <표 V-11>에 의하면 동 제도를 인지하고 있던 기업들의 2015년 평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267.89명임
 - 이에 동 제도로 인해 증가한 평균적인 추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인원은 약 0.57~0.71명임

- 제Ⅳ장의 효과성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노동수요를 촉진하여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동 제도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표본에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다는 결과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대기업에 대한 부분 표본에서는 수치적으로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됨
- 이는 제Ⅳ장의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한 효과성 분석에서 매출액 규모가 높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단절점에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Ⅲ장의 타당성 분석에서 논의한 것처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노동공급곡선이 상대적으로 수직에 가까워 노동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한 인지도

-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 대상 전체 기업 중 약 31%의 기업이 동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대기업 중에서는 약 38%의 기업들이 동 제도를 인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됨
-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동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동 제도를 인지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여 제도가 정착하게 된다면 제Ⅳ장과 앞에서 분석한 고용창출효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표 V-16〉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 여부(기업규모별)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들어본 적이 있다	155	30.94	108	30.86	30	28.30	17	37.78
들어본 적이 없다	346	69.06	242	69.14	76	71.70	28	62.22
합계	501	100	350	100	106	100	45	100

-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들어본 적이 있는 155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인지 정도를 질문한 결과 약 6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동 제도에 대해 들어만 봤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함
 - 특히, 중소기업 중 동 제도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2%로 중견기업 53%, 대기업 47%보다 높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동 제도의 내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7>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 정도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잘 알지 못한다	102	65.81	78	72.22	16	53.33	8	47.06
세액공제 규모는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내용은 잘 모른다	25	16.13	18	16.67	3	10.00	4	23.53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20	12.90	6	5.56	9	30.00	5	29.41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8	5.16	6	5.56	2	6.67	0	0.00
합계	155	100	108	100	30	100	17	100

- 이에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인지하면서 세액공제 규모 등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조사기업 501개 중 53개 기업으로 약 10.58% 수준에 불과하여 아직 동 제도가 기업들의 고용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350개의 중소기업 중 30개인 8.57%의 기업만이 동 제도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06개의 중견기업 중에서는 13.21%인 14개의 기업이 동 제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45개의 대기업 중에서는 9개인 20%의 기업이 동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동 제도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세액공제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53개의 기업 중 38개인 71.7%의 기업이 2016년 고용창출에 대해 적용한 기존의 세액공제 규모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고 새로 확대된 현행 세액공제 규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7년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였더라도 기업들이 이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다면 동 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제약적으로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

〈표 V-18〉 「청년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규모 파악 정도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기존(2015~2016년) 세액공제 규모만 파악하고 있다	38	71.70	20	66.67	10	71.43	8	88.89
현재(2017년) 세액공제 규모만 파악하고 있다	5	9.43	2	6.67	2	14.29	1	11.11
기존과 현재 세액공제 규모 모두 파악하고 있다	10	18.87	8	26.67	2	14.29	0	0.00
합계	53	100	30	100	14	100	9	100

-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인지하고 있는 155개의 기업 중 약 33%인 51개의 기업이 동 제도를 2015년에 인지한 것으로 응답함
- 501개 전체 기업 중에서는 10.2%에 해당하는 수치임
- 동 제도를 2015년에 인지하였더라도 기업의 고용의사결정에 동 제도를 반영한 기업의 비중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표 V-19〉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 시점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2015년 3/4분기	26	16.77	17	15.74	6	20.00	3	17.65
2015년 4/4분기	25	16.13	15	13.89	5	16.67	5	29.41
2016년 상반기	39	25.16	24	22.22	11	36.67	4	23.53
2016년 하반기	39	25.16	30	27.78	6	20.00	3	17.65
2017년 상반기	26	16.77	22	20.37	2	6.67	2	11.76
합계	155	100	108	100	30	100	17	100

- 이에 앞의 제Ⅳ장과 본 장에서 실시한 효과성 분석에서 동 제도가 2015년 청년고용창출에는 사실상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인지한 155개의 기업 중 약 39%인 61개의 기업이 언론 보도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동 제도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법인세 신고 시 세제혜택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동 제도를 인지한 기업도 48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제도 인지 기업 155개 중 약 31%에 해당하는 기업임
 -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동 제도를 인지한 기업들은 동 제도가 없었더라도 고용을 증가시켰을 기업으로 추가적인 고용창출 없이 세제혜택만 받은 기업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동 제도를 인지한 기업의 비중이 높을 경우 제도의 도입과 법인세 신고 시점 간에는 시차가 존재하고 모든 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동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제도가 정착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표 V-20>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 경로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법인세 신고 과정을 통하여	48	30.97	31	28.70	12	40.00	5	29.41
자체 조사를 통하여	30	19.35	21	19.44	7	23.33	2	11.76
기업의 인력 관리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통하여	7	4.52	6	5.56	1	3.33	0	0.00
다른 기업이 제공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1	0.65	0	0.00	1	3.33	0	0.00
언론 보도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61	39.35	44	40.74	9	30.00	8	47.06
기타	8	5.16	6	5.56	0	0.00	2	11.76
합계	155	100	108	100	30	100	17	100

-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알고 있는 155개 기업 중 2017년 동 제도의 세액공제규모의 확대에 대해서 인지한 기업은 79개로 50.9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설문조사 대상 전체 501개 기업 중에서는 15.77%를 차지함
 - 하지만 확대된 세액공제규모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개 기업에 불과함
 - 이는 동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6.45%에 해당하며, 조사 대상 전체 기업 중에서는 2%에 해당됨

<표 V-21> 「청년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규모 확대 파악 정도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확대에 대해 전혀 몰랐다	76	49.03	54	50.00	16	53.33	6	35.29
확대를 인지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 못했다	69	44.52	48	44.44	10	33.33	11	64.71
새로운 공제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10	6.45	6	5.56	4	13.33	0	0.00
합계	155	100	108	100	30	100	17	100

- 기업들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규모 확대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경로를 질문한 결과, 제도 확대를 인지한 79개 기업 중 51.9%인 41개 기업이 언론 보도 등 대중매체를 통해 동 제도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됨

<표 V-22> 「청년고용증대세제」 제도 확대 인지 경로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자체 조사를 통하여	22	27.85	15	27.78	4	28.57	3	27.27
기업의 인력 관리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통하여	6	7.59	5	9.26	1	7.14	0	0.00
다른 기업이 제공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6	7.59	4	7.41	1	7.14	1	9.09
언론 보도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41	51.90	26	48.15	8	57.14	7	63.64
기타	4	5.06	4	7.41	0	0.00	0	0.00
합계	79	100	54	100	14	100	11	100

5. 「청년고용증대세제」가 2016년 채용에 미친 효과

- 「청년고용증대세제」가 해당 기업의 2016년 청년 근로자 채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음
-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인지한 155개 기업 중 92.26%에 해당하는 143개 기업이 동 제도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다더라도 동 제도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우 91.67%, 중견기업 93.33%, 대기업 94.12로 모두 9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23> 2016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영향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확대되었다	12	7.74	9	8.33	2	6.67	1	5.88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143	92.26	99	91.67	28	93.33	16	94.12
합계	155	100	108	100	30	100	17	100

- 앞에서 고용 및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청년고용 증대효과가 나타났으나, <표 V-23>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아 두 결과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임
- 우선 두 분석에서는 기업분류 방법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앞의 이중차분법(DID)을 통한 분석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한 분류를 기업의 응답에 상관없이 동 제도가 적용하는 방식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함

- 하지만 <표 V-23>에서는 기업이 해당 기업의 규모에 대해 응답한 것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제시함
- 앞의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한 분석은 기업의 과거 고용 및 재무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고, <표 V-23>의 결과는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인 응답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음
 - 주관적 응답에는 편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주된 결과로 활용하고, 주관적 응답을 통한 결과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설문조사 대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한 분석과 <표 V-23>의 결과가 모두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미미하다는 유사한 결론을 도출함
- 동 제도의 효과성이 미미하게 나타난 주된 원인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채용단계에서 동 제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동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았다는 143개 기업 중 46.85%의 기업이 채용단계에서 동 제도로 인한 혜택을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V-24> 2016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영향이 미미한 이유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2016년 채용단계에서는 이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39	27.27	30	30.30	6	21.43	3	18.75
2016년 채용단계에서 이 제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67	46.85	50	50.51	10	35.71	7	43.75
세액공제 규모가 작아서	16	11.19	7	7.07	4	14.29	5	31.25
다른 세제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서	21	14.69	12	12.12	8	28.57	1	6.25
합계	143	100	99	100	28	100	16	100

- 한편 143개 기업 중 27.27%의 기업은 2016년 채용단계 이후에 동 제도를 인지하여 「청년고용증대세제」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함
- 2016년 채용단계에서 동 제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의 채용의 사결정에서 세제혜택보다는 매출 증가 등 다른 경영여건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채용의사결정에서 동 제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은 67개 기업 중 28.36%가 세제혜택보다는 다른 경영여건이 채용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 하지만 동 제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공급에 의한 영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 대기업의 경우는 71.43%의 기업들이 세제혜택보다는 다른 경영여건이 채용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등 그 원인이 대부분 노동수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동 제도와 상관없이 청년 인력을 충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동 제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해 14.29%를 차지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됨

<표 V-25> 2016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법인세액이 작아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으므로	8	11.94	6	12.00	2	20.00	0	0.00
채용 시 세제혜택보다는 매출 등 경영여건이 더 중요해서	19	28.36	12	24.00	2	20.00	5	71.43
고용을 확대할 여력이 없어서	12	17.91	7	14.00	4	40.00	1	14.29
2016년의 인사정책은 기존인력 감축이 우선이라서	2	2.99	1	2.00	1	10.00	0	0.00
이 제도와 상관없이 청년 인력을 충원 자체가 어려워서	17	25.37	15	30.00	1	10.00	1	14.29
청년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9	13.43	9	18.00	0	0.00	0	0.00
합계	67	100	50	100	10	100	7	100

- 이러한 결과는 제Ⅲ장 타당성 분석에서 노동공급곡선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직에 가깝다는 가정을 뒷받침함
 - 타당성 분석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동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도 증가시켰을 고용인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사중손실만 커지게 됨
 - 즉, <표 V-25>의 결과는 동 제도의 경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적용할 경우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의미함

6. 「청년고용증대세제」가 2017년 채용에 미친 효과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7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기업부터 세액 공제 규모를 확대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
- 다만 2017년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고용 및 재무정보 등 객관적인 정보가 아직 생성되지 않아 이중차분법(DID) 등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어 기업이 주관적으로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확대에 대한 효과를 살펴봄
 -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에 대한 편이(bias)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의 결과들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함
-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확대에 의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리겠다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동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 중 동 제도로 인하여 2016년의 청년고용을 확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7.74%였음(<표 V-22> 참고)

<표 V-26> 2017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영향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확대될 것이다	36	23.23	25	23.15	9	30.00	2	11.76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119	76.77	83	76.85	21	70.00	15	88.24
합계	155	100	108	100	30	100	17	100

- 하지만 동 제도로 인해 2017년도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3.23%로 증가함
- 동 제도로 인해 2017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36개 기업 중 동 제도의 세액공제 규모 확대에 의해 청년고용을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3.89%임
 - 동 제도를 인지한 155개 기업 중에서는 2017년 제도 확대에 의해 청년고용을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23개 기업의 비중은 14.84%임
 - 한편, 동 제도로 인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는 36개 기업 중 22.22%는 제도 확대에 의한 추가 고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 나머지 13.89%의 기업은 제도 확대가 2017년 청년의 추가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표 V-27> 2017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공제규모 확대의 영향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기존 제도로도 채용을 확대시킬 계획이었으며, 공제규모의 확대에 의해 채용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15	41.67	9	36.00	5	55.56	1	50.00
기존 제도는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제규모의 확대에 의해 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8	22.22	8	32.00	0	0.00	0	0.00
기존 제도에 의해 채용을 확대할 것이나, 공제규모의 확대에 의한 추가적인 채용 확대는 없을 것이다	5	13.89	3	12.00	2	22.22	0	0.00
기존 제도에 의해 채용을 확대하고, 공제규모의 확대에 의한 추가적인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8	22.22	5	20.00	2	22.22	1	50.00
합계	36	100	25	100	9	100	2	100

□ 동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 중 76.77%는 여전히 동 제도가 해당 기업의 청년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동 제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의 채용의사결정 단계에서 동 제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응답한 기업은 동 제도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한 119개 기업 중 70개로 58.82%를 차지함

<표 V-28> 2017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영향이 미미한 이유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2017년 채용단계에서 이 제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70	58.82	54	65.06	8	38.10	8	53.33
세액공제 규모가 작아서	20	16.81	10	12.05	5	23.81	5	33.33
다른 세제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서	23	19.33	14	16.87	8	38.10	1	6.67
모름/무응답	6	5.04	5	6.02	0	0.00	1	6.67
합계	119	100	83	100	21	100	15	100

□ 2016년도와는 달리 동 제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의 응답이 청년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렵다는 것으로 노동공급요인이 큰 것으로 조사됨

○ 동 항목에 대한 응답 비중이 2016년도에는 25.37%로 다른 경영여건이 더 중요하다라는 응답 비중인 28.36%보다 낮았음

○ 하지만 2017년도 채용에 대한 응답에서는 동 항목에 대한 응답 비중이 27.14%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경영여건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24.29%로 감소하였음

**<표 V-29> 2017년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 %)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법인세액이 작아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으므로	7	10.00	6	11.11	1	12.50	0	0.00
채용 시 세제혜택보다는 매출 등 경영여건이 더 중요해서	17	24.29	8	14.81	4	50.00	5	62.50
고용을 확대할 여력이 없어서	13	18.57	10	18.52	1	12.50	2	25.00
2017년의 인사정책은 기존인력 감축이 우선이라서	3	4.29	2	3.70	1	12.50	0	0.00
이 제도와 상관없이 청년 인력을 충원 자체가 어려워서	19	27.14	17	31.48	1	12.50	1	12.50
청년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11	15.71	11	20.37	0	0.00	0	0.00
합계	70	100	54	100	8	100	8	100

- 한편 청년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나 대기업보다 2배 이상 높아 2016년도의 채용의사결정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결
과를 나타냄
 - 이 응답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31.48%이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은
모두 12.5%로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VI.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VI.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1. 종합평가

-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 동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여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당성 분석) 최근 청년에 대한 고용 상황과 다른 조세지출제도와 상호보완성 등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타당성은 확보됨
 - (정부 역할의 타당성) 최근 10% 이상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됨
 - (수단의 적절성) 조세지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수단의 적절성 인정됨
 - 다만, 543억원의 조세지출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유사중복성)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들은 각각의 고유한 목적이 있으며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

- (효과성 분석)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하여 「청년고용증대세제」가 2016년 청년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3,000억원 주변의 기업에서 미약하게나마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분석 대상의 설정에 따라 효과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절대적인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함
 - 동 제도 이외의 다른 제도에 대한 효과를 완전히 통제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도에 의한 효과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또한 동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처치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존재함
 - 이 경우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이 많을 경우 실질적으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동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하지만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동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것이라면 이는 제도 자체 및 설계의 문제라고 볼 수 없음
 - 특히 동 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석대상 기간인 2016년도에는 동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추후 동 제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다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음

- 회귀단절모형(RDD)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에서 동 제도를 통해 청년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고용 및 재무정보를 토대로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동 제도의 인지 여부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회귀단절모형(RDD)의 문제점을 보완함
 - 대기업이 동 제도로 인해 청년고용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는 회귀식의 통제변수 설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강한 증거라고 하기는 어려움
 - 한편 회귀단절모형(RDD)을 통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청년을 추가적으로 고용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제도로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정책 대상자들 또한 동 제도를 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성 분석 결과는 동 제도의 일몰연장 여부 결정의 보조 지표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제도개선방안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기업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기업규모별 차등적인 세제지원 규모나 기업의 급여수준과 관계없는 정액지원 방식은 영세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기업 간의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목표라면 동 제도의 설계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의 정액지원방식에서 급여비례지원방식에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동 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노동수요의 진작이 목적이라면 세액공제 규모를 급여 수준과 연계시키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함
 - 동 제도와 유사한 목적의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는 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 세제지원함

- 또한 청년고용 시 기업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일회성 세액공제로는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어 다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세액공제 규모의 확대는 실질적인 고용창출 없이 사중손실만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다년지원의 도입과 함께 세액공제 규모의 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문 헌

- 강창희·유경준, 「고용보험의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지원사업이 기업의 훈련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15(3), 2009.
- 김재진·오종현·강성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5년도 조세지출 심층평가 II』,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9, pp. 519~692.
- 대한민국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 9.
- 박상곤, 「관광정책 평가방법 및 사례발표(여행바우처 사업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 심충진·이준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2(2), 한국세무학회, 2011. 6, pp. 235~454.
- 우석진·김인유·정지운,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재정학연구』, 7(1), 2014, pp. 29~51.
- 윤성만·박진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 연구』, 15(2),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8, pp. 161~187.
- 전병목,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의 역할」, 『조세·재정 Brief』, 한국조세연구원, 2010. 5.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5년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 결과』, 2015. 5.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 결과』, 2017. 6.
- 현보훈·염명배,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 Buddelmeyer, Hielke, and Emmanuel Skoufias, “An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on PROGRESA,”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386, IZA Discussion Paper No. 827, 2003.

부 록



부록 I.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부표 I -1〉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기업종류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혜 특혜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비중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	(B)	(C)		
전체	2,165	100	27,543,033	100	12,722	434,036	100	200	42,086	100	19	9,697	0.153			
중소기업	1,732	80.000	2,968,861	10.779	1,714	158,239	36.458	91	25,137	59.726	15	15,885	0.847			
중견기업	103	4.758	1,753,077	6.365	17,020	52,662	12.133	511	6,101	14.497	59	11,586	0.348			
그외기업	330	15.242	22,821,095	82.856	69,155	223,134	51.409	676	10,848	25.776	33	4,862	0.048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1-2〉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업태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비중 (L)	비중 (M)	비중 (N)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전체	2,165	100	27,543,033	100	12,722	434,036	100	200	42,086	100	19	9.697	0.153		
농림어업	2	0.092	1,196	0.004	598	19	0.004	9	19	0.044	9	99.893	1.559		
광업	2	0.092	1,682	0.006	841	88	0.020	44	10	0.024	5	11.279	0.592		
제조업	717	33.118	4,763,260	17.294	6,643	158,955	36.623	222	13,853	32.915	19	8.715	0.291		
전기가스수도업	3	0.139	9,121,885	33.119	3,040,628	50,951	11.739	16,984	1,016	2.414	339	1.994	0.011		
건설업	135	6.236	743,901	2.701	5,510	9,726	2.241	72	1,762	4.187	13	18.119	0.237		
도매업	462	21.339	1,934,096	7.022	4,186	28,462	6.557	62	6,559	15.584	14	23.044	0.339		
소매업	111	5.127	1,042,460	3.785	9,392	6,984	1.609	63	3,366	7.998	30	48.196	0.323		
음식숙박업	26	1.201	308,784	1.121	11,876	3,028	0.698	116	2,491	5.919	96	82.277	0.807		
운수창고통신업	74	3.418	332,041	1.206	4,487	3,612	0.832	49	1,469	3.490	20	40.669	0.442		
금융보험업	112	5.173	7,166,864	26.021	63,990	75,735	17.449	676	1,572	3.735	14	2.076	0.022		
부동산업	19	0.878	74,902	0.272	3,942	378	0.087	20	170	0.403	9	44.884	0.226		
서비스업	488	22.540	2,011,467	7.303	4,122	95,284	21.953	195	9,386	22.301	19	9.850	0.467		
보건업	10	0.462	38,201	0.139	3,820	766	0.176	77	401	0.953	40	52.370	1.050		
기타	4	0.185	2,295	0.008	574	48	0.011	12	13	0.031	3	27.054	0.566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I -3>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엄태 및 기업종류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실효 세율 감소
	개수	비중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비중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	(B)	(C)	(D)	(E)	(F)	(G)	(H)	(I)	(J)	(K)	(L=I/F*100)	(M=I/C*100)		
농림어업	2	100.0	1,196	100.0	598	19	100.0	9	100.0	9	100.0	99.893	1.559	
중소기업	-	-	-	-	-	-	-	-	-	-	-	-	-	
중견기업	-	-	-	-	-	-	-	-	-	-	-	-	-	
그외기업	2	100.0	1,196	100.0	598	19	100.0	9	100.0	9	100.0	99.893	1.559	
광업	2	100.0	1,682	100.0	841	88	100.0	44	100.0	44	100.0	11.279	0.592	
중소기업	2	100.0	1,682	100.0	841	88	100.0	44	100.0	44	100.0	11.279	0.592	
중견기업	-	-	-	-	-	-	-	-	-	-	-	-	-	
그외기업	-	-	-	-	-	-	-	-	-	-	-	-	-	
제조업	717	100.0	4,763,260	100.0	6,643	158,955	100.0	222	100.0	222	100.0	8.715	0.291	
중소기업	648	90.4	1,699,667	35.7	2,623	97,218	61.2	150	76.9	10,651	16	10.956	0.627	
중견기업	43	6.0	746,818	15.7	17,368	21,676	13.6	504	16.0	2,220	52	10.243	0.297	
그외기업	26	3.6	2,316,774	48.6	89,107	40,061	25.2	1,541	7.1	981	38	2.449	0.042	
전기가스수도업	3	100.0	9,121,885	100.0	3,040,628	50,951	100.0	16,984	100.0	1,016	339	1.994	0.011	
중소기업	-	-	-	-	-	-	-	-	-	-	-	-	-	
중견기업	-	-	-	-	-	-	-	-	-	-	-	-	-	
그외기업	3	100.0	9,121,885	100.0	3,040,628	50,951	100.0	16,984	100.0	1,016	339	1.994	0.011	

[계속]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업태 및 기업종류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태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L=I/F*100)	(M=J/C*100)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건설업	135	100.0	743,901	100.0	5,510	9,726	100.0	72	1,762	100.0	13	18.119	0.237			
	120	88.9	167,133	22.5	1,393	5,524	56.8	46	1,122	63.7	9	20.313	0.671			
	5	3.7	83,285	11.2	16,657	231	2.4	46	190	10.8	38	82.170	0.228			
도매업	10	7.4	493,483	66.3	49,348	3,971	40.8	397	451	25.6	45	11.347	0.091			
	462	100.0	1,934,096	100.0	4,186	28,462	100.0	62	6,559	100.0	14	23.044	0.339			
	419	90.7	475,243	24.6	1,134	11,139	39.1	27	4,472	68.2	11	40.142	0.941			
소매업	16	3.5	336,243	17.4	21,015	2,340	8.2	146	1,444	22.0	90	61.703	0.429			
	27	5.8	1,122,609	58.0	41,578	14,982	52.6	555	643	9.8	24	4.295	0.057			
	111	100.0	1,042,460	100.0	9,392	6,984	100.0	63	3,366	100.0	30	48.196	0.323			
음식숙박업	90	81.1	97,637	9.4	1,085	3,779	54.1	42	2,218	65.9	25	58.682	2.271			
	2	1.8	3,342	0.3	1,671	95	1.4	48	59	1.8	30	62.250	1.776			
	19	17.1	941,481	90.3	49,552	3,109	44.5	164	1,089	32.4	57	35.020	0.116			
중소기업	26	100.0	308,784	100.0	11,876	3,028	100.0	116	2,491	100.0	96	82.277	0.807			
	16	61.5	19,738	6.4	1,234	577	19.1	36	318	12.8	20	55.052	1.610			
	3	11.5	12,275	4.0	4,092	190	6.3	63	126	5.1	42	66.339	1.029			
그외기업	7	26.9	276,771	89.6	39,539	2,260	74.6	323	2,047	82.2	292	90.574	0.740			

[계속]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업태 및 기업종류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태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운수창고통신업	74	100.0	332,041	100.0	4,487	3,612	100.0	49	1,469	100.0	20	40.669	0.442			
중소기업	54	73.0	41,541	12.5	769	1,306	36.2	24	567	38.6	10	43.393	1.364			
중견기업	9	12.2	107,063	32.2	11,896	1,253	34.7	139	397	27.0	44	31.674	0.371			
그외기업	11	14.9	183,437	55.2	16,676	1,053	29.2	96	506	34.4	46	47.990	0.276			
금융보험업	112	100.0	7,166,864	100.0	63,990	75,735	100.0	676	1,572	100.0	14	2.076	0.022			
중소기업	1	0.9	3,899	0.1	3,899	294	0.4	294	73	4.6	73	24.628	1.860			
중견기업	-	-	-	-	-	-	-	-	-	-	-	-	-			
그외기업	111	99.1	7,162,965	99.9	64,531	75,441	99.6	680	1,500	95.4	14	1.988	0.021			
부동산업	19	100.0	74,902	100.0	3,942	378	100.0	20	170	100.0	9	44.884	0.226			
중소기업	7	36.8	7,449	9.9	1,064	210	55.6	30	67	39.3	10	31.728	0.895			
중견기업	1	5.3	3,411	4.6	3,411	12	3.0	12	9	5.2	9	75.998	0.257			
그외기업	11	57.9	64,043	85.5	5,822	156	41.3	14	94	55.5	9	60.291	0.147			
서비스업	488	100.0	2,011,467	100.0	4,122	95,284	100.0	195	9,386	100.0	19	9.850	0.467			
중소기업	365	74.8	435,173	21.6	1,192	37,500	39.4	103	5,372	57.2	15	14.326	1.234			
중견기업	24	4.9	460,640	22.9	19,193	26,866	28.2	1,119	1,657	17.7	69	6.167	0.360			
그외기업	99	20.3	1,115,655	55.5	11,269	30,918	32.4	312	2,357	25.1	24	7.623	0.211			

[계속]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업태 및 기업종류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집단합계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금액 (O)	비중 (P)			
(A)	(B)	(C)	(D)	(E)	(F)	(G)	(H)	(I)	(J)	(K)	(L=I/F*100)	(M=I/C*100)				
보건업	10	100.0	38,201	100.0	3,820	766	100.0	77	401	100.0	40	52.370	1.050			
중소기업	7	70.0	19,411	50.8	2,773	594	77.5	85	259	64.7	37	43.666	1.336			
중견기업	-	-	-	-	-	-	-	-	-	-	-	-	-			
그외기업	3	30.0	18,790	49.2	6,263	172	22.5	57	142	35.3	47	82.419	0.754			
기타	4	100.0	2,295	100.0	574	48	100.0	12	13	100.0	3	27.054	0.566			
중소기업	3	75.0	288	12.6	96	9	18.0	3	9	66.6	3	100.000	3.000			
중견기업	-	-	-	-	-	-	-	-	-	-	-	-	-			
그외기업	1	25.0	2,006	87.4	2,006	39	82.0	39	4	33.4	4	11.028	0.216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1-4〉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지역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L=F*100) (M=C*100)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전체	2,165	100	27,543,033	100	12,722	434,036	100	200	42,086	100	19	9.697	0.153			
서울특별시	988	45.635	12,033,850	43.691	12,180	152,917	35.231	155	20,419	48.516	21	13.353	0.170			
부산광역시	67	3.095	875,800	3.180	13,072	67,307	15.507	1,005	1,440	3.421	21	2.139	0.164			
대구광역시	45	2.079	206,973	0.751	4,599	12,938	2.981	288	925	2.198	21	7.150	0.447			
인천광역시	106	4.896	443,884	1.612	4,188	13,053	3.007	123	2,107	5.007	20	16.143	0.475			
광주광역시	14	0.647	18,160	0.066	1,297	392	0.090	28	139	0.330	10	35.410	0.764			
대전광역시	33	1.524	515,049	1.870	15,608	2,641	0.609	80	621	1.475	19	23.495	0.120			
울산광역시	18	0.831	25,395	0.092	1,411	792	0.182	44	172	0.409	10	21.748	0.678			
경기도	624	28.822	2,062,649	7.489	3,306	86,939	20.030	139	10,427	24.774	17	11.993	0.505			
강원도	20	0.924	76,179	0.277	3,809	3,114	0.718	156	976	2.319	49	31.334	1.281			
충청북도	41	1.894	115,199	0.418	2,810	4,753	1.095	116	656	1.558	16	13.791	0.569			
충청남도	55	2.540	804,117	2.919	14,620	6,818	1.571	124	750	1.781	14	10.995	0.093			
전라북도	24	1.109	31,683	0.115	1,320	614	0.141	26	180	0.428	8	29.321	0.568			
전라남도	26	1.201	5,730,346	20.805	220,398	55,319	12.745	2,128	1,152	2.737	44	2.082	0.020			
경상북도	40	1.848	3,767,431	13.678	94,186	6,547	1.508	164	895	2.127	22	13.672	0.024			
경상남도	50	2.309	712,389	2.586	14,248	16,912	3.896	338	592	1.407	12	3.502	0.083			
제주특별자치도	9	0.416	53,906	0.196	5,990	587	0.135	65	434	1.031	48	73.986	0.805			
세종특별자치시	5	0.231	70,022	0.254	14,004	2,393	0.551	479	203	0.483	41	8.493	0.290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1-5〉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지역 및 기업종류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비중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	(B)	(C)	(D)	(E)	(F)	(G)	(H)	(I)	(J)	(K)	(L=F*100)	(M=I/C*100)				
서울특별시	988	100.0	12,033,850	100.0	12,180	152,917	100.0	155	20,419	100.0	21	13.353	0.170			
중소기업	774	78.3	1,311,373	10.9	1,694	56,028	36.6	72	12,114	59.3	16	21.621	0.924			
중견기업	50	5.1	970,314	8.1	19,406	25,339	16.6	507	2,970	14.5	59	11.721	0.306			
그외기업	164	16.6	9,752,164	81.0	59,464	71,550	46.8	436	5,335	26.1	33	7.456	0.055			
부산광역시	67	100.0	875,800	100.0	13,072	67,307	100.0	1,005	1,440	100.0	21	2.139	0.164			
중소기업	54	80.6	83,777	9.6	1,551	5,650	8.4	105	781	54.2	14	13.819	0.932			
중견기업	2	3.0	19,256	2.2	9,628	376	0.6	188	330	22.9	165	87.803	1.714			
그외기업	11	16.4	772,768	88.2	70,252	61,281	91.0	5,571	329	22.9	30	0.537	0.043			
대구광역시	45	100.0	206,973	100.0	4,599	12,938	100.0	288	925	100.0	21	7.150	0.447			
중소기업	31	68.9	45,651	22.1	1,473	2,519	19.5	81	562	60.8	18	22.320	1.232			
중견기업	3	6.7	23,575	11.4	7,858	174	1.3	58	174	18.8	58	100.000	0.739			
그외기업	11	24.4	137,747	66.6	12,522	10,245	79.2	931	189	20.4	17	1.842	0.137			
인천광역시	106	100.0	443,884	100.0	4,188	13,053	100.0	123	2,107	100.0	20	16.143	0.475			
중소기업	88	83.0	202,728	45.7	2,304	10,747	82.3	122	1,503	71.3	17	13.981	0.741			
중견기업	3	2.8	58,203	13.1	19,401	1,369	10.5	456	300	14.2	100	21.916	0.515			
그외기업	15	14.2	182,953	41.2	12,197	936	7.2	62	304	14.4	20	32.514	0.166			

[계속]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지역 및 기업종류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태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비중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I)	(J)						
(A)	(B)	(C)	(D)	(E)	(F)	(G)	(H)	(I)	(J)	(K)	(L=I/F*100)	(M=J/C*100)				
광주광역시	14	100.0	18,160	100.0	1,297	392	100.0	28	139	100.0	10	35.410	0.764			
중소기업	7	50.0	4,168	23.0	595	327	83.3	47	92	66.5	13	28.243	2.213			
중견기업	1	7.1	5,274	29.0	5,274	39	10.0	39	20	14.7	20	52.106	0.387			
그외기업	6	42.9	8,718	48.0	1,453	26	6.7	4	26	18.8	4	99.695	0.300			
대전광역시	33	100.0	515,049	100.0	15,608	2,641	100.0	80	621	100.0	19	23.495	0.120			
중소기업	26	78.8	28,381	5.5	1,092	1,544	58.4	59	405	65.3	16	26.246	1.427			
중견기업	2	6.1	88,070	17.1	44,035	1,061	40.2	531	179	28.9	90	16.878	0.203			
그외기업	5	15.2	398,598	77.4	79,720	36	1.4	7	36	5.8	7	99.780	0.009			
울산광역시	18	100.0	25,395	100.0	1,411	792	100.0	44	172	100.0	10	21.748	0.678			
중소기업	13	72.2	13,463	53.0	1,036	778	98.3	60	158	92.1	12	20.377	1.177			
중견기업	-	-	-	-	-	-	-	-	-	-	-	-	-			
그외기업	5	27.8	11,932	47.0	2,386	14	1.7	3	14	7.9	3	99.129	0.114			

[계속]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지역 및 기업종류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별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경기도	624	100.0	2,062,649	100.0	3,306	86,939	100.0	139	10,427	100.0	17	11,993	0.505			
중소기업	544	87.2	922,696	44.7	1,696	60,224	69.3	111	6,913	66.3	13	11,478	0.749			
중견기업	31	5.0	497,448	24.1	16,047	23,070	26.5	744	1,626	15.6	52	7,046	0.327			
그외기업	49	7.9	642,504	31.1	13,112	3,645	4.2	74	1,888	18.1	39	51,806	0.294			
강원도	20	100.0	76,179	100.0	3,809	3,114	100.0	156	976	100.0	49	31,334	1.281			
중소기업	13	65.0	32,238	42.3	2,480	2,219	71.3	171	181	18.6	14	8,166	0.562			
중견기업	1	5.0	2,562	3.4	2,562	236	7.6	236	146	14.9	146	61,628	5.682			
그외기업	6	30.0	41,379	54.3	6,897	659	21.2	110	649	66.5	108	98,511	1.568			
충청북도	41	100.0	115,199	100.0	2,810	4,753	100.0	116	656	100.0	16	13,791	0.569			
중소기업	34	82.9	75,222	65.3	2,212	4,594	96.6	135	598	91.2	18	13,015	0.795			
중견기업	1	2.4	38,664	33.6	38,664	135	2.8	135	33	5.1	33	24,674	0.086			
그외기업	6	14.6	1,313	1.1	219	24	0.5	4	24	3.7	4	99,509	1.854			
충청남도	55	100.0	804,117	100.0	14,620	6,818	100.0	124	750	100.0	14	10,995	0.093			
중소기업	43	78.2	75,964	9.4	1,767	4,377	64.2	102	600	80.0	14	13,706	0.790			
중견기업	2	3.6	19,977	2.5	9,989	36	0.5	18	22	3.0	11	61,530	0.112			
그외기업	10	18.2	708,175	88.1	70,817	2,404	35.3	240	127	17.0	13	5,296	0.018			

[계속]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지역 및 기업종류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비중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	(B)	(C)	(D)	(E)	(F)	(G)	(H)	(I)	(J)	(K)	(L=I/F*100)	(M=I/C*100)				
전라북도	24	100.0	31,683	100.0	1,320	614	100.0	26	180	100.0	8	29.321	0.568			
중소기업	18	75.0	9,738	30.7	541	599	97.6	33	165	91.9	9	27.598	1.698			
중견기업	-	-	-	-	-	-	-	-	-	-	-	-	-			
그외기업	6	25.0	21,945	69.3	3,658	15	2.4	2	15	8.1	2	99.188	0.067			
전라남도	26	100.0	5,730,346	100.0	220,398	55,319	100.0	2,128	1,152	100.0	44	2.082	0.020			
중소기업	18	69.2	26,341	0.5	1,463	1,542	2.8	86	196	17.0	11	12.686	0.742			
중견기업	1	3.8	1,323	0.0	1,323	48	0.1	48	34	3.0	34	71.505	2.584			
그외기업	7	26.9	5,702,682	99.5	814,669	53,730	97.1	7,676	922	80.1	132	1.716	0.016			
경상북도	40	100.0	3,767,431	100.0	94,186	6,547	100.0	164	895	100.0	22	13.672	0.024			
중소기업	26	65.0	58,906	1.6	2,266	2,342	35.8	90	324	36.1	12	13.815	0.549			
중견기업	5	12.5	25,126	0.7	5,025	548	8.4	110	37	4.1	7	6.686	0.146			
그외기업	9	22.5	3,683,399	97.8	409,267	3,657	55.9	406	535	59.8	59	14.628	0.015			
경상남도	50	100.0	712,389	100.0	14,248	16,912	100.0	338	592	100.0	12	3.502	0.083			
중소기업	35	70.0	64,542	9.1	1,844	3,722	22.0	106	450	75.9	13	12.076	0.696			
중견기업	-	-	-	-	-	-	-	-	-	-	-	-	-			
그외기업	15	30.0	647,847	90.9	43,190	13,190	78.0	879	143	24.1	10	1.083	0.022			

[계속]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지역 및 기업종류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태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집단합계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금액 (L)	비중 (M)			
제주특별자치도	9	100.0	53,906	100.0	5,990	587	100.0	65	434	100.0	48	73.986	0.805			
중소기업	4	44.4	1,106	2.1	277	33	5.6	8	24	5.6	6	75.013	2.213			
중견기업	1	11.1	3,284	6.1	3,284	230	39.2	230	230	53.0	230	100.000	7.003			
그외기업	4	44.4	49,515	91.9	12,379	324	55.2	81	180	41.4	45	55.412	0.363			
세종특별자치시	5	100.0	70,022	100.0	14,004	2,393	100.0	479	203	100.0	41	8.493	0.290			
중소기업	4	80.0	12,566	17.9	3,141	995	41.6	249	71	35.1	18	7.157	0.567			
중견기업	-	-	-	-	-	-	-	-	-	-	-	-	-			
그외기업	1	20.0	57,456	82.1	57,456	1,398	58.4	1,398	132	64.9	132	9.444	0.230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I-6〉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자산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집단합계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금액 (L)	비중 (M)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전체	2,165	100	27,543,033	100	12,722	434,036	100	200	42,086	100	19	9,697	0.153			
5억원 이하	165	7.621	13,552	0.049	82	484	0.111	3	280	0.666	2	57.889	2.067			
5억원~10억원	193	8.915	37,214	0.135	193	1,699	0.392	9	660	1.568	3	38.841	1.774			
10~20억원	269	12.425	95,566	0.347	355	4,954	1.141	18	1,982	4.709	7	40.006	2.074			
20~50억원	392	18.106	243,104	0.883	620	12,915	2.976	33	4,052	9.628	10	31.374	1.667			
50~100억원	325	15.012	422,176	1.533	1,299	19,013	4.381	59	5,164	12.271	16	27.163	1.223			
100~200억원	240	11.085	512,013	1.859	2,133	24,621	5.673	103	5,279	12.543	22	21.440	1.031			
200~500억원	253	11.686	1,127,782	4.095	4,458	44,952	10.357	178	6,949	16.512	27	15.459	0.616			
500~1,000억원	119	5.497	943,568	3.426	7,929	34,098	7.856	287	4,639	11.022	39	13.604	0.492			
1,000~5,000억원	152	7.021	3,104,995	11.273	20,428	76,723	17.677	505	7,604	18.068	50	9.911	0.245			
5,000억원 초과	57	2.633	21,043,063	76.401	369,177	214,576	49.437	3,764	5,477	13.013	96	2.552	0.026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1-7〉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자본금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집단합계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금액 (L)	비중 (M)			
(A)	(B)	(C)	(D)	(E)	(F)	(G)	(H)	(I)	(J)	(K)	(L)	(M)	(M=I/C*100)			
전체	2,165	100	27,543,033	100	12,722	434,036	100	200	42,086	100	19	9,697	0.153			
5,000만원 이하	31	1.432	7,214	0.026	233	277	0.064	9	76	0.181	2	27.565	1.057			
5,000만원~1억원	46	2.125	1,917	0.007	42	66	0.015	1	47	0.112	1	70.882	2.455			
1~5억원	343	15.843	53,614	0.195	156	2,175	0.501	6	1,170	2.780	3	53.793	2.182			
5~10억원	256	11.824	91,207	0.331	356	5,320	1.226	21	2,090	4.966	8	39.291	2.292			
10~50억원	698	32.240	625,979	2.273	897	29,760	6.857	43	9,257	21.996	13	31.106	1.479			
50~100억원	282	13.025	552,444	2.006	1,959	26,198	6.036	93	5,461	12.976	19	20.846	0.989			
100~500억원	339	15.658	1,896,925	6.887	5,596	64,128	14.775	189	10,626	25.247	31	16.569	0.560			
500~1,000억원	54	2.494	946,235	3.435	17,523	27,289	6.287	505	2,955	7.020	55	10.827	0.312			
1,000~5,000억원	83	3.834	3,402,402	12.353	40,993	68,306	15.737	823	7,259	17.247	87	10.627	0.213			
5,000억원 초과	33	1.524	19,965,096	72.487	605,003	210,517	48.502	6,379	3,146	7.474	95	1.494	0.016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1-8〉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매출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비중 (J)	비중 (L=I/F*100)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전체	2,165	100	27,543,033	100	12,722	434,036	100	200	42,086	100	19	9.697	0.153	
3억원 이하	34	1.570	1,406	0.005	41	65	0.015	2	37	0.087	1	56.754	2.606	
3~5억원	25	1.155	1,366	0.005	55	48	0.011	2	20	0.046	1	40.262	1.428	
5~10억원	90	4.157	10,160	0.037	113	516	0.119	6	196	0.466	2	37.969	1.929	
10~20억원	171	7.898	35,858	0.130	210	1,531	0.353	9	570	1.354	3	37.230	1.590	
20~50억원	414	19.122	166,728	0.605	403	8,980	2.069	22	2,495	5.927	6	27.780	1.496	
5~100억원	356	16.443	289,682	1.052	814	18,074	4.164	51	3,492	8.298	10	19.323	1.206	
100~200억원	378	17.460	533,224	1.936	1,411	23,857	5.497	63	6,099	14.492	16	25.565	1.144	
200~300억원	190	8.776	431,635	1.567	2,272	21,825	5.028	115	4,121	9.792	22	18.883	0.955	
300~500억원	176	8.129	862,255	3.131	4,899	27,971	6.444	159	4,672	11.102	27	16.704	0.542	
500~1,000억원	142	6.559	1,026,692	3.728	7,230	34,556	7.962	243	5,696	13.535	40	16.484	0.555	
1,000~5,000억원	130	6.005	3,022,596	10.974	23,251	85,100	19.607	655	7,832	18.609	60	9.203	0.259	
5,000억원 초과	58	2.679	21,160,963	76.829	364,844	211,511	48.731	3,647	6,854	16.286	118	3.241	0.032	
값없음	1	0.046	470	0.002	470	2	0.000	2	2	0.005	2	100.000	0.425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I -9〉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수입금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태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비중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	(B)	(C)	(D)	(E)	(F)	(G)	(H)	(I)	(J)	(K)	(L=F*100)	(M=I/C*100)			
전체	2,165	100	27,543,033	100	12,722	434,036	100	200	42,086	100	19	9.697	0.153		
1,000만원 이하	14	0.647	61	0.000	4	2	0.000	0	2	0.004	0	93.192	2.691		
1,000~5,000만원	83	3.834	2,663	0.010	32	82	0.019	1	64	0.152	1	78.351	2.405		
5,000~1억원	117	5.404	8,052	0.029	69	291	0.067	2	158	0.375	1	54.274	1.959		
1~2억원	232	10.716	34,024	0.124	147	1,113	0.256	5	615	1.461	3	55.268	1.808		
2~5억원	451	20.831	148,300	0.538	329	7,907	1.822	18	3,373	8.015	7	42.663	2.275		
5~10억원	340	15.704	237,976	0.864	700	14,036	3.234	41	4,671	11.099	14	33.281	1.963		
10~20억원	332	15.335	461,459	1.675	1,390	24,017	5.533	72	6,077	14.438	18	25.302	1.317		
20~50억원	279	12.887	858,278	3.116	3,076	42,209	9.725	151	7,221	17.157	26	17.107	0.841		
50~100억원	120	5.543	791,706	2.874	6,598	31,323	7.217	261	5,715	13.580	48	18.246	0.722		
100~200억원	81	3.741	1,110,532	4.032	13,710	30,681	7.069	379	3,505	8.329	43	11.425	0.316		
200~500억원	62	2.864	1,909,677	6.933	30,801	54,872	12.642	885	5,313	12.625	86	9.683	0.278		
500~1,000억원	23	1.062	1,616,816	5.870	70,296	27,878	6.423	1,212	2,057	4.888	89	7.380	0.127		
1,000~5,000억원	23	1.062	4,761,999	17.289	207,043	78,255	18.030	3,402	1,990	4.729	87	2.543	0.042		
5,000억원 초과	8	0.370	15,601,490	56.644	1,950,186	121,371	27.963	15,171	1,325	3.147	166	1.091	0.008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I -10〉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과세표준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M/F*C*100)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전체	2,165	100	27,543,033	100	12,722	434,036	100	200	42,086	100	19	9.697	0.153		
1,000만원 이하	14	0.647	61	0.000	4	2	0.000	0	2	0.004	0	93.192	2.691		
1,000~5,000만원	95	4.388	3,029	0.011	32	93	0.021	1	71	0.169	1	76.727	2.346		
5,000~1억원	115	5.312	8,386	0.030	73	301	0.069	3	166	0.395	1	55.318	1.984		
1~2억원	228	10.531	34,315	0.125	151	1,121	0.258	5	616	1.464	3	54.963	1.796		
2~5억원	453	20.924	150,537	0.547	332	8,072	1.860	18	3,456	8.212	8	42.818	2.296		
5~10억원	342	15.797	242,534	0.881	709	14,280	3.290	42	4,799	11.403	14	33.608	1.979		
10~20억원	328	15.150	460,905	1.673	1,405	23,727	5.467	72	5,952	14.143	18	25.087	1.291		
20~50억원	281	12.979	876,120	3.181	3,118	44,012	10.140	157	7,318	17.388	26	16.627	0.835		
50~100억원	116	5.358	778,285	2.826	6,709	30,191	6.956	260	5,661	13.452	49	18.752	0.727		
100~200억원	82	3.788	1,161,359	4.217	14,163	30,145	6.945	368	3,624	8.610	44	12.021	0.312		
200~500억원	57	2.633	1,847,197	6.707	32,407	54,588	12.577	958	5,048	11.995	89	9.248	0.273		
500~1,000억원	23	1.062	1,616,816	5.870	70,296	27,878	6.423	1,212	2,057	4.888	89	7.380	0.127		
1,000~5,000억원	23	1.062	4,761,999	17.289	207,043	78,255	18.030	3,402	1,990	4.729	87	2.543	0.042		
5,000억원 초과	8	0.370	15,601,490	56.644	1,950,186	121,371	27.963	15,171	1,325	3.147	166	1.091	0.008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I-11〉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총부담세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전체	2,165	100	27,543,033	100	12,722	434,036	100	200	42,086	100	19	9.697	0.153			
0원	80	3.695	82,254	0.299	1,028	14,967	3.448	187	1,601	3.804	20	10.696	1.946			
0원~1,000만원	337	15.566	37,743	0.137	112	3,132	0.722	9	720	1.711	2	22.984	1.908			
1,000~2,000만원	243	11.224	55,141	0.200	227	3,206	0.739	13	1,237	2.940	5	38.596	2.244			
2,000~5,000만원	315	14.550	126,084	0.458	400	8,123	1.872	26	3,008	7.147	10	37.025	2.386			
5,000~1억원	238	10.993	175,615	0.638	738	11,786	2.715	50	3,634	8.635	15	30.833	2.069			
1~2억원	260	12.009	318,519	1.156	1,225	18,442	4.249	71	4,103	9.748	16	22.245	1.288			
2~5억원	297	13.718	680,811	2.472	2,292	33,530	7.725	113	6,460	15.349	22	19.266	0.949			
5~10억원	134	6.189	643,576	2.337	4,803	32,243	7.429	241	5,451	12.952	41	16.906	0.847			
10~20억원	98	4.527	842,408	3.059	8,596	29,675	6.837	303	3,943	9.369	40	13.288	0.468			
20~50억원	74	3.418	1,318,418	4.787	17,816	32,562	7.502	440	2,993	7.110	40	9.190	0.227			
50~100억원	36	1.663	1,401,669	5.089	38,935	39,444	9.088	1,096	3,692	8.773	103	9.361	0.263			
100~200억원	20	0.924	1,306,923	4.745	65,346	6,632	1.528	332	1,799	4.275	90	27.130	0.138			
200~500억원	19	0.878	2,844,843	10.329	149,729	47,049	10.840	2,476	1,720	4.088	91	3.657	0.060			
500~1,000억원	7	0.323	2,608,471	9.471	372,639	74,244	17.105	10,606	427	1.013	61	0.574	0.016			
1,000~5,000억원	4	0.185	2,681,682	9.736	670,420	28,056	6.464	7,014	270	0.640	67	0.961	0.010			
5,000억원 초과	3	0.139	12,418,876	45.089	4,139,625	50,943	11.737	16,981	1,029	2.445	343	2.020	0.008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I -12〉 2015년 결산법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종업원수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행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집단합계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금액 (L)	비중 (M)			
전체	2,165	100	27,543,033	100	12,722	434,036	100	200	42,086	100	19	9.697	0.153			
5인 미만	100	4.619	469,806	1.706	4,698	11,770	2.712	118	1,276	3.031	13	10.839	0.272			
5인~9인	223	10.300	114,796	0.417	515	2,639	0.608	12	752	1.786	3	28.483	0.655			
10인~19인	329	15.196	224,027	0.813	681	7,508	1.730	23	2,165	5.145	7	28.838	0.966			
20인~49인	480	22.171	801,649	2.911	1,670	29,178	6.723	61	6,314	15.002	13	21.639	0.788			
50인~99인	280	12.933	1,181,511	4.290	4,220	36,218	8.345	129	5,810	13.806	21	16.042	0.492			
100인~199인	181	8.360	2,043,955	7.421	11,293	48,848	11.254	270	6,076	14.438	34	12.439	0.297			
200인~299인	62	2.864	1,291,246	4.688	20,827	75,184	17.322	1,213	2,859	6.793	46	3.803	0.221			
300인~499인	47	2.171	5,067,213	18.397	107,813	46,725	10.765	994	2,609	6.198	56	5.583	0.051			
500인~999인	38	1.755	2,033,979	7.385	53,526	25,906	5.969	682	4,087	9.712	108	15.777	0.201			
1,000인 이상	44	2.032	8,152,866	29.600	185,292	87,774	20.223	1,995	5,562	13.217	126	6.337	0.068			
없음	381	17.598	6,161,985	22.372	16,173	62,285	14.350	163	4,576	10.873	12	7.347	0.074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록 II.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

〈부표 II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업종별)

집단구분	신고인원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L=I/F*100) (M=I/C*100)	실효 세율 감소 (M=I/C*100)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비중 (J)	비중 (I)	비중 (G)			비중 (F)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100	100		100	100		100	100							
전체	2,269	100	620,570	100	273	28,968	100	13	12,187	100	5	42.071	1.964				
농업, 임업 및 어업	2	0.088	680	0.110	340	59	0.202	29	4	0.031	2	6.409	0.551				
제조업	170	7.492	58,097	9.362	342	6,417	22.153	38	1,138	9.337	7	17.733	1.959				
건설업	7	0.309	1,002	0.161	143	114	0.393	16	30	0.244	4	26.143	2.971				
도매 및 소매업	212	9.343	31,106	5.012	147	1,730	5.972	8	862	7.076	4	49.851	2.772				
운수업	9	0.397	1,280	0.206	142	64	0.222	7	29	0.238	3	45.015	2.265				
숙박 및 음식점업	76	3.349	8,546	1.377	112	503	1.736	7	311	2.549	4	61.776	3.63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0.926	3,231	0.521	154	313	1.081	15	93	0.760	4	29.566	2.8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0.264	1,105	0.178	184	13	0.047	2	5	0.043	1	38.577	0.47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9	11.855	29,754	4.795	111	1,723	5.947	6	755	6.191	3	43.799	2.5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	0.529	6,485	1.045	540	651	2.246	54	127	1.044	11	19.564	1.963				
교육서비스업	15	0.661	1,086	0.175	72	79	0.274	5	63	0.519	4	79.705	5.82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80	60.820	469,449	75.648	340	16,788	57.954	12	8,417	69.065	6	50.138	1.79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0.176	262	0.042	66	29	0.100	7	19	0.159	5	67.084	7.39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86	3.790	8,487	1.368	99	485	1.674	6	334	2.744	4	68.960	3.940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II -2>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종합소득금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인원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비중 (B)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H)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K)	비중 (J)	비중 (L=I/F*100)			
			금액 (C)	비중 (D)		금액 (F)	비중 (G)		금액 (I)	비중 (J)						
																(M=I/C*100)
전체	2,269	100	620,570	100	273	28,968	100	13	12,187	100	5	42.071	1.964			
1,000만원 이하	5	0.220	22	0.004	4	1	0.005	0	1	0.005	0	50.735	3.066			
1,000~2,000만원	22	0.970	267	0.043	12	16	0.054	1	9	0.070	0	55.359	3.210			
2,000~3,000만원	50	2.204	1,037	0.167	21	76	0.261	2	45	0.373	1	60.039	4.378			
3,000~4,000만원	56	2.468	1,620	0.261	29	125	0.431	2	73	0.599	1	58.444	4.504			
4,000~5,000만원	76	3.349	2,916	0.470	38	227	0.784	3	137	1.126	2	60.452	4.706			
5,000~6,000만원	101	4.451	4,870	0.785	48	407	1.406	4	224	1.842	2	55.097	4.609			
6,000~8,000만원	165	7.272	10,074	1.623	61	769	2.656	5	418	3.432	3	54.365	4.152			
8,000만원~1억원	186	8.197	14,846	2.392	80	1,134	3.915	6	615	5.048	3	54.244	4.144			
1억원~1억 5,000만원	381	16.792	43,397	6.993	114	2,990	10.323	8	1,500	12.307	4	50.155	3.456			
1억 5,000만원~2억원	314	13.839	50,633	8.159	161	2,920	10.080	9	1,325	10.874	4	45.385	2.617			
2~3억원	327	14.412	76,045	12.254	233	3,948	13.629	12	1,872	15.357	6	47.404	2.461			
3~5억원	287	12.649	106,740	17.200	372	4,848	16.734	17	2,143	17.588	7	44.217	2.008			
5~10억원	214	9.431	139,634	22.501	652	5,920	20.436	28	2,271	18.631	11	38.355	1.626			
10억원 초과	85	3.746	168,469	27.147	1,982	5,586	19.285	66	1,554	12.748	18	27.810	0.922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II -3〉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사업소득금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인원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비중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비중	비중	(K)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	(B)	(C)	(D)	(E)	(F)	(G)	(H)	(I)	(J)	(K)	(L=I/F*100)	(M=L/C*100)				
전체	2,269	100	620,570	100	273	28,968	100	13	12,187	100	5	42.071	1.964			
1,000만원 이하	20	0.881	387	0.062	19	26	0.091	1	5	0.038	0	17.720	1.213			
1,000~2,000만원	23	1.014	476	0.077	21	27	0.094	1	13	0.105	1	46.915	2.685			
2,000~3,000만원	48	2.115	1,581	0.255	33	90	0.311	2	51	0.416	1	56.224	3.204			
3,000~4,000만원	68	2.997	2,344	0.378	34	178	0.613	3	100	0.820	1	56.257	4.261			
4,000~5,000만원	72	3.173	3,011	0.485	42	236	0.814	3	139	1.137	2	58.765	4.604			
5,000~6,000만원	98	4.319	4,971	0.801	51	399	1.376	4	215	1.767	2	54.046	4.332			
6,000~8,000만원	173	7.625	11,332	1.826	66	883	3.048	5	482	3.953	3	54.559	4.251			
8,000만원~1억원	187	8.242	15,782	2.543	84	1,209	4.173	6	645	5.294	3	53.375	4.088			
1억원~1억 5,000만원	376	16.571	44,164	7.117	117	3,012	10.399	8	1,493	12.252	4	49.566	3.381			
1억 5,000만원~2억원	313	13.795	51,631	8.320	165	2,988	10.317	10	1,349	11.066	4	45.126	2.612			
2~3억원	314	13.839	74,878	12.066	238	3,752	12.952	12	1,727	14.170	5	46.029	2.306			
3~5억원	287	12.649	107,121	17.262	373	5,046	17.419	18	2,300	18.873	8	45.583	2.147			
5~10억원	209	9.211	138,864	22.377	664	5,651	19.507	27	2,095	17.191	10	37.077	1.509			
10억원 초과	81	3.570	164,026	26.432	2,025	5,471	18.887	68	1,574	12.919	19	28.778	0.960			

자료: 국제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II -4〉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과세표준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인원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비중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	(B)	(C)	(D)	(E)	(F)	(G)	(H)	(I)	(J)	(K)	(L=F*100)	(M=I/C*100)				
전체	2,269	100	620,570	100	273	28,968	100	13	12,187	100	5	42.071	1.964			
1,200만원 이하	15	0.661	114	0.018	8	6	0.019	0	3	0.024	0	52.025	2.519			
1,200~2,500만원	64	2.821	1,212	0.195	19	89	0.306	1	49	0.406	1	55.852	4.080			
2,500~3,500만원	64	2.821	1,921	0.310	30	146	0.503	2	85	0.695	1	58.208	4.412			
3,500~4,600만원	98	4.319	4,000	0.645	41	309	1.065	3	182	1.496	2	59.094	4.558			
4,600~6,000만원	139	6.126	7,318	1.179	53	601	2.074	4	320	2.627	2	53.300	4.375			
6,000~7,000만원	91	4.011	5,893	0.950	65	469	1.620	5	255	2.089	3	54.247	4.320			
7,000~8,800만원	172	7.580	13,522	2.179	79	986	3.404	6	552	4.532	3	56.015	4.085			
8,800만원~1억원	111	4.892	10,381	1.673	94	764	2.638	7	374	3.068	3	48.930	3.602			
1억원~1억 5,000만원	385	16.968	48,691	7.846	126	3,128	10.797	8	1,527	12.529	4	48.822	3.136			
1억 5,000만원~2억원	255	11.238	43,823	7.062	172	2,641	9.117	10	1,199	9.838	5	45.398	2.736			
2~3억원	315	13.883	76,501	12.327	243	3,905	13.481	12	1,837	15.075	6	47.047	2.402			
3~5억원	275	12.120	105,973	17.077	385	4,833	16.683	18	2,106	17.280	8	43.576	1.987			
5~10억원	201	8.859	133,748	21.552	665	5,557	19.185	28	2,146	17.609	11	38.616	1.604			
10억원 초과	84	3.702	167,473	26.987	1,994	5,535	19.109	66	1,552	12.731	18	28.030	0.926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표 II -5〉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현황(결정세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구분	신고인원 수		과세표준				총 공제감면세액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세액				동태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비중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	(B)	(C)	(D)	(E)	(F)	(G)	(H)	(I)	(J)	(K)	(L=F*100)	(M=I/C*100)				
전체	2,269	100	620,570	100	273	28,968	100	13	12,187	100	5	42.071	1.964			
0원	31	1.366	733	0.118	24	86	0.297	3	47	0.382	2	54.045	6.352			
0원~500만원	417	18.378	19,218	3.097	46	1,847	6.377	4	962	7.891	2	52.062	5.004			
500~1,000만원	229	10.093	18,605	2.998	81	1,658	5.723	7	870	7.136	4	52.460	4.674			
1,000~1,500만원	149	6.567	14,793	2.384	99	1,168	4.032	8	559	4.589	4	47.880	3.781			
1,500~2,000만원	116	5.112	13,930	2.245	120	1,125	3.885	10	564	4.631	5	50.156	4.052			
2,000~3,000만원	206	9.079	29,054	4.682	141	1,989	6.866	10	932	7.643	5	46.834	3.206			
3,000~4,000만원	190	8.374	31,653	5.101	167	1,792	6.187	9	809	6.635	4	45.122	2.555			
4,000~5,000만원	118	5.201	23,496	3.786	199	1,385	4.780	12	649	5.323	5	46.844	2.761			
5,000~6,000만원	102	4.495	24,277	3.912	238	1,546	5.337	15	706	5.792	7	45.659	2.908			
6,000~8,000만원	160	7.052	42,661	6.875	267	2,165	7.473	14	936	7.684	6	43.262	2.195			
8,000만원~1억원	100	4.407	32,891	5.300	329	1,519	5.244	15	619	5.082	6	40.771	1.883			
1~2억원	277	12.208	131,787	21.236	476	5,365	18.522	19	2,204	18.085	8	41.078	1.672			
2~3억원	73	3.217	54,653	8.807	749	1,925	6.645	26	737	6.048	10	38.287	1.349			
3~5억원	61	2.688	67,993	10.957	1,115	2,390	8.250	39	814	6.676	13	34.041	1.197			
5억원 초과	40	1.763	114,826	18.503	2,871	3,007	10.382	75	780	6.404	20	25.952	0.680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이용 저자 작성

부록 III. 효과성 분석 표본별 기초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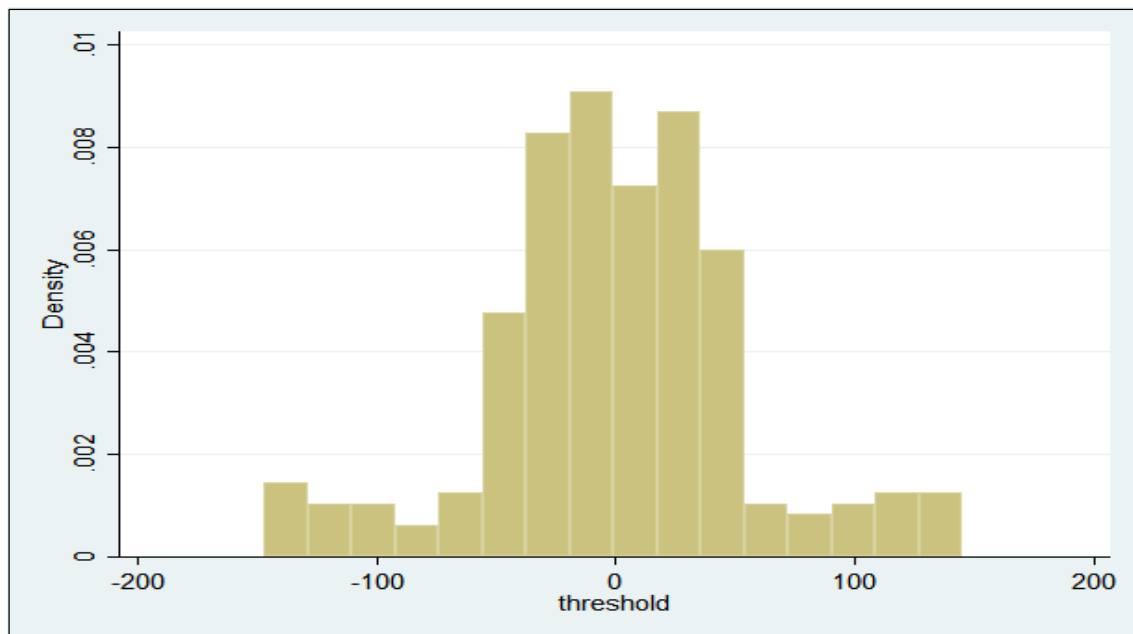
1. 2015년 흑자기업 표본

<부표 III-1> 표본선정 반경에 따른 관측치 수(2015년 흑자기업)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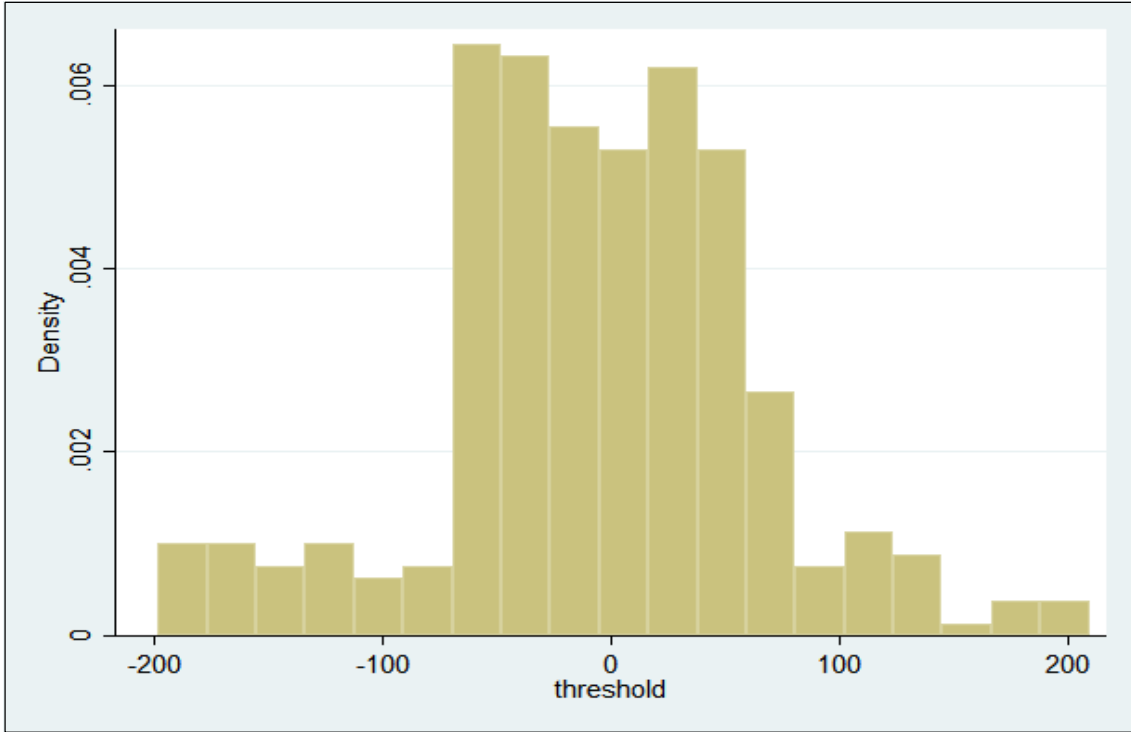
구분		표본선정 반경								
		5%			7%			10%		
		합계	처치	통제	합계	처치	통제	합계	처치	통제
전체		265	135	130	369	198	171	542	292	250
중견·대기업(3,000억원)		68	33	35	93	51	42	129	69	60
중소 · 중견 기업	산업군 1(1,500억원)	20	8	12	24	9	15	33	13	20
	산업군 2(1,000억원)	134	69	65	193	104	89	291	160	131
	산업군 3(800억원)	33	20	13	48	28	20	74	42	32
	산업군 4(600억원)	10	5	5	11	6	5	15	8	7
	산업군 5(400억원)	0	0	0	0	0	0	0	0	0

[부도 III-1] 표본선정 반경 5%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5년 흑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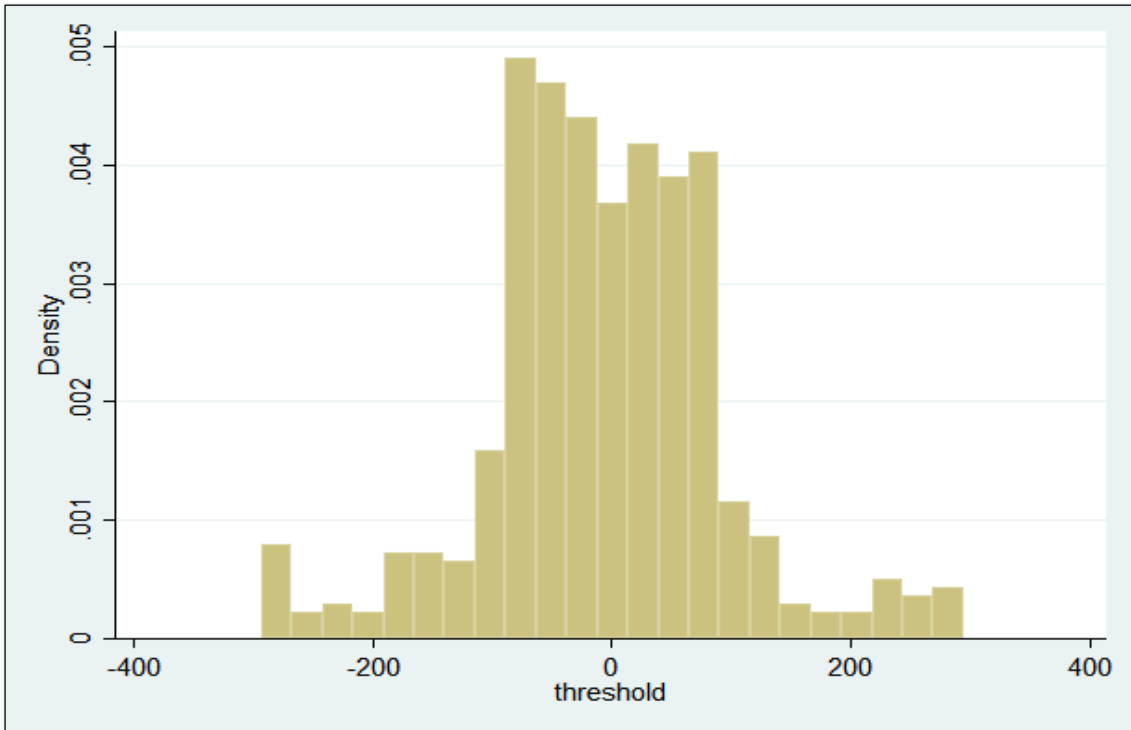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부도 Ⅲ-2] 표본선정 반경 7%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5년 흑자기업)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부도 Ⅲ-3] 표본선정 반경 10%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5년 흑자기업)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부표 III-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2015년 흑자기업)

(단위: 명, 억원, 개월)

구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표본 선정 반경 5%	고용인원 (전체)	265	302.06	599.32	4.00	7,787.08
	고용인원 (청년)	265	66.96	228.75	0.00	3,578.33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265	0.65	18.09	-84.33	178.08
	매출액	265	1,534.49	960.88	581.63	4,238.78
	기업연한	265	292.14	176.54	24.00	1,148.00
표본 선정 반경 7%	고용인원 (전체)	369	325.03	857.40	0.00	11,166.42
	고용인원 (청년)	369	79.59	327.29	0.00	4,659.50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369	1.81	22.85	-94.25	282.83
	매출액	369	1,513.90	948.03	560.63	4,401.26
	기업연한	369	291.46	171.84	24.00	1,148.00
표본 선정 반경 10%	고용인원 (전체)	542	299.37	728.62	0.00	11,166.42
	고용인원 (청년)	542	70.55	275.48	0.00	4,659.50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542	1.63	21.36	-94.25	282.83
	매출액	542	1,485.80	939.58	545.72	4,401.26
	기업연한	542	289.34	172.20	24.00	1,154.00

<부표 III-3> 주요 변수의 기업규모별 기초통계량(2015년 흑자기업)

(단위: 명, 억원, 개월)

구분	변수명	단절점 ②~⑥				단절점 ①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기업)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표본 선정 반경 5%	고용인원 (전체)	102	214.24	95	200.21	33	437.13	35	707.11
	고용인원 (청년)	102	49.08	95	44.42	33	64.94	35	182.20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102	1.76	95	1.80	33	-2.09	35	-3.07
	매출액	102	956.27	95	1,042.50	33	2,979.16	35	3,192.88
	기업연환	102	268.68	95	266.59	33	385.30	35	342.00
표본 선정 반경 7%	고용인원 (전체)	147	211.58	129	190.73	51	746.10	42	623.31
	고용인원 (청년)	147	50.15	129	42.90	51	192.10	42	158.74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147	1.29	129	1.55	51	7.13	42	-2.03
	매출액	147	942.00	129	1,048.20	51	2,947.81	42	3,204.66
	기업연환	147	271.27	129	269.02	51	371.33	42	334.07
표본 선정 반경 10%	고용인원 (전체)	223	199.70	190	196.56	69	643.22	60	599.98
	고용인원 (청년)	223	45.69	190	42.66	69	158.62	60	149.98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223	1.17	190	1.81	69	4.64	60	-0.65
	매출액	223	926.02	190	1,055.98	69	2,931.72	60	3,264.62
	기업연환	223	264.64	190	277.78	69	368.30	60	32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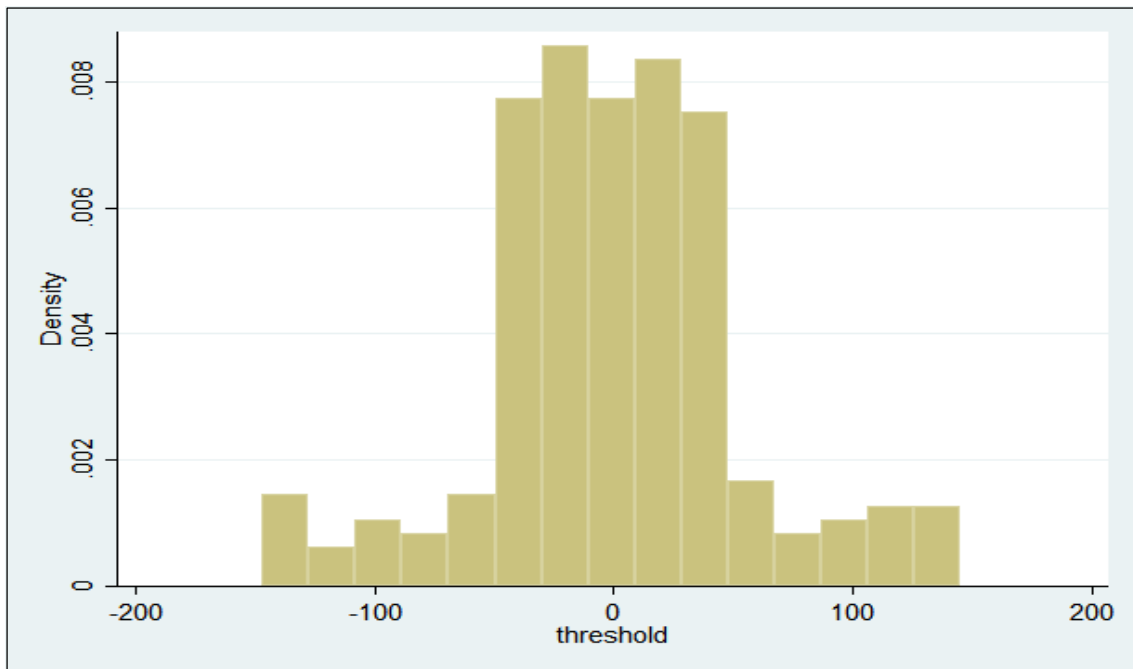
2. 2014~2015년 흑자기업 표본

<부표 III-4> 표본선정 반경에 따른 관측치 수(2014~2015년 흑자기업)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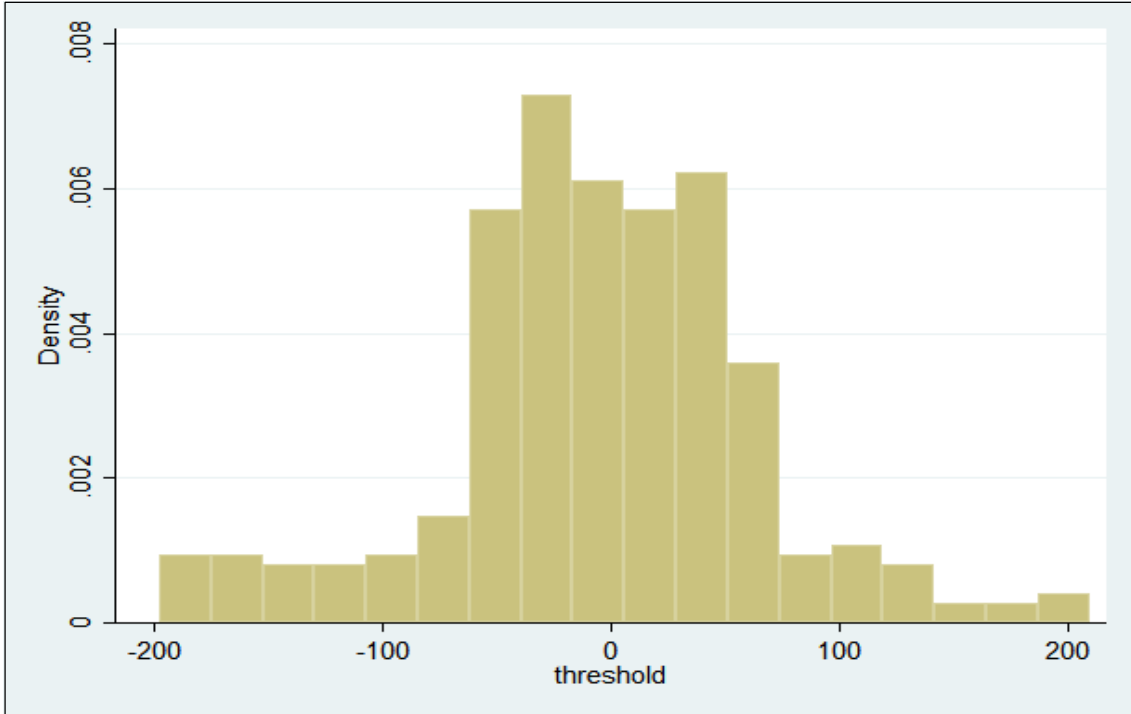
구분		표본선정 반경								
		5%			7%			10%		
		합계	처치	통제	합계	처치	통제	합계	처치	통제
전체		246	126	120	333	176	157	492	264	228
중견·대기업(3,000억원)		62	30	32	84	46	38	116	64	52
중소 · 중견 기업	산업군1(1,500억원)	18	7	11	21	8	13	29	11	18
	산업군2(1,000억원)	126	65	61	177	93	84	268	145	123
	산업군3(800억원)	31	19	12	41	23	18	65	36	29
	산업군4(600억원)	9	5	4	10	6	4	14	8	6
	산업군5(400억원)	0	0	0	0	0	0	0	0	0

[부도 III-4] 표본선정 반경 5%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4~2015년 흑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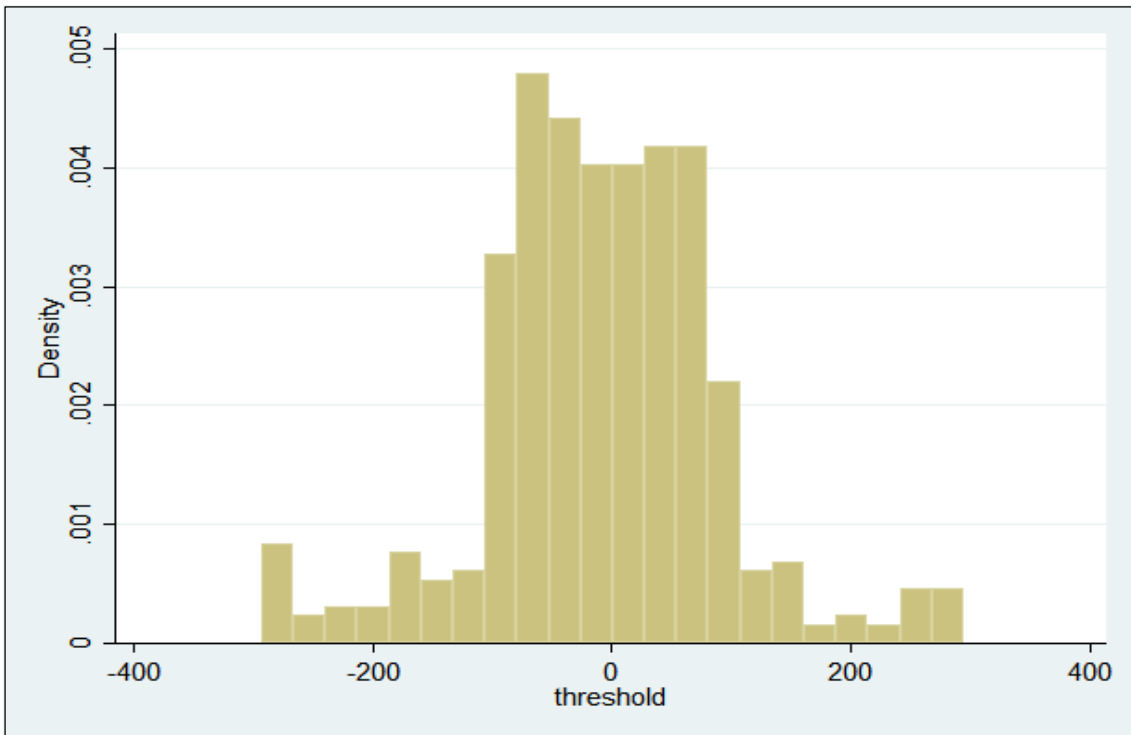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부도 III-5] 표본선정 반경 7% 이내의 관측치 분포(2014~2015년 흑자기업)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부도 III-6] 표본선정 반경 10% 이내의 관측치 분포 (2014~2015년 흑자기업)



주: 가로축은 해당기업 매출액의 단절점으로부터 거리이며 단위는 억원임

<부표 III -5>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2014~2015년 흑자기업)

(단위: 명, 억원, 개월)

구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표본 선정 반경 5%	고용인원 (전체)	246	302.60	620.03	4.00	7,787.08
	고용인원 (청년)	246	68.34	237.17	0.00	3,578.33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246	1.26	17.69	-81.25	178.08
	매출액	246	1,533.16	969.26	581.63	4,238.78
	기업연한	246	285.49	173.82	24.00	1,148.00
표본 선정 반경 7%	고용인원 (전체)	333	331.66	900.48	0.00	11,166.42
	고용인원 (청년)	333	82.87	344.12	0.00	4,659.50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333	2.20	23.26	-94.25	282.83
	매출액	333	1,518.33	949.02	560.63	4,401.26
	기업연한	333	284.29	167.77	24.00	1,148.00
표본 선정 반경 10%	고용인원 (전체)	492	303.18	762.33	0.00	11,166.42
	고용인원 (청년)	492	72.30	288.75	0.00	4,659.50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492	1.90	21.81	-94.25	282.83
	매출액	492	1,481.90	935.33	545.72	4,401.26
	기업연한	492	283.95	168.34	24.00	1,154.00

<부표 III -6> 주요 변수의 기업규모별 기초통계량(2014~2015년 흑자기업)

(단위: 명, 억원, 개월)

구분	변수명	단절점 ②~⑥				단절점 ①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기업)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표본 선정 반경 5%	고용인원 (전체)	96	213.41	88	199.34	30	427.33	32	737.21
	고용인원 (청년)	96	49.16	88	44.64	30	64.20	32	194.93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96	2.25	88	2.04	30	-2.29	32	-0.51
	매출액	96	952.03	88	1,044.93	30	2,985.25	32	3,257.84
	기업연환	96	258.68	88	271.77	30	368.13	32	326.16
표본 선정 반경 7%	고용인원 (전체)	130	214.18	119	188.63	46	767.11	38	654.32
	고용인원 (청년)	130	51.64	119	43.04	46	601.22	38	171.13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130	1.40	119	1.89	46	7.06	38	0.07
	매출액	130	944.14	119	1,047.26	46	2,922.78	38	3,257.69
	기업연환	130	256.65	119	274.80	46	361.02	38	315.68
표본 선정 반경 10%	고용인원 (전체)	200	203.13	176	192.37	64	650.28	52	635.89
	고용인원 (청년)	200	46.79	176	41.53	64	162.56	52	163.46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	200	1.26	176	2.08	64	4.40	52	0.65
	매출액	200	925.11	176	1,056.31	64	2,912.46	52	3,303.13
	기업연환	200	256.47	176	280.87	64	360.66	52	305.69

부록 IV. 설문조사표

ID	
----	--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 기업체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 의뢰를 받은 조사전문업체 KANTAR PUBLIC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주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기관	KANTAR PUBLIC
------	-----------------	------	---------------

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통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응답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알려주신 정보는 통계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도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유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본 조사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KANTAR PUBLIC에 있습니다.
- 본 조사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주체는 KANTAR PUBLIC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공된 통계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본 조사로 수집된 문서는 KANTAR PUBLIC의 폐기 위탁업무 담당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시고, 정보를 알려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응답자

■ 응답일자 2017년 ____월 ____일

■ 성명 _____

■ 부서명 _____ ■ 직위 _____ ① 총무 ② 재무(회계) ③ 인사 ④ 기타

■ 연락처 _____ ■ 이메일 _____

■ 통화가능시간(오전/오후) _____ 시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세 (만19세 이상만 조사 진행)

① 19~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69세 ⑥ 70대 이상

기업 정보

■ 기업명 : _____

■ 사업체 주소 시도 코드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 _____도(시) ____구 _____동 세부주소: _____

2. 청년고용증대세제 인지도

※ 다음은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2016년의 경우 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명 증가시킬 때마다 해당 기업은 500만원(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혹은 200만원(그 외 기업)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이 올해인 2017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도보다 증가시킬 경우 세액공제 규모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인원은 전체 정규직 및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합니다.

	청년고용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	
	2015년~2016년	2017년
중소기업	500만원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200만원	300만원

2-1. 귀사는 ‘청년고용증대세제’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2-2번으로)
- ②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3-1번으로)

(2-1에서 ① 제도를 들어본 적 있다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2-2. 귀사는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기존 제도(2015년~2016년)와 확대된 제도(2017년) 중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제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이 제도에 대해 들어는 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2-3번으로)
- ②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규모는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2-2-1번으로)
- ③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규모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2-1번으로)
- ④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이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2-1번으로)

(2-2에서 ②, ③, ④ **세액공제 규모 파악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2-2-1. 귀사가 파악하고 있는 이 제도의 세액공제 규모는 무엇입니까?

- ①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기존(2015~2016년) 세액공제 규모
- ②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확대된(2017년) 세액공제 규모
- ③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기존(2015~2016년) 세액공제 규모와 확대된(2017년) 세액공제 규모 모두

(2-1에서 ①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2-3. 귀사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 ① 2015년 3/4분기 ② 2015년 4/4분기 ③ 2016년 상반기 ④ 2016년 하반기 ⑤ 2017년 상반기

(2-1에서 ①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2-4. 귀사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 ① 법인세 신고 시 세제혜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세무대리업무에 의한 세액공제 신청 과정에서의 인지 포함)
- ② 정부의 고용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하여
- ③ 기업의 인력 관리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통하여
- ④ 다른 기업이 제공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 ⑤ 언론 보도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1에서 ①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2-5. 귀사는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된 것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2017년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된 것에 대해 전혀 몰랐다 (3-1번으로)
- ② 2017년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된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2-5-1번으로)
- ③ 2017년에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된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확대된 세액공제 규모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2-5-1번으로)

(2-5에서 ②, ③ **제도 확대 인지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2-5-1. 귀사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 ① 정부의 고용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하여
- ② 기업의 인력 관리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통하여
- ③ 다른 기업이 제공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 ④ 언론 보도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기업 경영 및 인력현황

※ 귀사의 경영현황과 세제혜택 관련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표를 이용하여 응답해 주세요.

- ◆ 매출액: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액 및 에누리액을 공제한 순매출액을 의미합니다.
- ◆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얻은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일반관리비(본사의 경비)와 판매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 ◆ 당기순이익: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의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경영현황

* 창립 이전 연도에는 '㉔ 아니오'로 응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15년 창립 시 2015년부터 응답하시고, 2014년은 '㉔ 아니오'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구분	a. 2014년		b. 2015년		c. 2016년	
3-1. 해당 여부	① 예	② 아니오(b로)	① 예	② 아니오(c로)	① 예	② 아니오(3-5번으로)
3-2. 매출액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 원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 원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 원
3-3. 영업이익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 원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 원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 원
3-4. 당기순이익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 원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 원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 원

세제혜택 관련 현황

* 해당연도에 해당 세액공제 금액이 없으면 '② 아니오'로 응답해 주세요.
 법인세 신고일이 아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사업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법인세를 2016년도에 신고·납부하셨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2015년도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3-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3-5-a. 2015년	1. 해당여부	① 예 ② 아니오(3-5-b번으로)					
	2. 세액공제금액	일	억	천	백	십	일

3-5-b. 2016년	1. 해당여부	① 예 ② 아니오(3-6-a번으로)					
	2. 세액공제금액	일	억	천	백	십	일

3-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6-a. 2014년	1. 해당여부	① 예 ② 아니오(3-6-b번으로)					
	2. 세액공제금액	일	억	천	백	십	일

3-6-b. 2015년	1. 해당여부	① 예 ② 아니오(3-6-c번으로)					
	2. 세액공제금액	일	억	천	백	십	일

3-6-c. 2016년	1. 해당여부	① 예 ② 아니오(3-7-a번으로)					
	2. 세액공제금액	일	억	천	백	십	일

3-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7-a. 2014년	1. 해당여부	① 예 ② 아니오(3-7-b번으로)					
	2. 세액공제금액	일	억	천	백	십	일

3-7-b. 2015년	1. 해당여부	① 예 ② 아니오(3-7-c번으로)					
	2. 세액공제금액	일	억	천	백	십	일

3-7-c. 2016년	1. 해당여부	① 예 ② 아니오(3-8번으로)					
	2. 세액공제금액	일	억	천	백	십	일

※ 귀사의 인력 및 급여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표를 이용하여 응답해 주세요.

- ◆ 정규직 근로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 상시 근로자: 사업장에 고용된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모두 포함하되 필요에 따라 잠깐 고용하는 일용직과 파트타이머는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 청년: 연령이 만 15~29세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인력현황

- * 창립 이전 연도에는 ‘② 아니오’로 응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15년 창립 시 2015년 12월 31일부터 응답하시고, 2014년 12월 31일은 ‘② 아니오’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 * 해당 유형의 근로자 수나 금액이 없다면 ‘0’을 기입해주세요.

구분	a. 2014년 12월 31일	b. 2015년 12월 31일	c. 2016년 12월 31일
3-8. 해당여부	① 예 ② 아니오(b로)	① 예 ② 아니오(c로)	① 예 ② 아니오(3-15로)
3-9. 전체 정규직 근로자 (내국인만 해당)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명
3-10. 전체 상시 근로자 (내국인만 해당)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명
3-11. 청년 정규직 근로자 (만 15세~29세 내국인만 해당)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명
3-12. 청년 상시 근로자 (만 15세~29세 내국인만 해당)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명
3-13. 외국인 관리직·사무직 근로자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명
3-14.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명

3-15. 귀사가 청년(만 15~29세)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처음 1년간 소요되는 1인당 총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사회보험료 등도 포함된 1인당 총 비용을 2016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십	일	천	백	십	일	만 원

3-16. 2016년 기준 귀사의 신입사원(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세전 연봉은 얼마입니까?

신입사원(정규직 근로자)의 연봉	십	일	천	백	십	일	만 원

3-17. 2016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5년을 근속**했다면, 회사의 임금정책에 따라 받게 되는 평균 세전 연봉은 얼마입니까? (물가상승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5년차의 연봉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3-18. 2016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10년을 근속**했다면, 회사의 임금정책에 따라 받게 되는 평균 세전 연봉은 얼마입니까? (물가상승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10년차의 연봉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3-19. 2016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15년을 근속**했다면, 회사의 임금정책에 따라 받게 되는 평균 세전 연봉은 얼마입니까? (물가상승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15년차의 연봉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3-20. 2016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20년을 근속**했다면, 회사의 임금정책에 따라 받게 되는 평균 세전 연봉은 얼마입니까? (물가상승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20년차의 연봉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3-21. 귀사에는 2016년 기준 외국인 관리직·사무직 근로자가 있습니까?

- ① 예 (3-21-1번으로) ② 아니오 (3-22번으로)

3-21-1. 2016년 기준 외국인 관리직·사무직 근로자의 **수당을 포함한** 평균 세전 연봉은 얼마입니까?

외국인 관리직·사무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3-22. 귀사에는 2016년 기준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가 있습니까?

- ① 예 (3-22-1번으로) ② 아니오 (3-23번으로)

3-22-1. 2016년 기준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을 포함한 평균 세전 연봉은 얼마입니까?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3-23. 귀사의 2016년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의 평균 세전 연봉에 대하여 다음 표를 이용해 응답해 주세요.

구분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3-23-1. 전체 정규직 근로자(내국인만 해당)								
3-23-2. 전체 상시 근로자(내국인만 해당)								
3-23-3.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29세 내국인만 해당)								
3-23-4. 청년 상시 근로자(만 15세~29세 내국인만 해당)								

4.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효과

- ◆ 정규직 근로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 상시 근로자: 사업장에 고용된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모두 포함하되 필요에 따라 잠깐 고용하는 일용직과 파트타임은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 청년: 연령이 만 15~29세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 해당 유형의 인원이 없다면 '0'을 기입해주세요.

4-1.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귀사의 전체 근로자 중 2016년에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한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구분	만	천	백	십	일	명
2016년 전체 <u>정규직 근로자</u> 채용 인원						
2016년 전체 <u>상시 근로자</u> 채용 인원						

4.2.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귀사가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을 계획하였으나 충원하지 못한 **전체** 근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구분	만	천	백	십	일	명
2016년 전체 정규직 근로자 미충원 인원						명
2016년 전체 상시 근로자 미충원 인원						명

4.3.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귀사의 **청년(만 15~29세)** 근로자 중 2016년에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한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구분	만	천	백	십	일	명
2016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 인원						명
2016년 청년 상시 근로자 채용 인원						명

4.4.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귀사가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을 계획하였으나 충원하지 못한 **청년(만 15~29세)** 근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구분	만	천	백	십	일	명
2016년 청년 정규직 근로자 미충원 인원						명
2016년 청년 상시 근로자 미충원 인원						명

4.5. 2016년 귀사의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계획대로, 청년 인력이 원활하게 충원되었습니까?

- ① 계획된 청년 인력을 충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 ② 기존 청년 인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추가인력의 확보에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 ③ 기존 청년 인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정도만 가까스로 확보할 수 있었다
- ④ 청년들이 우리 기업을 선호하지 않아 청년 인력이 감소하였다
- ⑤ 우리 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다

(2-1에서 ①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2-1에서 ‘②’라고 응답한 기업은 4-10번으로)

4-6. 귀사가 2016년 한 해 동안 **청년(만 15~29세)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하는데에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 제도로 인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확대되었다 (4-7번으로)
- ② 이 제도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4-6-1번으로)

(4-6에서 ② 청년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6-1. 귀사의 2016년 **청년(만 15세~29세)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2016년 채용단계에서는 이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4-10번으로)
- ② 이 제도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2016년 채용단계에서 이 제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아서(4-6-2번으로)
- ③ 2016년 채용단계에서 이 제도의 혜택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세액공제 규모가 작아서 (4-10번으로)
- ④ 2016년 채용단계에서 이 제도의 혜택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중복적용 배제와 최저한 세율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세제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서 (4-10번으로)

(4-6-1에서 ② 제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6-2. 2016년 채용단계에서 이 제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4-10번으로)

- ① 법인세액이 많지 않아 고용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크지 않으므로
- ② 채용규모의 확대는 세제혜택 보다는 매출확대, 신규투자 등 다른 경영여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 ③ 현재 경영환경이 좋지않아 고용을 확대할 여력이 없어서
- ④ 2016년 인사정책의 경우 신규채용보다는 기존인력 감축이 우선이기 때문에
- ⑤ 이 제도와 상관없이 청년 인력을 충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 ⑥ 우리 기업은 청년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4-6에서 ① 청년 근로자 채용이 확대되었다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7. 만약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없었다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청년(만 15~29세)** 근로자 중 2016년에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한 인원은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구분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제도가 없었을 경우, 2016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 인원						명
제도가 없었을 경우, 2016년 청년 상시 근로자 채용 인원						명

(4-6에서 ① 청년 근로자 채용이 확대되었다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8. 귀사가 2016년 한 해 동안 청년(만 15~29세)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채용하는데에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 제도로 인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채용도 확대되었다 (4-9번으로)
- ② 이 제도가 전체 근로자 채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4-10번으로)

(4-8에서 ① 전체 근로자 채용이 확대되었다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9. 만약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없었다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근로자 중 2016년에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한 인원은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구분	만	천	백	십	일	
제도가 없었을 경우, 2016년 전체 <u>정규직 근로자</u> 채용 인원						명
제도가 없었을 경우, 2016년 전체 <u>상시 근로자</u> 채용 인원						명

4-10. 귀사의 전체 근로자 중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한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분	만	천	백	십	일	
2017년 현재 시점까지 채용한 <u>전체 정규직 근로자</u>						명
2017년 현재 시점까지 채용한 <u>전체 상시 근로자</u>						명

4-11. 귀사의 전체 근로자 중 현재 시점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할 계획이 있는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분	만	천	백	십	일	
2017년 현재 시점부터 채용할 계획이 있는 <u>전체 정규직 근로자</u>						명
2017년 현재 시점부터 채용할 계획이 있는 <u>전체 상시 근로자</u>						명

4-12. 귀사의 청년(만 15~29세) 근로자 중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한 청년(만 15~29세)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분	만	천	백	십	일	
2017년 현재 시점까지 채용한 <u>청년 정규직 근로자</u>						명
2017년 현재 시점까지 채용한 <u>청년 상시 근로자</u>						명

4-13. 귀사의 청년(만 15~29세) 근로자 중 현재 시점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할 계획이 있는 청년(만 15~29세)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분	인원					명
	만	천	백	십	일	
2017년 현재 시점부터 채용할 계획이 있는 <u>청년 정규직 근로자</u>						명
2017년 현재 시점부터 채용할 계획이 있는 <u>청년 상시 근로자</u>						명

4-14. 2017년에 귀사의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계획대로, 청년(만 15~29세) 인력이 원활하게 충원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① 계획된 청년 인력을 충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② 기존 청년 인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추가인력의 확보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 ③ 기존 청년 인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정도만 가까스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청년들이 우리 기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청년 인력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 ⑤ 우리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2-1에서 ①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2-1에서 ‘②’라고 응답한 기업은 4-22번으로)

4-15. 귀사가 2017년 한 해 동안 청년(만 15세~29세)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하는데에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 제도로 인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확대될 것이다 (4-16번으로)
- ② 이 제도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4-15-1번으로)

(4-15에서 ② 청년 근로자 채용에 영향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15-1. 귀사의 2017년 채용계획에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올해 채용단계에서 이 제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아서(4-15-2번으로)
- ② 올해 채용단계에서 이 제도의 혜택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세액공제 규모가 작아서(4-19번으로)
- ③ 올해 채용단계에서 이 제도의 혜택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중복적용 배제와 최저한세율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세제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서(4-19번으로)

(4-15-1에서 ① 제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15-2. 올해 채용단계에서 이 제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4-19번으로)

- ① 법인세액이 많지 않아 고용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크지 않으므로
- ② 채용규모의 확대는 세제혜택 보다는 매출확대, 신규투자 등 다른 경영여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 ③ 현재 경영환경이 좋지않아 고용을 확대할 여력이 없어서
- ④ 올해 인사정책의 경우 신규채용보다는 기존인력 감축이 우선이기 때문에
- ⑤ 이 제도와 상관없이 청년 인력을 충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 ⑥ 우리 기업은 청년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4-15에서 ① 청년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16.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없었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 하려고 계획했던 청년(만 15세~29세) 근로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구분	만	천	백	십	일	
제도가 없었을 경우, 2017년 청년 <u>정규직 근로자</u> 채용 인원						명
제도가 없었을 경우, 2017년 청년 <u>상시 근로자</u> 채용 인원						명

(4-15에서 ① 청년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17.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제도의 확대 적용이 귀사의 2017년 한 해 동안의 청년(만 15~29세) 정규직 근로자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 계획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제도가 확대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제도에 의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증가시킬 계획이었으며, 제도의 확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4-17-1번으로)
- ② 기존 제도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나, 확대된 제도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4-18번으로)
- ③ 기존 제도에 의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제도의 확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4-18번으로)
- ④ 기존 제도에 의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제도의 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4-18번으로)

(4-17에서 ① 제도의 확대가 청년 근로자 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17-1. ‘청년고용증대세제’가 확대되지 않았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하려고 계획했던 청년(만 15~29세) 근로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구분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제도가 확대되지 않았을 경우, 2017년 청년 <u>정규직 근로자</u> 채용 인원						명
제도가 확대되지 않았을 경우, 2017년 청년 <u>상시 근로자</u> 채용 인원						명

(4-15에서 ① 청년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18. 귀사가 2017년 한 해 동안 청년(만 15~29세)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하는데에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 제도로 인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확대될 것이다(4-18-1번으로)
- ② 이 제도가 전체 근로자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4-19번으로)

(4-18에서 ① 전체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18-1.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없었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하려고 계획했던 전체 근로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구분	만 천 백 십 일					명
	만	천	백	십	일	
제도가 없었을 경우, 2017년 전체 <u>정규직 근로자</u> 채용 인원						명
제도가 없었을 경우, 2017년 전체 <u>상시 근로자</u> 채용 인원						명

(4-18에서 ① 전체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18-2.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제도의 확대 적용이 귀사의 2017년 한 해 동안의 청년(만 15~29세)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 계획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제도가 확대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제도에 의해 전체 근로자 채용을 증가시킬 계획이었으며, 제도의 확대가 전체 근로자 채용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4-18-2-1번으로)
- ② 기존 제도는 전체 근로자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나, 확대된 제도는 전체 근로자 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4-19번으로)
- ③ 기존 제도에 의해 전체 근로자 채용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제도의 확대가 전체 근로자 채용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4-19번으로)
- ④ 기존 제도에 의해 전체 근로자 채용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제도의 확대에 의한 추가적인 전체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4-19번으로)

(4-18-2에서 ① 제도의 확대가 전체 근로자 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에게만 질문합니다.)

4-18-2-1. ‘청년고용증대세제’가 확대되지 않았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하려고 계획했던 **전체** 근로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구분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채용(신규 인력, 기존 인력 결원 대체 모두 포함)하려고 계획했던 전체 근로자 수					명
	만	천	백	십	일	
제도가 확대되지 않았을 경우, 2017년 전체 정규직 근로자 채용 인원						명
제도가 확대되지 않았을 경우, 2017년 전체 상시 근로자 채용 인원						명

(모든 기업에게 질문합니다.)

4-19.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귀사의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구분	2017년 12월 31일 예상 근로자 수					명
	만	천	백	십	일	
4-19-1. 전체 정규직 근로자(내국인만 해당)						명
4-19-2. 전체 상시 근로자(내국인만 해당)						명
4-19-3.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29세 내국인만 해당)						명
4-19-4. 청년 상시 근로자(만 15~29세 내국인만 해당)						명
4-19-5. 외국인 관리직·사무직 근로자						명
4-19-6.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						명

5.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타 고용지원 관련 제도 비교

※ 정부는 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인지하고 있는 제도와 이용한 적이 있는 제도를 응답해주시고, 경험한 제도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 정도를 응답해주세요.

구분	1. 인지 여부	2. 대상 여부	3. 이용 여부	* '3. 이용 여부'에서 '① 예'라고 선택한 기업만 응답해주세요.				
				4. 도움 정도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도움 되지 않는 편이었다	보통이다	도움 되는 편이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5-1.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X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4. 청년취업인턴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5. 일학습병행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6. 청년취업아카데미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7.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8.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9. 청년 가젤형기업 지원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